관세평가 전자학습(e-Learning)모듈 2021 Edition

# Customs Valuation Archer



Customs Valuation & Classification Institute

머리말

#### "Customs Valuation Archer"

#### 제3개정판(2021년)을 발간하며...

관세평가 전자학습(e-learning) 모듈 "Customs Valuation Archer"를 제 작하고 이 학습노트를 발간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듈과 책자 는 그 동안 관세평가 입문교재로서 세관직원 뿐만 아니라 관세평가 업무를 다루는 모든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전자학습 컨텐츠는 개정이 없었지만, 이 책자는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개정판이 발간되어 왔습니다. 올해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관세평가 관련 규정에 대한 큰 폭의 개정을 계기로 2021년 제3차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①올해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협정 번역문을 수정 하였으며, ②연속판매에서 최종 판매 원칙 등 '수출하기 위한 판매(sale for export)'와 ③가격할인, 가격조정약관 및 가격의 변경 등 '실제지급가격'에 대해 심도깊은 내용을 보충하였고, ④주요 용어 및 문구의 통일과 더불어 주요 사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자 개정 내용은 향후 전자학습(e-learning) 컨텐츠에도 반영하여 수정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Customs Valuation Archer"가 빠른 시간 내에 관세평가를 이해할 수 있는 최적의 교재로써 관세평가 업무를 배우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1. 8. 관세평가분류원장

#### 강의노트 활용

관세평가 전자학습(e-Learning) 모듈 Customs Valuation Archer\*의학습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관세평가 전자학습의 내용은 반복, 심화학습이 필요한 특성에 따라 개별 학습자만의 예습, 복습, 필기를 위한 노트를 필요로 합니다.

전자학습 콘텐츠의 내용은 강의노트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각색, 제작되어 있습니다. 각 차시별 학습 진행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원(法源)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강의 내용의 핵심 및 주의사항을 기록하여 자신만의 업무용 레퍼런스 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관세평가 실력의 향상을 위한 좋은 자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 〉관세평가 〉관세평가 전자도서관 〉 전자 학습 콘텐츠에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 과정과 교재는 관세평가의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학습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실제 무역거래에 대한 평가처리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해 판단됩니다.

"

# CONTENTS

	* 머리말: "Customs Valuation Archer" * 강의노트 활용	iv
131	<b>관세평가 소개</b> 1. 관세평가란 2. 관세평가제도의 변천	1
2차시	관세평가의 법원과 기본원칙 1. 관세평가의 법원(法源) 2.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10 14
3.5.1	거래가격방법(제1방법) I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1. 거래가격방법(Transaction Value Method) 2. 수출판매(Sale for Export)	19 22
4차시	거래가격방법(제1방법)         II.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1         1.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2. 간접지급	35 57

F 5	사/ 거래가격방법(제1방법)	
	Ⅲ.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2	
	3. 구매자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	66
	4. 공제요소	75
6え	시 거래가격방법(제1방법) Ⅳ. 거래가격 배제사유 1	
	1. 거래가격의 배제	83
	2.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Restrictions)	88
	3.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Condition or Consideration)	93
7え	거래가격방법(제1방법) V. 거래가격 배제사유 2	
	4.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귀속이익(Proceeds)	103
	5. 특수관계의 영향	107
8호	시 거래가격방법 사례연구	125
9え	가격에 대한 조정 I. 기산요소의 의의	
	1. 가산요소	137
	2. 가산조정의 범위	139

10克	以 パ 가격에 대한 조정	
	II. 가산요소 1	
	1. 수수료 및 중개료(Commissions and Brokerage) 2. 용기 및 포장 비용(Containers and Packing)	143 153
1ןֹב	<b>)</b> 가격에 대한 조정    . 가산요소 2	
	3. 생산지원(Assists)	156
12호	가격에 대한 조정 IV. 기산요소 3 4. 권리사용료(Royalties and Licence Fees)	170
135	<b>) 가격에 대한 조정</b> V. 가산요소 4	
	5. 사후귀속이익(Proceeds) 6. 운임, 보험료 및 운송 관련비용 (Transport costs and Associated charges)	191 196
145	시 가격에 대한 조정 사례연구	213

	(	
15秋/	대체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I.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시물품의 거래가격방법(제2·	3방법)
	1. 동종·동질 및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or Similar goods)	224
16末人	대체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II. 국내판매가격 또는 공제가격방법(제4방법)	
	1. 국내판매 또는 공제가격 방법(Deductive Method) 2. 공제금액 3. 초공제방법(Super Deductive Method)	233 239 246
17ネル	대체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III. 산정가격방법(제5방법)	
	1. 산정가격방법(Computed Value Method)	249
الملة81	대체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Ⅳ. 합리적 방법(제6방법)	
	1. 합리적 방법(Fall-back Method)	256
19末人	대체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사례연구	269



#### 관세평가 소개

#### 1. 관세평가란

#### 1) 평가

평가의 사전적 정의는 '물건 값을 헤아려 매김' 또는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함'이다.

"이 승용차는 아파트 한 채 값이다.", "이 시계는 천만 원짜리다." 라고 할 때 '승용차'의 가치는 '아파트 한 채'라는 다른 물건의 가치 로, '시계'는 '천만 원'이라는 화폐의 가치로 평가된 것이다.

#### 2)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같은 물품이라도 목적에 따라 평가방법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할 때의 가격은 2억5천만원이지만, 세무서에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과세표준은 2억원일 수 있다. 또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감정가는 2억원이아니라 1억5천만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

관세평가는 관세부과를 위한 평가이다. 관세평가는 세관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상업적인 평가와 구별된다. 상거래는 양 당사자 간의 기대치에 따라 물품이 평가되지만, 관세평가는 세관이 여러 거래에 개입하기 때문에 공평하고 객관적인 평가원칙이 필요하다.

관세평가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Customs Value)은 수입물품(imported goods)에 종가관세
   (ad valorem duties)를 부과하기 위한 물품의 가격(value)을 말한다.
   WTO관세평가협정 제15조 1.(a)
- <sup>™</sup>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sup>™</sup>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 ★ 관세 과세가격, 거래가격 등의 가격은 "value"이며,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등에서는 "price"이다. 엄밀하게 말해 "value'와 "price"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관세 법령에서는 이를 모두 "가격"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므로, 이 책에서도 모두 "가격"으로 표기한다. 다만, 문맥 상 이를 명확히 하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value"와 "price"를 함께 적는다.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관세법 제15조(과세표준)

• 관세평가의 대상 : 수입물품

• 관세평가의 범위 : 과세가격

#### 2. 관세평가제도의 변천

#### 1) 관세평가 국제표준의 필요성

흔히 과세가격을 '제2의 관세율'이라 한다. 이유는 세율과 더불어 과세가격의 크기에 따라 관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관세액 = 과세가격 × 관세율

오늘날 세계는 WTO의 출범, FTA 증가 등으로 자국의 관세율을 운영하는데 다자간 국제기구, 양자 관계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관세율 그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하향 평준화 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요소인 과세가격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또한 관세평가제도는 전통적으로 무역장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관세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국내산업보호이다. 전통적인

방법이 관세율을 이용하여 관세장벽을 치는 것인데, 최근 관세율을 이용한 국내산업보호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여기서 관세평가제도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등장한다. 가격의 개념을 임의로 설정하거나 평가방법을 복잡하게 하는 등 관세평가의 기술적인측면을 이용하여 과세가격을 높여 관세율 인상과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다.

앞서 말한 과세가격의 성격과 관세평가의 기술적인 특성으로 인해 관세평가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교역상대국들의 무역분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관세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 결과 탄생한 최초의 관세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 바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7조이다.



"실제가격(Actual Value) "은 수입국의 법률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해당 물품 또는 동종 물품이 충분히 경쟁적인 조건 하의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된 때의 가격이어야 한다. <sup>55</sup>★

GATT 제7조(관세 목적의 평가)

★ "2. (b) "Actual value" should be the price at which, at a time and place determined by the legislation of the country of importation, such or like merchandise is sold or offered for sale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under fully competitive conditions,"

#### 2) 관세평가 국제표준의 역사

#### ▶ GATT 제7조

1920년대 말 시작된 관세평가의 국제적인 표준에 대한 논의는 1945년 UN 창설로 본격화되어, 1947년 10월 30일 제네바에서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채택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GATT 제7조를 통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가격(Actual Value)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관세평가의 일반원칙 즉 관세평가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GATT 제7조는 직접 집행력을 갖는 규범이 아닌 선언적 규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 ▶ 브뤼셀 평가협약(BDV)

이후 집행력을 가진 통일된 관세평가 규범의 제정이 더디자 유럽관세동맹에서는 「브뤼셀평가협약」(Convention on the Valuation of Goods for Customs Purposes)을 제정하였다. 이 협약은 1953년 7월 28일 발효 이후 1981년 GATT관세평가협정이 등장하기 까지 관세평가에 관한 최초이자 유일한 국제규범이었다.

브뤼셀평가협약이 규정하는 관세평가 즉, BDV(Brussels Definition of Value) 평가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정상가격(Normal price)이어야 한다고 하고, 정상가격이란 상호 독립적인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공개시장의 판매에서 관세가 지급되어야 하는 때에 판매되는 가격\*이라고 정의하

<sup>★ &</sup>quot;... the price which they would fetch at the time when the duty becomes payable on a sale in the open market between buyer and seller independent of each other."

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세관 직원은 송품장 가격이 동종 물품에 대한 독립 당사자 간의 공개 시장에서 수입 당시에 판매되었을 가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 송품장 가격을 부인하고 관념적 개념(notional concept)의 가격인 "정상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념적 개념의 가격은 소위 "CIF주의"와 함께 BDV의 주요한 특징이었다. 우리나라는 브뤼셀평가협약에 1968년 10월 2일 가입하였다가 GATT관세평가협정 가입 후 1982년 4월 18일 탈퇴하였다.

#### ▶ GATT 관세평가협정

그후 미국, 캐나다 등 브뤼셀평가협약의 수용을 거부해온 나라들은 이 협약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규범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로 「GATT관세평가협정」이 제정되었다. 이 협정은 1981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그 정식 명칭은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다. GATT관세평가협정이 브뤼셀평가협약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가격의 개념이다. 즉, 브뤼셀평가협약에서의 과세가격은 정상가격(Normal price)이라는 관념적 가격(notional concept)인데 반해 GATT관세평가협정에서 채택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은 실제적 개념(positive system)의 가격이다. 또한 그 결과 GATT관세평가협정을 기반으로 하는 관세평가제도는 거래가격이 없거나 인정되지 않을 경우 대체방법(Alternative Methods)이라는 복수의 평가방법을 필요로 하는 등 그 체계가 복잡해 졌고, 브뤼셀평가협약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던 국 제운송비용에 관하여 CIF주의와 FOB주의 중 어느 쪽을 채택할지를 체약 국의 선택에 맡기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1981년 1월 6일

이 협정에 가입하였으나 개도국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5년간의 시행 유보를 거쳐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 ▶ 브뤼셀 평가협약과 GATT관세평가협정의 비교

구분	브뤼셀 평가협약	GATT 관세평가협정
정식명칭	Convention on the Valuation of Goods for Customs Purposes (Brussels Definition of Valu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제정년도	1953	1979
과세가격의 기초	정상가격(Normal price)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가격의 개념	관념적(Notional) 개념	실제적(Positive) 개념
평가방법	1가지	6가지
국제운송비용	CIF 주의 (과세가격에 포함)	CIF 또는 FOB 주의 (체약국의 선택)

#### ▶ WTO 관세평가협정

GATT관세평가협정이 관세평가의 국제표준으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의 여지를 남긴 것은 개도국들이 이 협정을 외면한데서 기인한다. 협정발효 당시 가입국은 23개국에 불과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도국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GATT관세평가협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 끝에 최종적으로 「WTO 관세평가협정★」이 탄생하게 되었다. 정식 명칭은 「1994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이하 이 책에서 '협정'이란 WTO관세평가협정을 말한다.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이다. 그 명칭에서 도 보듯이 '1994년'을 제외하고는 GATT관세평가협정과 동일하고, 실체 규정인 평가규칙 또한 GATT관세평가협정과 동일하다. 협정 본문의 평 가규칙을 다루고 있는 제1부(제1조~제17조)와 부속서 I 주해는 동일하 고, 행정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2부 이하(제18조~제24조)와 부속서 II, Ⅲ가 조금 다를 뿌이다

그러나 GATT관세평가협정이 독립된 개별협정인데 비해 WTO관세평 가협정은 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으로 WTO회원국은 모두 이 협정의 이행의무를 진다는 데 큰 차이점이 있다. 현재 WTO회원국이 164여 개국 인 점을 볼 때 WTO관세평가협정이야 말로 사실상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가 이행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인 관세평가표준인 것이다.

#### ▶ GATT관세평가협정과 WTO관세평가협정의 비교

구분	GATT관세평가협정	WTO관세평가협정	
정식명칭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협정의 지위	독립된 개별협정	WTO설립협정의 부속협정	
제정년도	1979	1994	
관세평가규칙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동일함		
회원국수	1994년 현재 약 35개국	2021년 6월 현재 164개국	



#### 관세평가의 법원과 기본원칙

#### 1. 관세평가의 법원(法源)

#### 1) 국내법령

관세평가의 법원을 대별하면 국내법령과 WTO관세평가협정으로 구성된다. 국내법령은 관세법과 관세법시행령 등이 해당된다.

<sup>66</sup>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sup>99</sup>

법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을 규정한 관세법 제15조는 관세평가의 근거이자 출발점이다 관세법령에서는 과세가격 신고와 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과세가격 신고 : 관세법 제27조~제29조

> 관세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 관세법시행규칙 제2조~제3조의2

• 과세가격 결정 : 관세법 제30조~제37조의4

> 관세법시행령 제17조~제31조의5 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3~제7조의10

행정규칙인 관세청의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등은 법률에 대한 우선권은 없고, 법률에 대한 보충적인 효력만을 갖는다

이 책에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란 각각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지칭한다.

#### 2) 관세평가협정

국내법규는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조약인 'WTO관세평가협정'에 기 초하고 있다. WTO관세평가협정은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헌법 제6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또한 협정의 모든 내용을 국내법령이 수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시안을 처리할 때에 협정에 의지하여 관련 국내법령의 규정을 해석하거 나 협정규정을 직접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협정은 일반서설, 총 4부 24개조 본문규정과 3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 일반서설(General Introductory Commentary)

● 본문 1부 관세평가 규칙: 제1조~제17조

2부 관리, 협의 및 분쟁해결 : 제18, 19조

3부 특별 및 차등대우 : 제20조 4부 최종조항 : 제21조~제24조

• 부속서 I. 주해(Interpretative Note)

11. 관세평가기술위원회

Ⅲ. 개발도상국 유보조항 등

부속서 I 주해는 협정의 해석이나 집행에 따른 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협정본문의 운용원칙이나 용어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협정 본문과 연계하여 함께 검토되고 협정의 일부로 준수되어야 한다.

★ 국회 비준을 거친 조약이 국내법으로 편입된 것만으로 곧바로 재판규범 내지 개인에게 소권을 인정하는 근거규범으로서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부정설'의 입장으로 보인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이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인(私人)에 대하여는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협정의 내용이 우리 관세법령에 반영되어 있어 관세법령 해석의 기준이 되며, WTO 회원국인 우리나라 역시 WTO 협정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우리 관세법령이 협정에 합치되도록 해석하고 운영할 의무가 있다.

협정의 집행을 위한 WTO관세평가위원회<sup>★</sup>의 결정(Decision)과 WCO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지침(Instrument)이 있다.

WTO관세평가위원회에서 채택한 협정의 해석에 관한 결정은 그 효력 에 있어 협정 자체와 다르지 않다. 또한 WCO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협정 해석에 대한 지침으로 권고의견, 예해, 해설, 사례연구, 연구 등 5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은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실제적인 효력에 있어 이러한 지침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국제분쟁 과정에서 패소할 가능 성이 높으므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

#### ▶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지침

권고의견 Advisory Opinions	구체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협정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답 제공
পান্য Commentaries	협정의 특정규정에 대한 해석의 지침
해설	협정조문과 관련된 통상적인 의문에 대한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Explanatory Notes	견해
사례연구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협정 규정의 적용
Case Studies	사례를 보여줌
연구	관세평가기술위원회에서 연구토록 임무가 부여된 사안에 대한
Studies	심층적인 연구결과를 문서화한 것

<sup>★</sup> WTO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sup>★★</sup> WCO Technical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 2.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1) '상관행의 존중'과 '거래가격'
- 수입물품의 관세목적의 가격은… 실제가격(Actual Value)에 기초하여야 하며… <sup>● (GATT 제7조)</sup>
- 최대한 평가대상물품의 거래가격이어야···(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transaction value)(협정 일반서설)

GATT 제7조는 과세가격은 실제가격(Actual Value)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협정은 최대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기 위한 취지이다

■ 제8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가산요소도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안 된다.

(협정 제8조 제4항)

당사자 간의 상관행을 존중하는 것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야 할 가격, 즉 송품장가격에 대해 최소한의 조정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거래가격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기 위해 4가지 거래가격 배 제사유에 여러 엄격한 조건을 붙여 거래가격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

- i) 물품의 처분·사용에 제한 : 가격이 실제로 영향을 받았다면
- ji) 조건 또는 사정: 조건 또는 사정(condition or consideration)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면
- iii) 전매·처분·사용에 따른 사후귀속이익 :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면
- iv) 특수관계 :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 미쳤다면

#### 2) 대체 평가방법(Alternative Method)과 적용순서

현재 WTO관세평가협정은 실제적 개념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무상 수입물품처럼 실제 수출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condition or consideration)이나 구매자와 판매자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는 등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정은 최우선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인 거래가격방법 이외 에 추가로 동종 ·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방법, 국내판매가 격방법 등 5가지의 대체할 수 있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 다. 과세가격 결정의 최우선 기초인 거래가격방법을 포함하여 6가지 방법들을 실무상 제1방법, 제2방법, 제3방법 등으로 부르며, 제2방법부 터 제6방법까지를 이 책에서는 대체방법(Alternative Method)으로 통칭 하다.

#### ■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1방법 : 거래가격방법(Transaction Value Method)  $\Rightarrow$  법 제30조, 협정 제1조

제2방법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방법(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goods Method) ⇒ 법 제31조, 협정 제2조

제3방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방법(Transaction Value of Similar goods

Method) ⇒ 법 제32조. 협정 제3조

제4방법 : 국내판매가격(공제가격)방법(Deductive Value Method)

⇒ 법 제33조, 협정 제5조

제5방법: 산정가격방법(Computed Value Method) ⇒ 법 제34조, 협정 제6조

제6방법: 합리적 방법(Fallback Method) ⇒ 법 제35조. 협정 제7조

6가지 평가방법은 순차적으로 적용(Sequential Application)되어야 하다

제1방법은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으로써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거래가격이 없거나, 있더라도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배제된 경우에만 대체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입자가 제4방법 과 제5방법의 적용순위를 바꿀 것을 요청할 경우 제5방법을 제4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제5방법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4방법과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3)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관세평가에서는 수입자가 제출하는 가격신고 및 각종 과세자료의 신 뢰성은 관세평가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협정은 그 신뢰성의 판단기 준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제시하면서, "세관당국은 국내 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란 어떤 기업의 자산과 부채 등을 기 록하는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특정시기, 어떤 국가 내에서 의견일치가 인정되고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받는 회계원칙을 말한다.

####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정보의 활용 예

- 공제가격방법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 수입국의 GAAP에 따른 자료
- 산정가격방법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 생산국의 GAAP에 따른 자료
- 가산요소인 생산지원(금액)의 배분 및 결정 : GAAP에 따른 자료

#### 4) 과세환율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외국통화인 경우 이를 내국통화로 환산해야 한다.

#### 과세가격 = 거래가격(외국통화) × 환율

화세가격 결정을 위해… 사용될 환율은 수입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표되어야 하며,… 상거래에 사용된 통화의 현재가치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수입국의 통화로 반영하여야 한다.

(협정 제9조 제1항)

과세환율은 수출입시 적용될 수 있도록, 수입국 화폐의 현행가치를 반영해 공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국에 위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8조에서 과세환율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정하는 주간단위 환율이며, 적용 시점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점으로 하고 있다.



#### 거래가격방법(제1방법)

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 1. 거래가격방법 (Transaction Value Method)

#### 1) 거래가격

관세평가의 기초는 최대한 평가대상 물품의 '거래가격'이 되어야 하며,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거래가격방법' 또는 실무상 '제1방 법'이라 한다.(법 제30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물품이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것이어야 한다.
 (협정 제1조 제1항) 거래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이 책에서 "실제지급가격"이라 한다)에 협정 제8조에 의해 가산 조정된 가격이다. 즉 거래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공제요소를 뺀 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한 가격이 된다.

#### 거래가격 = (실제지급가격 - 공제요소) + 가산요소

가산요소는 협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의 6가지에 한정되며, 이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되어야 한다.(법 제 3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 - i)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Commissions and Brokerage)
  - ii) 관세목적상 해당물품과 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비용 및 포장 비용 (cost of Containers and Packing)
  - iii) 생산지원(Assists) 물품 및 용역의 가격(value) 또는 인하차액
  - iv) 권리사용료(Royalties and Licence Fees)
  - v) 사후귀속이익(Proceeds)
  - vi) 수입항까지 운임, 보험료 및 운송관련 비용(cost of Transport, cost of Insurance and Charges associated with the transport)

공제요소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과 구분되는 경 우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4가지를 말한다 (법 제30조 제2한)

- i) 수입 후 행하여지는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및 기술지원 비용(charges)
- ii) 수입항에 도착한 후 운송 비용(costs)
- iii) 수입국의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 iv) 연불이자

#### 2) 거래가격방법의 의의

거래가격방법은 여러 가지 평가방법 중 하나라기 보다는 관세평가의 최우선적인 기초이다.

● 이 협정에서 과세가격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기초(the primary basis for customs value)는 제1조에 정의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이다. ●

(협정 일반서설)

● 관세목적의 물품평가에 대한 기초는 최대한(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평가대상 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이 되어야 한다. <sup>59</sup>

(협정 일반서설)

<sup>66</sup>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sup>99</sup>

#### 2. 수출판매(Sale for Export)

●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물품이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when sold for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것이어야 한다. <sup>50</sup> (협정 제1조 제1항)

거래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기초하며, 이 실제지급가격은 일반적으로 송품장 상의 가격을 말한다. 그런데 어떤 물품은 판매 거래가 아닌 무상증여, 임대나 위탁판매거래에 의해서, 또는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개의 판매 거래(series of sales)에 의해 수입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거래에서의 가격이 협정에 따른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협정은 실제지급가격 앞에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서의 가격(price) 만을 거래가격의 기초가 되는 실제지급가격으로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라는 문구에 대해 알아본다.

#### 1) 판매(Sale)

판매란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 간에 물품의 소유권과 대가의 교환을 의미한다. 판매가 일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거래가격방법에서 매우 중요하다.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물품의 소유권과 대가가 교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지급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거래가격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협정에서는 판매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나, WCO 지침에서는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전형적인 유형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권고의견 1.1, 시행령 제17조)

#### i )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Free consignments)

가격(대가)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는 판매로 간주되지 않는 다. 예) 선물, 견본, 판촉물

#### ii) 위탁판매수입물품(Goods imported on consignment)

위탁판매물품은 판매의 결과로 수입국으로 송부된 것이 아니고, 가능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공급자의 계산 하에 판매할 목적으로 송부된 것이다. 따라서 수입시점에는 판매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이익분배거래(판매의 결과에 따라 물품이 수입되고 수입국시장에서 물품이 판매된 때 실현된 이익의 일부가 가산되는 특정 가격으로 견적 송품장이 작성된다. 이러한 종류의 거래는 최종가격의 결정에 대한 유 보 조항이 있는 판매로 간주되어야 한다)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 iii)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수입 후에 판매하는 중개인(intermediaries)이 수입한 물품

판매되지 않은 채 중개인에게 인도된 물품으로 국제관례상 일반적으로 위탁판매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 물품을 말한다.

#### iv) 독립된 법인격(legal entities)이 없는 지점(branches)이 수입하는 물품

판매는 반드시 별개의 두 당사자들 간의 거래이어야 한다.

#### v)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hire or leasing)

임대차 계약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비록 계약내용에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선택권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판매는 아니다.

#### vi) 송하주 소유로 남아있는 대여 물품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임대나 대여 물품은 판매가 아니다.

## vii) 송하인이 수입자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국에서 폐기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웨이스트 또는 스크랩)

이러한 '판매'로 볼 수 없는 예시들을 고려하여 우리 고시에서는 "판매는 각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15조제1항)

#### ▶ 가장 넓은 의미의 판매(sale in the widest sense)

또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관세목적상 최대한 사용되어야 한다는 협정의 기본 취지에 따라 '판매'라는 용어는 가장 넓은 의미(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는 함께 해석되는 협정

제1조와 제8조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권고의견 1.1) 여기서 '함께 해석되는 협정 제1조와 제8조'란 가산요소 중 생산지 원(assist)을 가산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거래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 圣八 今妻 声 野房 景景 (呵如 5.1)

- (i) 국의 공작기계 수입자 X는 해외에서 제조된 특수기계를 수입하는데, 이 기계는 X가 수출자 E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전기모터가 장착되어 있다.
- (ii) I국의 수입자

X는 남성용 셔츠를 수입하는데, 이 셔츠에 사용되는 직물은 X가 수출자 E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며, 수출자 E는 재봉과 부재료(단추, 실 및 라벨) 제공에 대한 책임만을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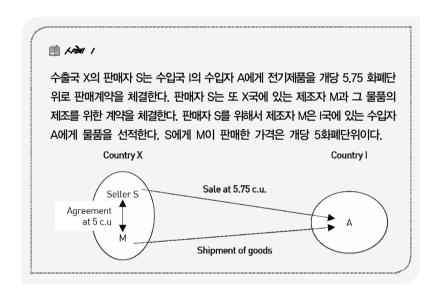
- (iii) |국의 수입자 X는 플라스틱제 톱니바퀴를 수입하는데, 이 톱니바퀴는 X가 수출자 E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폴리아미드 주형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것이다.
- (iv) 국의 X는 사용 중이던 공작기계를 수리하기 위해 수출자 E에게 보내어 수리 후 수입하는데, X는 E에게 수리비용만을 지급한다.
- → (i)~(iii)까지의 사례에서는 수입자 X와 수출자 E 간에 수입물품에 대한 판매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X가 무상으로 제공한 전기모터, 직물 또는 주형 등은 가산요소인 생산지원으로서 X가 E에게 지급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얼핏 보면, (iv)의 사례는 나머지 사례와 다른 사안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판매를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 제1조와 제8조를 함께 해석'하는

경우, 수리를 위해 수출자에게 보낸 공작기계를 생산지원(assist)으로, 수리비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WCO 예해 5.1)

'소유권과 대가의 교환'이라는 일반적인 판매의 정의를 적용한다면, 위 (iv)의 사례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례에 대해서도 판매를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거래에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2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을 것이 기에, 제6방법에 따라 협정 제1조와 제8조를 신축적으로 함께 적용하여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최대한으로 거래가격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협정의 취지를 부합하도록 판매를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2)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 (when sold for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

'수출파매'라 우리나라의 관세영역으로 수입물품을 가져오게 한 판 매를 말하며, 물품의 실질적인 국제간 이전(involving an actual international transfer of goods)에 해당하는 거래만이 거래가격방법으 로 물품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권고의견 14.1)



→ 이 경우에 판매자 S와 수입자 A의 거래로 인해 물품이 실질적으로 국제가 이동되고 수입국에 수출판매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 거래 는 협정 제1조에 따른 평가의 기초가 된다. 즉,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서 판매자(S)는 수출자(M)와 다를 수 있다.

# 수입국 I의 구매자 B는 동일국 I의 판매자 S로부터 물품을 구매한다. 판매자 S는 그 물품을 X국에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X국으로부터 물품의 선적 및 수출을 위한 필요 조치는 판매자 S가 완료하고 그 물품을 구매자 B가 I국으로 수입한다. Country X Country I Shipment of goods

→ 거래가 반드시 특정 수출국에서 성립할 필요는 없다. 판매자 S가 X국, I국 또는 제3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구매자 B와 판매자 S의 거래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이고 이 거래가 협정 제1조에 따른 평가의 기초가 된다.

#### M APM 3

X국의 판매자 S는 I국의 구매자 B에게 물품을 판매한다. 해당 물품은 X국에서 산물로 선적된 후, T국의 환적항에서 (판매자) S에 의해 포장된 후 I국으로 수입된다.

→ 사례 2에 적용한 원칙은 이 사례에서도 적용된다. 수출국이 X인 지 T인지 여부는 이 사례에서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판매자 S와 구매자 B의 판매계약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를 구성 하므로 제1조에서 정하는 해당 물품에 대한 평가의 기초가 된다.

#### M KARN 4

X국의 판매자 S는 I국의 구매자 A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선적한다. 해당 물품이 공해상에서 운반되는 중, 구매자 A가 판매자 S에게 대금지급을 할 수 없으므로 물품 인도를 받을 수 없다고 통지한 경우 판매자는 I국에 소재한 또 다른 구매자를 물색하여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 B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따라서 B가 해당 물품을 I국으로 수입한다.

→ 위 사례에서 판매자 S와 구매자 B의 판매는 물품의 수입으로 귀결되었고 결과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가 된다. 해당 거 래는 물품의 국제간 이전을 구성하므로 제1조에 정하는 해당 물품의 평가에 대한 기초가 된다.

#### M KAZII 5

X국의 다국적 체인호텔의 본사는 호텔운영을 위한 비품을 구매한다.

매년 초 I,  $I^2$  및  $I^3$ 국의 체인호텔은 본사에 비품 구매주문서를 제출한다. 본사는 각 체인호텔의 모든 주문서를 합산한 다음 X국의 여러 공급자들에게 구매 주문서를 발행한다. 공급자는 각 체인호텔에 직접 비품을 보내거나 본사로 선적하면 본사는 체인호텔에 송부한다. 어느 경우에나, 공급자가 X국의 본사에 대금을 청구하면 본사는 각 체인호텔에 개별적으로 비용을 청구한다.

- → 위 사례의 경우 X국에 모두 소재하고 있는 본사와 공급자 사이의 판매는 물품의 국제간 이전이 아닌 수출국내의 국내판매에 해당한 다. 왜냐하면 본사는 공급자로 부터 비품을 구매하고 난 다음, 체인 호텔이 소재한 국가로 수출하기 위하여 비품을 각각의 별개의 체인 호텔에 판매하다.
- → 이 사례의 경우 본사와 각각의 별개의 호텔사이의 거래는 수입국으로 수출을 위한 판매를 구성한다.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들 판매는 제1조에서 정하는 해당 물품에 대한 평가의 기초가 된다.

#### M MADE 6

I국의 구매자 A는 X국의 판매자 S로부터 의자 500개를 개당 20 화폐단위로 구매한다. 구매자 A는 판매자 S에게 의자 200개는 I국에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나머지 의자 300개는 X국에 있는 보세창고로 선적하도록 지시한다. 다음으로 구매자 A는 나머지 의자 300개를 I국의 구매자 B에게 개당 25 화폐단위로 팔기로 합의한다. 구매자 A는 다음으로 X국에 있는 자신의 보세 창고 운영인에게 해당 물품을 I국의 B에게 직접 선적하도록 지시한다.

- → 이 사례에서 해당 물품은 두 가지 경우로 평가된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개당 20 화폐단위로 판매자 S와 구매자 A사이에 이루어진 거래 는 수입국에서 수출을 위한 판매를 구성하므로 의자 200개는 협정 제1조에서 정하는 평가의 기초가 된다.
- →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보세창고에 장치된 20 화폐단위의 판매가격은 대상 물품이 I국으로 수출판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목적으로 는 적합하지 않다.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전을 포함하고 있는 25 화폐단위로 이루어진 구매자 A와 구매자 B사이의 판매가 수입국 으로 수출을 위한 판매를 구성하며 협정 제1조에 따른 평가의 기초 가 된다.

### ▶ ... 판매된 때에(when sold)

협정 제1조에서는 거래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 실제지급가격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판매된 때 (when sold)"란 표현은 실제지급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특정시간 기준(a time standard external)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의 유형(type of transaction)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매된 경우에"로 해석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다른 거래가격배제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거래가격은 판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과 계약 체결일 이후의 어떠한 시가 변동(market fluctuations)과도 상관없이 수용되어야 한다. (해설 1.1)

#### ▶ 연속 판매에서 수출판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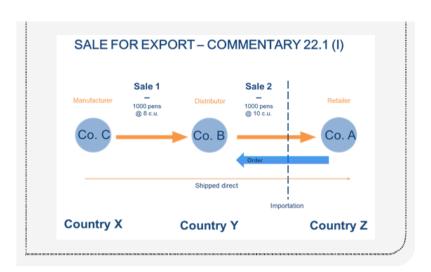
물품이 제조업체에서 출발하여 수입국의 최종 구매자에게 도착할 때까지 둘 이상의 연속적인 판매(series of sale, or successive sales)에 의해 수입되는 경우, 어떠한 판매에서의 가격을 거래가격의 기초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चर्न स्वालास 'नेश्रास्थला न्रेड्डिंग। निर्वेश स्वाल

수입국 Z의 소매상 A사는 수출국 Y의 유통업자 B사에 특정 사양의 펜(pen)을 주문한다. 이 주문을 받은 B사는 제3국인 X국의 제조업자 C사에게 A사의 주문 사양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Z국의 A사에 선적하도록 한다.

A사와 B사 간의 펜의 가격은 개당 10 c.u.이며, B사가 C사에 지급한 가격은 개당 8 c.u.이다. A사의 주문 사양에 따라 B사가 C사에 주문한 펜에는 A사의 상호와 주소가 표시된다.

A사와 B사간 매매계약에 따라 A사는 수입 펜을 Z국에서 판매한 후 그 전매가 격의 20%를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 수입국 소매상 A와 유통업자 B 간의 판매는 '물품의 국제간 이전'을 수반하는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이다. 또한, 유통업자 B와 제조업자 C 간의 판매도 그 계약 제품(펫)에 수입자 A의 상호와 주 소가 표시되고, C가 직접 수입국 Z의 A에게 선적하도록 하고 있으므 로 '국제간 이전을 수반하는 수출판매'로 간주될 수 있다. 통상 물품 이 수입국에 도착하기 직전에 발생하는 판매를 '마지막 판매(last sale)'라 하고, 그 이전의 판매를 '첫 번째 판매(first sale)' 또는 '이전 판매(earlier sale)'라 한다. ★ 쟁점은 이 두 판매 중 어떠한 판매에서 의 가격이 거래가격의 기초가 되는지 이다.

<sup>★</sup> 연속 판매에서 첫 번째 판매(first sale)와 마지막 판매(last sale)라는 용어는 시간적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물품의 이동 순서를 기준으로 한다. 위 사례에서 마지막 판매는 A와 B 간의 판매이 며, 첫 번째 판매는 B와 C 간의 판매이다.

→ 이러한 연속 판매 상황에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첫 번째 (또는 이전) 판매가 아니라, 수입국으로 물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마지막 판매(last sale)에서 지급된 가격이다. 협정 제1조의 근저에 깔려 있는 전제는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수입국에 소재하고 있고, 실제지급가격은 이 구매자가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마지막 판매를 기초로 한 거래가격이 전체 거래의 실체를보다 더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첫 번째 판매를 기초로 거래가격을 결정한다면, A가 B에게 지급하는 사후귀속이익(proceeds)은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수 없을 것이다. (예해 22.1)

우리 고시에도 최근 '수출 판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신설하였다.

#### ■ 고시 제15조(수출판매의 범위)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 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은 해당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에서의 가격을 말한다.



# 거래가격방법(제1방법)

Ⅱ.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1

- 1.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PAPP)
-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물품이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것이어야 한다. (협정 제1조 제1항)

#### 1) 실제지급가격의 개념

협정은 '관념적(notional) 또는 규범적(normative)'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positive)' 개념의 가격에 기초한다. 이 실제적 개념이란 '물품의 가격이 얼마여야 하느냐(what the value of the goods should be)'가 아니라 '물품의 가격이 얼마인지(what the value of the goods is)'에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다. 이 개념의 핵심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다.

실제지급가격(거래가격)은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격(agreed price)이다. 이 실제지급가격이 거래가격의 기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 스스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관은 법령에서 정한 거래가격 배제 사유나 '합리적 의심(reason to doubt)' 등이 없다면, 단지 신고된 가격이 일반적인 시장가격이나 다른 거래에서 동일한 물품의 가격보다 낮다거나, 할인된 가격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격을 부인할수 없다. 즉, 일물일가(一物一價)가 아니라 일물다가(一物多價)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실제지급가격에 대한 협정과 관세법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for the imported goods)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total payment)이다.
 (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은 수입물 품의 판매조건(as a condition of sale)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행하였거나 행하여야 할 모든 지급액(all payment)을 포함한다. <sup>59</sup> (협정 부속서 Ⅲ, 7항)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 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 <sup>99</sup> (법 제30조 제2항)

실제지급가격은 일반적으로 송품장이나 신용장 등의 무역서류에 나타나는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price)이다. 그러나 만약 송품장 등에 표시된 가격 외에 다른 형식이나 명목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 지급액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서 지급되거나,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다.

실무적으로 실제지급가격은 직접지급과 간접지급을 합한 금액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직접지급 금액은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표시된 물품의가격을 말하며, 그 외 다른 지급액을 간접지급액이라 한다. 예를 들어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채권과 채무를 서로 상계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금액, 또는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구매자가 대신 변제하는 금액등 가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가격이다.(법 제30조 제2항)

실제지급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한(for the imported goods) 가격을 말하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수입물품과 관련되 지 않는 배당금이나 다른 지급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당 금은 기업에서 투자에 대한 수익이며, 특정 물품의 판매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라는 단어는 지급시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개념의 가격이란 의미이다.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이란 말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합의에 의해 대가의 지불의무가 성립되었다는 것이지 실제 지급시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입(납세) 신고 당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지급수단이 반드시 화폐일 필요는 없다. 지급은 신용장 또는 유통 가능한 증서 등 여러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

#### 2) 가격 할인(discount)

할인이란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가격에서 일정부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미국 관세청 국제무역용어집에서는 "상품 또는 금융증권의 원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무에서 '가격 할인'이란 첫째, 판매자와 구매자가 과거의 가격이나 가격표(list price) 또는 시세보다 인하하여 합의한 가격과 둘째, 합의(계약)한 가격을 변경하여 인하한 가격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 단락에서는 첫 번째 종전 가격, 가격표 또는 시세보다 인하하여 합의한 가격을 다루며, 두 번째 의미는 다음의 '가격의 변경'을 설명하는 단락에서 살펴본다.

관세평가에서 '가격 할인'과 관련한 쟁점은 수입물품의 가격이 할인된 경우, (i)이 할인금액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여부와 (ii)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의 기초로서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여부이다.

(i)먼저 '할인금액' 즉, 종전 가격이나 가격표 등의 가격과의 차이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여부는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쟁점이다. 앞서 본 실제지급가격의 정의는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이므로 지급하지 않는 금액 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금액인 '할인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될 수없다. 다만, 겉으로는 '할인'의 형태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구매자가 해

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거나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등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이나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접지급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은 '조건 또는 사정'의 금액 등 간접지급액이지, '할인금액' 그 자체는 아니다.

(ii)다음으로,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의 기초로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이 쟁점은 사실 관념적 개념의 가격을 채택한 브뤼셀평가협약(BDV)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BDV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한 없이 허용되는 할인, 즉 소위 '정상 할인(normal discount)'만을 인정하였고, 그렇지 않은 할인은 '비정상 할인(abnormal discount)'이라고 하여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격에 기초한 실제적 개념을 채택한 GATT관세평가협정부터는 종전 가격이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된 가격에 비해 낮거나 할인된 가격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현행 협정에서는 거래가격 배제사유라 하는 4가지 조건(①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②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③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귀속이익, ④특수관계의 영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할인된 가격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인되지 않는다.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권고의견을 통해 할인된 가격을 거래 가격의 기초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러 유형의 할 인과 평가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들 권고의견은 협정의 할인에 대한 처리 원칙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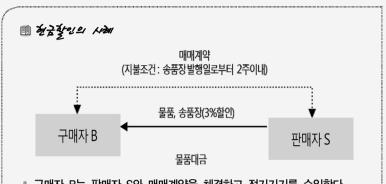
로, 이 지침들에서 설명하는 현금할인이나 수량할인 등만이 관세평가 상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다.

#### ▶ 현금할인(cash discount) (권고의견 5.1~3)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특정기간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제공 되는 할인을 말한다. 현금할인에 대한 평가처리는 다음과 같다.

#### ■ 현금할인에 대한 평가 처리

- i) 수입물품의 평가에 앞서 현금할인을 이용한 경우 할인된 가격은 거래가격 결정시 수용된다.
- ii) 현금할인을 이용할 수 있지만 평가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할인이 아직 이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거래가격 배제사유에해당하지 않는다.
- iii) 현금할인을 이용할 수 있지만 평가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이 거래가격의 기초가 된다.



- 구매자 B는 판매자 S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기기를 수입한다.
- 매매계약에 지급조건은 송품장 발행일부터 2주 이내이며, 구매자가 지불조 건을 이행하는 경우 판매자의 가격표에 명시된 가격에서 3% 할인된 금액으 로 구입이 가능하다.
- 송품장에는 가격표상의 가격과 3% 할인액이 적혀 있고 할인후의 금액이 송품장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이 경우 송품장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가?
- → 송품장 발행일부터 2주내에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격표의 가격에서 3% 할인된 금액, 즉 송품장 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다. 단, 대금 지급이 2주를 경과하여 할인 전 가격(가격표상의 가격)으로 실제 지급되는 경우 송품장 가격이 할인 후 가격이라 할지라도 할인 전 가 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 따라서 과세가격 결정은 할인후의 가격에 근거하여 계산하고 실제 대금 지급이 할인전의 가격으로 이루어진 경우 세관에 입증자료와 함께 수정신고 하여야 한다

#### ▶ 수량할인(Quantity discount) (권고의견 15.1)

일정기가동안 구매된 수량에 따라 물품가격에 제공되는 할인이다

일반적으로 수량할인은 그 근거와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할인된 가격이 수용된다. 단, 수량할인은 평가대상이 되는 해당 선적분 에 적용되어야 하며, 이전 선적분에 소급 적용된 할인을 이번 선적분에 적용할 수 없다.

# 1 43 grove Mail

- 판매자 S는 다음과 같은 가격조건으로 전기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동일년도의 판매수량에 대해 1~9개 : 없음. 10~49개 : 5%. 50개 이상: 8%의 수량할인이 제공된다.
  - -연말결산시 1년간 총 구매수량에 따라 위 할인에 덧붙여 3%의 추가할인이 소급 계산되어 제공된다.

# i) 첫 번째 시례

- 한국의 수입자 B는 5%할인된 가격에 27개를 구매하고 일괄 수입한다.
- 한국의 수입자 C도 5%할인된 가격에 27개를 구매하였지만 일괄 수입하지 않고 매번 9개씩 3차례에 걸쳐 수입한다.

→ 수입자 B, C 모두 5% 할인된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이 된다. C의 경우처럼 개개의 분할 수입된 물품이 할인대상 수량에 미치지 못한다하더라도 실제 수입물품에 할인이 이루어졌다면 할인 후의 가격이수용되는 것이다.

#### ii) 두 번째 사례

- 수입자 B는 첫 번째 27개 수입 후 동일년도에 추가로 42개를 구매하여 수입한다.
- 이 때 42개의 두번째 수입에 대해 8%의 수량할인이 이루어지고, 이와 함께 이전 첫 번째 수입된 27개에 대한 3%의 소급할인이 추가 적용된 금액이 청구되었다.
- → 42개의 두 번째 수입물품에 대한 8% 할인은 허용된다. 구매자가 이전에 구매한 수량을 고려하여 판매자가 수량할인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조건 또는 사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처음 27개 구매와 다음 42개 구매가 이러한 누적할인을 약정하는 하나의 일반(포괄)계약의 대상인지 여부는 상관없다.
- → 하지만 첫 번째 수입 분에 소급 적용된 3% 추가 할인은 두 번째 수입물품에 허용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수입 분에 소급 적용된 3% 추가할인의 처리에 대해서는 '종전거래와 관련한 신용채권'(권고의 견 8.1)과 '가격조정약관'(예해 4.1)에서 설명할 것이다.

# iii) 판매자 S는 연말결산 과정에서 구매실적이 우수한 구매자 B에게 총 구매한 물품에 대해 3%의 할인을 추가로 제공한다.

→ 3%의 추가할인은 앞의 두 번째 사례의 추가할인과 마찬가지로 종전거래의 수입물품에 대한 할인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 3-1) 가격조정약관

상관행에 따라 거래 또는 물품의 속성 등 불가피한 사유로 판매계약 체결 시점에 가격을 확정할 수 없거나 일단 잠정적으로만 정하는 대신 그 사유가 해소되는 때에 가격을 확정하는 가격공식(formula)을 미리 정한 약정, 즉 가격조정약관(가격조정조항, Price Review Clause, PRC)을 두는 경우가 있다.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계약에서는 최종 가격이 수입 후에 결정된다 하더라도,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이 약관(조항)에 따라 결정되는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최종 가격에 기초하여야 한다. 실제지급가격은 해당 계약(약정)에 명시된 데이터를 기초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조정약관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condition or consideration)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격조정약관**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형태로 다음 세 가지를 볼 수 있다.(예해 4.1)

#### ■ 가격조정약관이 발생하는 거래 유형 (예시)

- i) 특별히 주문 제작되는 플랜트나 자본설비처럼 물품의 인도가 최초 주문시 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지는 경우로, 최종 가격은 노무비, 재료비 등 해당 물품 생산에 투입된 각종 비용의 증감을 반영하는 별도의 합의된 기준 (계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 ii) 주문된 다량 제품의 생산 및 수입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 동일한 계산식을 적용하지만 생산원가 등의 변동에 따라 각 제품의 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
- iii) 물품가격이 잠정적으로만 책정되고 최종 가격은 특정 시점의 검사 또는 분석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로, 식물성기름의 산도나 광석의 금속함량 등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형태의 가격조정이 관세평가 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시행규칙에 가격조정약관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관세청의 가격공식(formula)에 대한 인정기준을 수용한 것이다.(HRL542701 dated Apr. 28, 1982, TAA No. 47)

#### ■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제3항 제3호

- 3. 수입 후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최종 거래가격 산출 공식이 확정되어 있을 것
-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될 것
- 다.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할 것

#### 3-2) 가격의 변경

실제 무역거래에서 계약 체결 당시에 합의된 가격이라도 거래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가격의 변경은 계약 체결 이후 해당 물품이 선적되기 전, 국제 운송 도중,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한 후 수입신고 되기 전,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 된 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심지어는 당초의 가격이 지급된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이 경우 가격 인하는 리베이트 등으로,인상의 경우는 추가 지급으로나타나게 된다. 관세평가에서 이 같은 가격의 변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협정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하여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이라는 실제지급가격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하였거나 수입신고가수리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즉, 가격 인상)은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반대로, 가격이 인하, 즉 하향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수입신고(수리) 시점에는 확정되는 것이원칙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계약 변경에 따른 가격 인하를 언제까지나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수리)후 가격의 인하는 관세평가 목적 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 가격 인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의 기준은 국내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문제로, 각 국은 이를 자국의법령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고시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실제지급가격) 제2항

②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이루어지는 가격에 대한 환불, 감액 등은 실제지급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이전에 규칙 제3조제3항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격조정약관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이 해당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미국 19 U.S. Code §1401a-Value (b)(4)(B) "Any rebate of, or other decrease in,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that is made or otherwise effected between the buyer and seller after the date of the importation of the merchandise into the United States shall be disregarded in determining the transaction value under paragraph (1)"
  - **EU**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2015/2447 of 24 November 2015 §130(Discount) "3, Discount arising from amendments to the contract subsequent to the time of acceptance of the customs declaration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 케나다 Customs Act §48(Transaction value of the goods) "(5)(c) by disregarding any rebate of, or other decrease in,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goods that is effected after the goods are imported."

계약 변경에 따른 가격 인하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수입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를 보 면, 미국은 '물품의 수입일(date of the importation)'로, EU는 '세관신고 수리시점(time of acceptance of the customs declaration)'으로, 캐나다 는 '물품이 수입된 후(after the goods are imported)'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과거 일부 질의회신 사례 등에서 이 '수입 후 가격의 변경(인하)'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when sold for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 줄여서 '수출판매'라 한다)'의 개념에 근거하여 해석하기도 하였으나<sup>\*</sup>, '수출판매'는 거래가격의 기초로서 자격이 있는 '양 당사자 간의 거래(판매)'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가격의 변경'에 대한 직접적인 지침을 주는 것은 아니다. WCO 해설 1.1에서 "수출판매된 때(when)란 시간에 대한 어떤 지침(indication)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단지 관련 거래의 유형(type of transaction involved)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 "수입 후에 변경된 가격은 이미 수출판매가 끝난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에 해당"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sup>★ &#</sup>x27;선적 전 인하된 가격은 실제 지급가격으로 볼 수가 있으며, 보세구역 반입 후 인하된 가격은 실제 지급가격으로 볼 수가 없음'(재경부 관협 47040-112, 1998.6.10.),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이라 함은 동 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을 말하므로 수입후에 변경된 가격은 이미 수출판매가 끝난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에 해당함'(관세청 평가분류 47221-131, 2001.2.6.),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결정 11-02-01(2011.9.2.) 등 다수

그러나 모든 수입 후 가격의 인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계약 체결 시 수입 후 특정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결과 수입 후 이루어지는 가격 변경(인하)은 실제지급가격에 반영되어야 한다. 즉, 3-1)에서 설명한 가격조정약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우리나라 도착 후 인하된 가격도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된다. (고시 제16조제2항 단서)

엄밀히 말해, 3-1)에서 설명한 가격조정약관은 수입 당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수입 후 가격의 변경과는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가격조정약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수입 당시 가격이 잠정적이라는 의미이므로, 실무상 가격의 미확정과 가격의 변경을 달리취급할 실익은 없다.

# 1 4%013 Et (rebate) NA

- 국내 A사(수입자)는 해외 반도체 제조업체인 B사(수출자)로부터 반도체를 수입하여 판매한다.
- 수입자는 수출자의 가격리스트 상의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그 가격으로 수입신고한다.
- 그 후 수입자는 전매가격이나 수량 등 국내 판매상황을 고려하여 수출자로 부터 할인된 견적가격(Quote price)을 승인받아 국내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을 판매한 후 가격리스트 상의 가격과 견적가격의 차액에 대해 환불받고 있다. (반도체 시장에서 통상 이러한 거래방식을 Ship & Debit이라 한다.)

→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발생하는 환불 등은 수입 당시 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경우에만 실제지급가 격으로 인정된다. 이 사례와 같이 수입이 완료된 후 국내 시장에서 의 판매상황을 고려하여 변경된 견적가격은 가격조정약관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불된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의 결정에 고려되 지 않는다

#### 111 子即八旦 李八八

- 구매자 B는 판매자 S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최저거래액을 정하 여 5%의 할인을 받아 수입하고 있다. 단. 연간 최저거래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수입액에 관한 5%의 할인 상당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 연간 수입액 집계결과 최저거래액에 미달하여 구매자는 총 수입액의 5%를 판매자에게 지급하였다.
- → 구매자 B와 판매자 S의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연간 최저거래액이 달성 되지 않은 경우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그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 圓 今世 草 春亚三年四 登记/河 (登录 春亚三年四)

-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를 구매하여 수입한다.
- 이 장비는 수입 당시 200개 채널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형으로 판매되었다. 그러나 이 장비에는 500개 채널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상태였으며, 고속채널에 사용되는 소프트 웨어는 암호화되어 잠긴 상태로 수입되었다. 구매자 B는 기본형 장비의 가 격으로 \$ 10,000을 지급하였다.
- 이후 구매자 B는 반도체 생신량 증가로 500채널의 고속 테스트가 필요해지자, 이 장비에 내장된 고속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판매자 S에게 추가로 \$ 5,000을 지급하고 소프트웨어 잠금을 해제할 인증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다. 인증 소프트웨어는 암호코드가 적힌 인증서를 수입하여 판매자 S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 장비에 설치한다. 그러면 해당 장비는 500채널의 고속테스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 인증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장비의 고급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5,000은 수입되는 인증서(인쇄물)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이 아니라, 이미 수입된 장비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조심 2009관41, 2010.11.11.)

#### 4) 일괄거래(package deal)

일괄거래라 서로 관련된 물품군 또는 함께 판매된 물품군에 대한 대가를 총 일시금(Lump sum)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거래를 말한다.

여러 다른 물품이 일괄거래 되면서 각 품목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가격을 결정할 것인지 다음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예해 8.1)

#### ा विदेश ग्लास्ट्रिहें 🗐

- 서로 다른 물품들이 판매되었으나 송품장에는 단일한 전체가격으로 표시된 경우
- → 제1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었다면 송품장에 단 일한 전체가격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이 제1방법 배제사유가 되지 않는다.
- → 실무상으로 물품별로 관세율이 다른 경우 평가처리방법의 예로
  - 첫째 수입실적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가격을 활용 하거나
  - 둘째 수입자가 제시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기초한 적 절한 가격 배분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अधिमद्रमधा प्रक्रा २

- OO상사의 구매담당자는 중국 현지에서 A급 1ton, B급 1ton, C급 1ton으로 구성된 세 가지 다른 등급의 물품 총 3ton을 ton당 \$1,000로 일괄구매한다.
- **시례 2-1**. O O상사는 A급 물품 1ton만 국내용으로 우리나라로 수입하고 나머지는 현지 가공공장에 재판매한다.
- → 이 경우 국내용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판매가격이 없으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단, 등급을 고려하여 총 가격에서 배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면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시례 2-2**. O O상시는 전체 3ton 중 각 등급별로 동일한 비율로 1ton만 수입하고 나머지 2ton은 현지 가공공장에 재판매한다.
- → 수입된 물품이 동일한 비율이라면 총 \$3,000 중 1/3인 \$1,000이 실제지급가격이 된다.

#### 🗐 र्थु अस्तर्भा । असे ३

- ○○상사는 관세율이 15%인 물품A와 6%인 물품B를 총액 \$1,000으로 일 괄거래로 구매한다. OO상사는 수입 시 관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송품장 에 A물품은 \$350로 B물품은 \$650로 표시하여 수입신고한다.
- → 위 사례와 같은 가격조작행위는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condition or consideration)에 해당되어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 5) 일반적인(Prevailing)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나 덤핑가격으로 판매된 물품

동종 · 동질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제1방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권고의견 2.1)

또한 덤핑가격으로 판매된 물품은 "평가절차가 덤핑방지를 위해 사 용되지 않아야 한다 "라는 협정의 원칙에 따라 덤핑가격이라고 하여 거 래가격 적용을 배제하거나 거래가격에 덤핑마진폭을 가산하지 않아야 한다 (예해 31)

#### ▶ 반짝 세일(Flash Sales) (권고의견 23.1)

'반짝 세일'은 잠재적인 구매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단기간 동안 매우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하는 판촉활동을 말한다. 이 '반짝 세일' 중에 구매한 매우 할인된 가격이 협정 제1조에 따른 거래가격의 기초로 수용될 수 있는지, 또한 제2, 3방법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 → 단지 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사실 만으로 해당 가격을 제1조의 목적 상 부인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다른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짝 세일 중에 구매 한 매우 할인된 가격도 거래가격의 기초가 된다.
- → 또한, 제2,3방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짝 세일 중에 구매한 가격도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제2,3방법의 시간 기준(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등에서 고려되는 동일한 상업적 관행 및 시장 조건이 반짝 세일 이외의 상황에서는 통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2. 간접지급

#### 1) 간접지급의 개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송품장 등에 표시된 직접지급에 간접지급금액을 포함한 가격을 뜻한다. 협정 제1조 주해의 'total payment'나 부속서Ⅲ 제7항의 'all payment'라는 단어에 이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법 제30조 제2항)

-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is the total payment made or to be made... <sup>59</sup>
  (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
-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includes **all payment** actually made or to be made as a condition of sale of the imported goods, by the buyer to the seller, or by the buyer to a third party to satisfy an obligation of the sel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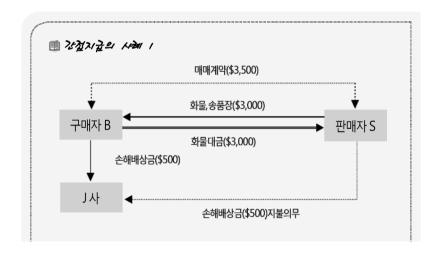
또한 실제지급가격의 정의를 잘 살펴보면 간접지급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고 간접지급을 표현하고 있다.



#### ■ 관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 1.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 2.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 3.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외국훈련비, 외국교육비 또는 연구개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 4. 그 밖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 구매자 B는 판매자 S와 기계 1대를 \$3,500에 구입키로 매매계약 체결한다.
- 한편. 판매자는 J사와 별도의 매매거래에 따른 운송중 화물손상이 발생하여 J사에게 손해배상금 \$500을 지불키로 약정하였다.
- 판매자 S는 자신을 대신하여 손해배상금 \$500을 구매자 B가 지불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번에 구매자 B가 수입하는 기계 1대(\$3,500)의 송품장 가격을 \$500을 공제한 \$3,000로 하였다.
- 이 경우 송품장 가격(\$3,000)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는가?
- → 구매자 B가 판매자 S를 대신하여 J사에 지불하는 \$500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구매자가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매매가격 \$3,500에서 공제된 \$500은 간접지급에 해당하여 실제지급가격의 일 부이다 따라서 과세가격은 직접지급 \$3,000과 간접지급 \$500을 합 한 실제지급가격 \$3,500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다.

# 

- 수입국의 가구도매업자 B(구매자 B)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E국의 제조업자 S(판매자 S)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판매자 S로부터 창고인도가격으로 가구를 수입한다. 거래 시점에 해당 수입물품은 판매자 S에 의해 E국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 구매자 B는 상기 수입물품에 관한 송품장가격을 지급하고, 판매자의 요구에 따라 판매자가 지급해야 할 상기 보관에 관한 보관료(해당 수입물품 반출입 에 관한 비용을 포함)를 E국의 창고업자 C에게 지급한다.
- 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 판매자의 요구에 따라 구매자 B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송품장 가격과 별도로 창고 업자 C에 지급하는 상기 보관료는 거래가격에 포함되는가?
- → 이 보관료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게 지급(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간접지급금액)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 2)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

(Credit made in respect of earlier transaction)

실제 무역거래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장기간에 걸쳐 유대관계를 맺으며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속적인 거래를 하다보면 앞서 이루어진 거래가 후속되는 거래에 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종전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가 후속거래에서 가격 결정에 반영되어 송품장 상에 할인의 형태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신용채권(Credit)금액은 이미 판매자에게 지급한 가격의 일부로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권고의견 8.1)

신용채권(Credit)을 발생시킨 종전의 거래에 대하여 평가처리방법은 후속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과는 별개로 처리 되어야 하며, 종전 선적분의 가격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는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앞서 [3-2) 가격의 변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 후 이루어진 가격의 인하를 인정하지 않는다.

## केस अरेगाल धुर्मिंद राष्ट्रियेस राक्षेत्र

- 한국의 수입자 B는 일본의 수출자 S로부터 카메라렌즈를 수입하고 있다.
- 지난 여름 수입자 B는 S로부터 카메라렌즈 100상자를 \$10,000에 구입하였다. 그런데 수입 후 카메라 생산에 투입한 카메라렌즈 10상자에서 스크래치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없었다.
- \* 이번에 다시 카메라렌즈 100상자를 같은 가격(\$10,000)에 수입하는데, 수출 자 S는 송품장상에 가격을 \$9,000로 표시하였고 \$1,000은 지난 거래에서 하 자가 발생한 10상자분에 대한 할인이라고 별첨 자료를 첨부 하였다.
- 이 경우 이번 수입에서 할인된 가격 \$9,000은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 → 아니다. 이번 수입의 할인액 \$1,000은 종전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상계한 금액으로 간접지급에 해당하며,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번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은 직접지급 \$9,000에 간접지 급 \$1,000을 합한 \$10,000이 된다.

# 3) 보증확인수수료(confirming commission)

국제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접지급의 또 다른 전형적인 사례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보증확인수수료가 있다.(해설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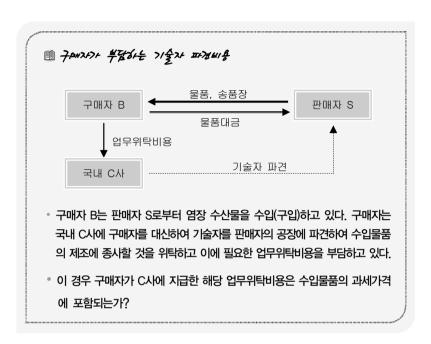
# ■ 其分支的人女星 1991

- 한국의 외제 승용차 딜러 B는 독일의 판매자 S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대금지급을 위해 한국의 00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 그러나 판매자 S는 한국의 00은행이 부실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독일의 XX금융에게 이 신용장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 였다.
- 독일의 XX금융은 이 신용장에 대한 지급을 보증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데 이것 이 바로 보증확인수수료이다.
- 사례 1. 판매자 S가 XX금융에 보증확인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비용을 송품장 가격에 포함하여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 → 이 경우 보증확인수수료는 직접지급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므 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사례 2. 보증확인수수료가 물품대금과 별도로 청구되거나 구매자가 직접 XX금융 에 지급하는 경우
- → 이 경우에도 보증확인수수료는 간접지급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 된다. 그 이유는 보증확인이 판매자의 대금회수를 보증하므로 '판매 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고, 또한 이 같은 보증 없이는 판매 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거래를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이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 구매자가 자신의 주도로 계약체결을 보증하기 위해 취소불능 확인 신용장을 개설하여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때 구매자가 확인기관에 직접지급하는 확인수수료는 판매계약에서 부과되는 조건이 없고판매자보다는 오히려 구매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실제지급가격(간접지급)에 대한 시례



→ 구매자 B가 C사에 위탁하여 파견하는 기술자는 판매자 S의 공장에서 수입물품의 제조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술자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조원가의 일부로서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 해당한다. 따라 서 구매자가 C사에 지급하는 업무위탁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간 접지급금액)에 포함된다.



# 거래가격방법(제1방법)

Ⅲ.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2

# 3. 구매자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

1) 구매자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 (activities undertaken by the buyer on the buyer's own account)

구매자는 전형적인 간접지급인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행위 이외에도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광고활동, 하자보증, 물품검사 등 구매자 자신뿐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자신의 비용으로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을 어디까지 간접지급으로 볼 것인지가실무에서 많은 문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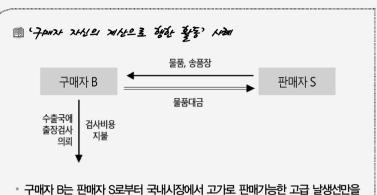
\*\* 2. 제8조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의 이익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

이에 대해 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에서는 가산요소를 제외하고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간접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시행령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 ■ 관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가산금액 외에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의 비용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수입자가 물품 구입 후 수입 전에 행하는 활동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국내시장에서 고기로 판매가능한 고급 날생선만을 수입(구입)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날생선을 구입함에 있어 품질이 국내 시장 에 적합한 것만을 구입하기 위해 국내 검사기관과 수출국에서 검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송품장가격)의 지불 이외에 검사기관에 수출국에 출장하여 행한 검사비용을 지불한다.
- 구매자가 검사기관에 지급하는 검사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 → 검사기관에 지급하는 수출국에서의 검사비용은 구매자와 검사기관 과의 계약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구매자가 자신을 위해 행한 검사로 인정되어 그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검사비 용은 제8조에 규정된 가산요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마케팅 비용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에는 위 사례처럼 구매자 자신 만을 위한 활동뿐 아니라,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가 있는데 주로 마케팅에 관련되는 것으로 광고, 하자보증, 판촉 등의 활동이 있다.

마케팅에 관련되는 광고, 하자보증, 판촉활동으로 인해 수입물품의 판매가 촉진되면 결과적으로 수입자 뿐 아니라 수출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수입자가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의무사항으로합의된 경우 이를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조건 또는 사정(condition or consideration)'으로 볼 것인지 여부도 문제가 된다.

"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마케팅(marketing)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condition or consideration)이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만약 구매자가수입물품의 마케팅에 관한 활동을 비록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라도, 구매자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되었다면, 이러한 활동의 가치는 과세가격의 일부도 아니며, 또한 그러한 활동 때문에 거래가격이 부인되어서도 안 된다. <sup>59</sup> (협정 제1조 1항 b호에 대한 주해)

### **अयमि १५**

- 구매자 B는 판매자 S의 국내에서의 화장품 수입 및 판매 총대리점이다.
- 총대리점계약의 하나로 구매자에게는 판매자가 제조하는 화장품의 국내 광고 선전에 대한 의무가 주어져 있고, 그 비용은 수입거래가격의 10%로 되어 있다.
- 이 총대리점 계약 하에서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수입(구입)하는 화장품의 과세가격 계산에 있어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화장품의 광고 선전비용은 어떻 게 취급되는가?
- → 구매자 B가 부담하는 광고선전 비용은 판매자 S와의 계약에 따라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물품의 판매(마케팅)와 관련된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이므로, 해당 비용은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광고선전 비용은 「가산요소」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가격 배제사유('조건 또는 사정')로 보지도 않는다.

## 3) 하자보증(warranty)

하자보증이란 자동차나 전기기기와 같은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 판매된 물품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증책임자가 하자를 보수하 는 비용 또는 대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마케팅 활동의 하 나이다. 공제요소인 수입 후의 유지(maintenance) ·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비용과는 다른 개념이다.

하자보증 책임은 통상 물품의 판매자에게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당사자간 특약에 의해 판매자가 수행할 수도 구매자가 수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누가 하자보증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 위험을 떠안는지 즉, 하자보증이 누구의 계산(account)\*으로 수행되는지에 따라 하자보증비용의 평가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수입물품의 하자보증을 수출자가 수행하는 경우, 판매자는 당연히 그 비용을 물품의 가격에 반영할 것이다. 수입자가 하자보증비용 또는 요금을 물품 가격의 일부로 또는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급했다면 실제소비자에게서 하자보수요구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판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 하자보증 비용은 공제요소가아니므로 실제지급가격과 구분된다 하더라도 거래가격의 일부이다. 하자보증비가 물품 가격과 별도로 청구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sup>★ &#</sup>x27;계산'은 주로 '명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자기의 명의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법률적 효과(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해당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하고 경제적 효과(이익과 손실)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 한다.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44109 관결 참조)

또한 수출자가 하자보증을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고, 수입자가 이 제3자에게 하자보증대금(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도 판매조건으로 간접 지급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 즉, 하자보증이 **수출자의 계산으로** 수행되는 경우, 수입자에게 청구되는 그 비용이나 요금(charge)은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의 비용'이 아니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다.

물품 매매계약과 하자보증 계약이 두 개의 별도 계약 대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물품의 판매와 하자보증을 둘러싼 상황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는데, 통상 하자보증이 물품에 대한 보증 (guarantee)이라는 사실에 의해 물품 판매계약과 연계되어 있다. 하자보증 계약이 별도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판매자가 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에게 하자보증비의 지급 의무를 부담시켰다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 अध्याति रिम्नाति १ विश्वास्ति १ । । ।

- 독일의 판매자 XX자동차판매는 같은 나라 XX자동차가 생산한 자동차를 수 출한다.
- 판매자 XX자동차판매는 한국의 구매자 00모터스와 판매계약을 체결한다.
- 판매계약 조건의 하나로 00모터스가 구매한 자동차에 대해 XX자동차판매가 2년간 예비 부분품과 수리작업을 포함한 하자보증을 제공하기로 한다.
  - -이 중 보증기간 처음 1년 동안의 비용은 00모터스가 지급하는 자동차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 -2차 년도의 보증비용은 대당 100\$로 구매자 00모터스가 판매자 XX자동 차판매에게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 송품장에는 이 2차 년도 보증비용이 실제 보증기간 동안 클레임이나 보상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되어 청구된다.
  - -이 계약과 별도로 판매자 XX자동차판매는 일본에 있는 AA보험사와 2차 년도의 보증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2차 년도 보증과 관련한 모든 클레임에 대해 AA보험사가 구매자 00모터스에게 보상하기로 하고. 판매 자 XX자동차판매는 AA보험사에 보험료를 지급한다.
  - 하자보증비용에 대한 평가처리는?
- → 판매자인 XX자동차판매가 하자보증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부 담하므로, 처음 1년간 하자보증에 대한 대가는 자동차 판매가 격에 포함된 그대로, 즉 실제지급가격의 일부가 된다. 또한 구 매자가 수입자동차 대당 \$100씩 지급한 2차 년도의 보증비용 역시 비록 별도로 지급되었다 할지라도 간접지급으로 실제지 급가격에 포함된다.

반면,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물품가격에 이 비용이 고려된 경우, 이 하자보증에소요된 비용은 구매자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의 비용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출자가 판매의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 보증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면 이 보증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 되어야 한다.

#### ■ 하자보증과 관련된 기타 쟁점(예해 20.1의 11, 12단락)

- 하자보증계약의 이행을 위해 본 물품이 수입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 최초 계약
   에 따라 구매자에게 무료로 송부된 부분품 → 대체방법에 의해 평가
- 수입물품 가격에 하자보증비용이 포함되어 수입시 이미 관세가 납부되었으므로 무상 부분품에 대한 '이중 과세' 논쟁 → 관세평가의 문제가 아닌 통관 및 기술적인 절차의 문제 (관세감면제도 등으로 별도 처리)

## 4. 공제요소

- 1) 개요
- 3. 다음의 요금charges) 또는 비용(costs)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부터 구분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
  - i) 수입 후 행하여지는(undertaken) 건설, 설치, 조립, 유지 및 기술지원 비용 (charges)
  - ii) 수입 후 운송 비용(costs)
  - iii) 수입국의 관세 및 제세
  - iv) 연불이자

수입 후 건설, 설치, 조립, 유지 및 기술지원 비용과 운송비용은 수입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이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며, 수입국에서 납부하는 관세 등은 수입당시 수입물품의 가격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당 연히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들 세 가지 비용을 일반적으로 '수입 후 비용'으로 부른다.

우리 관세법에서는 수입 후 비용에 '연불이자'를 추가해 네 가지를 공제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연불이자는 물품의 가격이 아니라 금융서비 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결정 3.1)

#### ■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의 공제요소

제30조 ②···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공제요소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용들이 '가격과 구분'되어 야 한다. 또한 공제하려면 당연히 구분 가능하기 이전에 물품의 가격에 이러한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구분 되어지는(are distinguished)'이라는 의미는 성질상 구분이 가능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지급가격에 공제 요소인수입국의 관세 및 제세가 포함되어 있고, 송품장상에 이것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수입자가 공제를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입국의 관세 및 제세는 그 본질상(by nature) 실제지급가격과 구분 가능한 것이므로 공제하여야 한다.(권고의견 3.1)

그러나 수입 후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명백히 구분가능하다 하더라도,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비용 외에 는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 2) 공제요소 1, 수입 후 수행된 건설, 설치, 조립, 유지 및 기술지원 비용
- a) 산업설비, 기계류 또는 장비와 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 후에 수행된 건설, 설치, 조립, 유지 및 기술지원에 대한 요금(비용)

Charges for construction, erection, assembly, maintenance or technical assistance undertaken after importation on imported goods such as industrial plant, machinery or equipment

(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

'산업플랜트, 기계류, 장비'와 같은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핵심적인 특수장비는 해외에서 수입하고 모터, 컴프레셔 등 비교적 표준적이고 비전문적인 장비는 국내에서 조달하고, 건설 등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도 해외 수출자의 책임아래 수행하는 형식인 '턴키방식'의 계약에 주로 발 생된다.

'수입 후에 수행된(undertaken after importation)'이란 말은 시간적 개념으로 보아 반드시 수입 시점 이후의 시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 개념으로 보아 '수입국에서 수행된 활동'을 포함하도록 신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예해 9.1)

# ■ 今显 声 今時已 汝皇,皇礼,圣鼓,命以 昊 기童以光 山县 人主

- 반도체 생산업체인 수입자 B는 해외 반도체 장비 수출자 S로부터 정밀기계 장치를 수입하면서 이 기계장치의 설치까지 수출자 S의 책임 하에 설치되도록 계약한다.
- 수출자 S는 기계장비는 수출국 X에서 생산하여 수입하고 기계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는 국내에서 수행한다.
- 기계 수입 전에 설치를 위한 특수 콘크리트 기초공사가 수행되었고, 기계장치는 수입 후 이 기초 위에 설치되었다.
- 수입자 B는 기계장비 가격에 특수 콘크리트 기초공사 비용을 포함하여 수출자 S에게 지급하였다.
- 기계장치 수입 전 국내에서 수행된 콘크리트 기초공사 비용은 실제지급가격 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 → 공제요소인 '수입 후에 수행된 건설, 설치, 조립, 유지 및 기술지원 비용'에서 '수입 후에 수행된'이라는 말의 의미는 시간적 개념이 아닌 장소적 개념으로 '수입국에서 수행된 활동'에 포함되므로, 비록 수입 물품 수입시점 이전에 수행되었다 할지라도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 할 수 있다.

공제요소에서 말하고 있는 '정비·유지(maintenance)'라는 용어의 개념에는 '하자보증(warranty)'이 포함되지 않는다.(해설 6.1)

구분	유지(maintenance)	보증(warranty)
대표적 물품	산업설비나 장비와 같은 물품	자동차나 전기기기와 같은 물품
내용	<b>구입 목적의 기능</b> 을 수행할 수 있도 록 <b>보증(ensure)</b> 하는 <b>예방적 조치</b>	보증서에 의해 요구되는 조건에 따라 결합보수에 대한 비용이나 대체품을 보증(guarantee)하는 것으로, 물품에 내재된 숨자진 하지를 치유하는 조치
비용의 성격	수입 후 발생	원가의 일부
시기	항상 수행	고장 또는 성능저하와 같은 경 우 만일의 수단으로 수행

### 유지의 개념에 보증이 포함되지 않는다.

# 3) 공제요소 II. 수입 후의 운송비용

b) 수입 후 운송비용the cost of transport after importation

(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

수입 후의 운송비용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로서 실제지급가 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우리 관세법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 의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입항 도착' 시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적하비, 양하비, 하역비 등 수입항에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들이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공제요소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관세법과 관세청 고시에서는 '수입항 도착'이란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 ■ '수입항 도착' 시점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⑤···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석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①··· "수입항" 이란 해당 수입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일시 양륙은 제외한다)이 이루어지는 항구 또는 공항을 말한다. ②··· "수입항에 도착"이란 수입물품의 양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

### 4) 공제요소 III. 수입국의 관세 및 제세

© C) 수입국의 관세 및 제세 <sup>59</sup>
duties and taxes of the country of importation (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세금, 공과금 등도 수입 후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과금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벌과금, 수수료, 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하다. 수입국의 관세 및 제세는 그 본질상 실제지급가격에서 구분할 수 (distinguishable) 있기 때문에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권고의견 3.1)

### 5) 공제요소 IV. 연불이자(Charge for interest)

연불이자란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 또는 그 선적서류를 수 령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거래에서 대 금지급을 늦추는 기간 동안의 이자를 말한다. 이러한 비용은 성격상 물 품의 대가가 아니고 금융을 사용한데 대한 지불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구매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금전을 차용하여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 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 또는 거래조건이 아니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 [결정 3.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이자비용의 처리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체결한 금융약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음

- 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 a) 이자비용이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으로 부터 구분되고,
- b) 금융약정이 서면으로 체결되었고,
- c) 필요한 경우, 구매자가
- 해당물품이 실제지급가격으로 신고된 가격으로 실제 판매되었는지.
- 그리고 청구된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DEN GILHATO

- 구매자 B는 수출국 X의 판매자 S로부터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입하면서.
- 판매자 S가 해당 장비의 부품 구입을 위해 수출국 X의 00은행에서 대출받은 생산자금에 대한 이자(F1)를 구매자 B가 부담하기로 계약한다.
- 또한 구매자 B는 수입물품 구매자금을 수출국 X의 또 다른 금융기관인 XX금융에서 빌려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XX금융에 이에 대한 이자(F2)를 별도로 지불한다.
- 구매자가 지불하는 금융비용인 F1, F2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 → 구매자 B가 지불한 이자비용 F1은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라기보다는 판매자 S가 부담하는 생산에 소요된 비용인 생산원가의 일부를 구성하는 금액으로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 및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다
- → 그러나 이자비용 F2는 연불이자와 마찬가지로 물품의 대가가 아닌 금 용을 사용한데 대한 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거래가격방법(제1방법)

Ⅳ. 거래가격 배제사유 1

# 1. 거래가격의 배제

# 1) 거래가격 배제사유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공제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모두 과세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가격이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아 왜곡되는 경우를 배제할수 없기 때문이다.

협정 제1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거래가격으로 하는데 있어,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a)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처분 또는 사용하는 데 **제한(restrictions)**이 없어야한다.
- b)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condition or consideration)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 c)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전매, 처분, 사용한 데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proceeds)(단, 가산조정 이 불가능한 경우만)
- d)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related)**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물론 이 네 가지 요건에는 "거래가격을 최대한으로 존중한다."는 '과세 가격결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다.

이 요건들을 '거래가격 성립요건', '거래가격 채택요건' 또는 '거래가 격으로부터 이탈'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이 책에서는 '거래 가격 배제사유'라 부른다.

# 2)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기타의 사유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는 위 4가지 외에 거래가격 정의 자체에 명확히 암시된 몇 가지 원인이 더 있다.

# ▶ 첫째, '판매'가 없거나, '가격'이 없는 경우(No Sale, No Price)이다.

'판매'가 없는 경우는 2차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서 설명했듯이 판매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거래가격이 있을 수 없다는 명확한 사실에 기초한다.

'가격'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자.

#### Mo Price MAI

I는 비엔나에서 열린 경매에서 2개의 서로 다른 책상을 단일가격으로 구매하여 하나는 우리나라의 자기 집으로 하나는 필리핀에 있는 별장으로 보냈다. 이때 가격은 하나의 경쟁 입찰로 결정된 것으로 분리할 수 없다.

- → 이 경우 두 책상 모두 각각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 둘째, 거래가격에 '가산 조정' 하는데 있어 '객관적이고 수량화(objective and quantifiable)'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이 경우는 8차시 이후 가산요소을 다루면서 자세히 설명한다.
- ▶ 셋째, 세관당국의 '합리적 의심' (reasons to doubt)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이다.

세관당국은 신고된 거래가격이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 합리적 의심

- '가격신고의 세부사항 또는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서류들의 진실성 이나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결정 6.1)
- 관세법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1항
  -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 ·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 한 차이가 있는 경우
  -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3의 2. 신고한 물품이 원유 · 광석 · 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은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시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4.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 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5항 및 시행령 제24조 제3항)
  - 1.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2.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작성된 경우
  -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 하기 곤란한 경우
    - i)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 ii)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이유

고시에서는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는 경우를 포괄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물품)

제13조 본문에 따라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를 포함한다.

- 1. 영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판매의 결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아닌 경우
- 2. 제15조제2항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3. 제16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4.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5.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 법 제3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restrictions)

☞ 구매자가 물품을 처분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한다.
⑤ (협정 제1조 제1항 a호) (법 제30조 제3항 제1호)

### 1) 제한이란

앞서 보았듯이 일반적으로 '판매'란 물품의 소유권과 대가의 교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판매된 물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이전되므로 그물품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전적으로 구매자의 권한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조건에 구매자의 이러한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 즉,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다면, 이로 인하여 그 물품의 거래가격이 왜곡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 하에서 합의된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시행령 제21조)

이러한 제한의 대표적 예로 구매자가 자선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조 건으로 명목상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기계의 경우를 들 수 있다.

## ALPH LEADER

- 구매자 B는 판매자 S와 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라 화학용 기기를 수입하고 있다.
- 이번에 새로운 기종의 기기 5대를 수입한다.
- 판매자 S와 계약에서 그 중 1대는 구매자의 전시장에 6개월간 판촉용으로 전시하기로 하였다.
- 때문에 그 전시용기기의 가격은 판매용의 다른 기기 4대에 비해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키로 계약하였다.
- 전시용 기기는 전시 후 재판매되지만 중고품이 되므로 다른 4대의 기기보다 저가로 판매된다.
- 이 전시용기기의 20%할인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는가?
- → 평가대상 물품은 수입 후 6개월간 전시 후에야 재판매가 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20%가 할인되고 있다. 이 거래가격은 수입물품 의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에 의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고 인정되므로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다. 이 전시용 기기는 제2 방법 이하 대체방법에 의해 평가된다.

#### 2) 제한의 예외

과세가격은 최대한으로 거래가격이어야 한다는 협정의 원칙에 따라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제한'에 다음과 같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예해 12.1, 시행령 제22조 제1항)

- i) 수입국의 법률이나 행정당국에 의해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 ii) 물품이 전매(轉賣)될 수 있는 지리적인 영역을 한정하는 제한
- iii) 물품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협정 제1조 제1항 a호)

# **첫째, 수입국의 법률이나 행정당국에 의해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은, 예를 들어

- 수입물품을 수입 후 전매하기 전에 일정한 형식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 받거나,
- 수입물품에 대해 특정한 형식의 라벨을 부착하거나 포장을 하여야 한 다거나,
- 또는 수입물품의 발매 이전에 수입국의 법령이나 규정에서 요구하는 시험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과 같은 것을 말한다.

둘째, 수입물품을 전매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어떤 판매자가 수입국내에 여러 구매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판매자는 이 여러 구매자들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할 필요에 의해 각 구매자들에 대해 영업상의 지역제한을 요구하거나 의무화 하는 경우가 있다.

위 두 가지 제한은 예시한 경우와 같이 크게 쟁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셋째 물품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고려할 요인은 제한의 본질, 수입물품의 특성, 산업분야의 특징과 상업적 관행, 그리고 가격에 대한 영향이 상업적으로 중요한 것인지의 여부 등이다.

#### ▶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의 대표적인 예

- 판매자가 자동차 구매자에게 모델년도 즉, 연식이 시작되는 기준일 이전에는 판매 또는 전시를 못하게 하는 경우와,
- 화장품 제조회사가 판매계약 규정을 통해 모든 수입자에게 자신의 제품을 가정방문판매 기법을 사용하는 개별 판매대리인을 통해 독점적으로 고객들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등을 볼 수 있다.

# अधि अधि अधि होतेता किस्ता किस्ता

- X국의 배터리 제조사인 AA배터리는 I국의 자동차제조사인 KK자동차에게 자동차용 배터리를 수출한다.
- 판매자 AA와 구매자 KK는 그 배터리를 신차의 부품에만 사용하고, 교환을 위한 애프터서비스, 정비시장에서는 재판매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 → 이 거래에서 제한은 구매자 KK가 배터리를 정비시장에 재판매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한은 자동차 제조업자인 구매자의 거래 단계상의 위치를 볼 때 무역거래에서 통상적이며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이다. 따라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을 결정할 수 있다.

#### ■ 対共 生亡 人・島の 対ならの ざれなられ また 人強

- 판매자 S(수출자)는 한국에서의 매출확대를 위하여 Tester용 화장품을 제조 원가와 유사한 수준인 수출국 소매가격의 10%수준(정품 수입가격의 50% 수준)으로 구매자 B(수입자)에게 제공한다.
- Tester용 화장품의 형상
  - Tester용 화장품은 일반 판매용 물품(정품)과 같은 시설에서 생산되고 품질 및 성상(용기), 제품번호 등이 모두 동일
  - 다만, 용기 및 외포장에 「TESTER NOT FOR SALE」스티커 부착
- 구매자 B는 Tester용 화장품을 수입하여 매장에서 고객이 시험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하거나, 경품으로 고객에게 무상 제공 또는 신제품 출하 시 직원 교육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 이 경우 Tester용 화장품은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되는지?
- → Tester용 화장품이 정품과 품질 및 성상(용기)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포장 및 용기에 「TESTER NOT FOR SALE」이라고 견고하게 표기가 되어있다면, 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 외관의 미적 감각이 중요시되고 그에 따라 소비자의 제품 선택이나 인식이 크게 영향을 받는 화장품의 특성상 정품과 Tester용 물품은 상업적으로 서로 교환 가능하지 않으므로 서로 동일한 물품으로 볼 수 없다.
- → 따라서 Tester용 물품은 그 물품 자체의 특성 상 소비자 판매용이 아니므로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 평가대상물품과 관련하여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condition or consideration)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sup>59</sup> (협정 제1조 제1항 b호) (법 제30조 제3항 제2호)

1) '조건 또는 사정(condition or consideration)' 이란

여기서 '조건 또는 사정'을 어디까지로 해석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실제 무역거래에서 거래의 성립이나 가격결정은 여러 가지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는다. 농작물을 예로 들면 그 농작물이 국제적으로 흉작인지 풍작인지, 또한 어떤 계절에 거래되는지, 날씨는 어떤지에 따라, 그 농작물가격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국제적 작황, 계절, 날씨 등 모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되는 조건 또는 사정을 넓은 의미에서 해석한다면 거의 모든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되는 조건 또는 사정이란

•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의무사항(an obligation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예해 2.1)

•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수행해야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WCO 관세평가 핸드북 용어사전)

따라서 위 예시에서 농작물의 작황, 계절, 날씨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어떠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조건 또는 사정이 아닌 것이다.

또한, 상관행을 존중한다는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거래가격 배제사유 가 되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위의 농작물 거래에서 작황, 계절, 날씨 등에 따라 가격이 영향을 받는 것은 모두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 今羹生全者 生长 今羹好知者 智易 四分羹素的 四秒 剛十人腳(呵伽 2.1)

- A국의 휴대폰 제조업체 S는 수출물품에 대해 제조원가의 20%에 해당하는 수출보조금을 자국 정부로부터 받는다.
- 따라서 S는 경쟁국 B국의 휴대폰 제조업체 X보다 낮은 가격으로 I국에 휴대폰 을 수출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출보조금을 적용받은 S의 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는지?
- → 평가협정의 기본 개념은 해당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와 그들 당사자 간의 작간접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이

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건 또는 사정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의무사항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수출보조금은 판매자 즉 수출자와 수출국 정부의 문제이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이 '수출보조금'을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보조금은 실제 지급가격의 일부도 아니며, 가산요소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2)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condition or consideration)

거래가격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협정의 원칙에 따라 조건 또는 사정 앞에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이 문구의 뜻은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조건 또는 사정이 정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의무사항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조건 또는 사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 거래가격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조건 또는 사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고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금액은 간접지급으로 보아 실제지급가격의 일부가 된다.(권고의견 16.1)

# 則 굴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건의 사례 (사례연구 7.1)

- 수출국의 판매자 S는 첨단 수술용 로봇기기(M)를 제조 판매한다.
- 이 수술용 로봇기기 M은 작동에 고도의 운전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매자 S는 이 기기의 판매조건으로 사용자가 소정의 교육훈련을 미리 이수할 것을 요구한다.
- 이 훈련은 S가 수출국에 설립한 T교육훈련기관에서 1달 동안 실시된다.
- 수입국의 B는 이 수술용 로봇기기를 S로부터 구입하여 자국의 의료기관에 재판매하고 있다.
- S는 '09년까지는 별도의 훈련비를 요구하지 않고 이 기기 M을 \$20,000의 가격에 판매하였다.
- 그런데 S는 '10년부터는 기기 M의 가격을 \$ 18,000에 판매하면서, 교육훈련비는 T에게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B는 T에 교육훈련비로 \$1,500을 지급하였다.
- → B가 기계 M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M의 운용인 1명이 S가설립한 T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은 수입물품 M의 판매조건에 해당한다. 이 조건이 당해 수입물품의 통상적인 상관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례에서는 이를 금액으로 계산할 수있다. 이 조건 또는 사정의 금액은 \$1,500이다. 따라서 수입물품 M의 실제지급가격은 (\$18,000+\$1,500) = \$19,500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 단, 교육훈련의 참가와 훈련비 지급과 관계없이 동 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판매조건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 구매자가 교육훈 련에 참가하고 훈련비가 별도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교육훈련비는 당해 기계에 대하여 지불한 것이 아니며 훈련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훈 련비 지급 없이 당해 기계의 구입이 가능하다면 교육훈련비와 수입 물품의 가격은 별개이다.
- → 그러나 '09년까지 기계 M의 가격 \$20,000은 그 자체로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이다. 이 \$20,000의 가격에 교육훈련비가 포함되 어 있고 구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제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공제될 수 없다 기계와 이에 대한 교육후련이 하나의 가격으로 책정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교육훈련이 기계의 판매 조건이라는 사 실의 반증이다.(4~5차시 실제지급가격 참조)
  - 116시 인당시 국화 당조 국단 사유시에비 타시대는 [ (क्षेत्र आर्के आर्वेर ५ईंश नेवेर १वेर १वेरेस अ22के आर्थेर)
  - a) 구매자가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도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입물품 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 사례 a)

- 수출국의 제조업자 M은 신발과 가죽제품 등을 제조하여 수출한다.
- M은 수입국의 B에게 가죽제품을 판매하면서, B가 M의 신발을 켤레 당 \$30의 가격으로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가죽제품을 \$50의 가격에 판매한다.
- → 이 경우 판매되는 가죽제품의 가격 \$50은 구매자 B가 판매자 M의 다른 제품 즉, 신발을 구매한다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다.

#### 사례 a-1)

- 반면, 위 사례에서 구매자 B가 제조자 M에게서 신발을 \$30에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가죽제품의 가격을 \$10을 할인받았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 → 이 경우 신발을 구매한다는 조건 또는 사정은 할인받은 \$10이라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지급으로 보아 거래가격에 포 함할 수 있다.

  - b)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수입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사례 b)

- 수출국의 제조자 F는 특수한 장비 등을 제조하여 수출한다
- F는 수입국의 B에게 특수장비를 \$10,000에 판매한다.
- 이 가격은 B가 F에게 장비생산에 소요되는 계전기를 \$150의 가격에 공급한다는 조건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 → 특수장비의 가격 \$10,000은 구매자 B가 제조자 F에게 계전기를 \$150에 판매한다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거래가 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다
  - III 거호이어 보내에서유가 되는 조건 또는 사건의 사례 (क्रिप्र आके आर्वें। ५ई ९१ देश विंह, ४१वेंश्वें आय्यें आय्यें।
  - c)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기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사례 c)

- 수입국의 구매자 B는 책상 등 가구 제조업자이다.
- B는 수출국의 S에게서 목재를 ton당 \$5,000의 가격에 구매한다.
- 이 가격은 B가 판매자 S에게 목재책상 10개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조건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 목재의 가격 \$5,000/ton은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게 완제품인 목재 책상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다.

#### 3) 생산 또는 마케팅(marketing)에 관련되는 조건 또는 사정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또는 사정이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볼 수 없고,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의무사항'이며, 또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모두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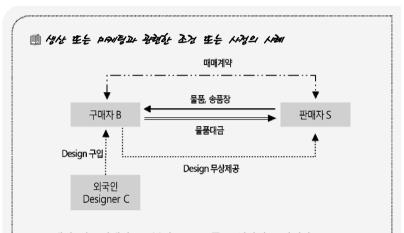
● 그러나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미케팅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condition or consideration)이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만약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마케팅에 관한 활동을 비록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라도,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한다면 이러한 활동의 가치(value)는 과세가격의 일부도 아니고 그러한 활동이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게 하지도 않는다. ♥️

(현정 제1조 제1항 b호의 주해 2항)

####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조건 또는 사정)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은 법 제30조 제3항 제2 호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

협정 주해는 조건 또는 사정이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마케팅과 관련 된 것일 때에는 이 조건 또는 사정을 이유로 거래가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구매자가 수입국에서 개발된 기술이나 설계도면 을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Y-shirt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 이 판매계약에는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게 Y-shirt의 디자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고, 이 조건에 따라 수입물품 Y-shirt의 가격이 결정되었다.
- 구매자 B는 외국인 디자이너 C에게 Y-shirt의 디자인을 의뢰 · 구입하였다. 이 디자인은 C가 국내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개발한 것이다.
- 판매자가 송부한 송품장 가격에는 구매자가 무상제공한 디자인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송품장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또 구매자가 무상제공한 디자인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 → 수입물품 Y-shirt의 가격은 구매자가 무상으로 디자인을 공급한다는 거래조건 즉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 조건 또는 사정은 수입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협 정 제1조 제1항 b호의 주해 2항에 따라 이 조건 또는 사정으로 인해 거래가격이 배제되지 않는다.
- → 또한 이 디자인 비용은 국내에서 개발된 것이므로 가산요소인 '생산 지원'으로 보아 가산되지도 않는다.

생산 뿐 아니라 수입물품의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도 거 래가격 배제사유로 보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비록 구매자와 판매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경우라면 이러한 활동의 대가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다만,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의 사례에 대해서는 광고활동, 하자보증 등 앞 5차시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에서 알아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 거래가격방법(제1방법)

Ⅴ. 거래가격 배제사유 2

# 4.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귀속이익(Proceeds)

● 구매자가 추후에 물품을 전매(轉賣),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proceeds) 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sup>59</sup>

(협정 제1조 제1항 c호) (법 제30조 제3항 제3호)

#### 1) 사후귀속이익

사후귀속이익이란 물품의 수입 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이익이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 사후귀속이익에 대해서는 '거래가격의 조정'에서 다시 다룰 것이 므로 여기서는 간단한 예를 알아보고 넘어간다.



# भिक्त १९०१५ अस

- 판매자 S와 구매자 B는 유럽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그랜드피아노를 거래한다.
- 수입국 시장에서 수입물품인 그랜드피아노가 어느 정도의 가격에 팔릴지, 어느 정도의 수량이 팔릴지 예측할 수 없어 일단 1대 당 \$10,000로 가격을 정한다.
- 그리고, 구매자 B가 수입물품을 수입국에서 판매한 가격 중 \$1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판매자 S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한다.
- → 이 경우 수입물품의 수입 후 재판매에 따른 \$10,000 초과금액의 50%가 바로 사후귀속이익이 되는 것이다.

단, 사후귀속이익은 수입물품에 관련되어야 한다.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이 판매자가 구매자의 회사에 투자하고 받는 배당금과 같은 지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 2)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그러나 이와 같은 사후귀속이익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거래 가격 배제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구매자가 추후에 물품을 전매(轉賣),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 (proceeds)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않아야한다. 단, 제8조에 의한 적절한 조정, 즉 가산요소로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합정 제1조 제1항 호호의 후단)

이 말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된다는 뜻이다.

# 助 금액으로 계산활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사례

- I는 사무실용 복사기를 수입한다. 공급업체인 제조자 M과의 계약조건에 의해 I는 복사기를 임대하고 받는 총수익의 10%를 M에게 지급한다.
- 또한, I는 서비스센터를 설립하고 여기서 고객들은 I의 기계를 사용하여 매당 얼마의 돈을 내고 복사를 할 수 있다. M은 이러한 수익에 대해서도 10%를 받게 되어 있다.
- → 전자는 처분에 대한 수익이고, 후자는 사용에 대한 수입이다. M에게 지급되는 이 두 금액은 모두 가산요소로서 가산 조정되어야 한다.

→ 그러나 I가 임대 또는 서비스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회계 자료가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없다면, 거래가격이 배제되는 것 이다. 이 사례에서는 특히 서비스센터의 수익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 5. 특수관계의 영향

"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related)**가 없거나, 양자가 <del>특수관</del>계에 있는 경우 거래가격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목적상 수용될 수 있다 <sup>59</sup>

> (협정 제1조 제1항 d호) (법 제30조 제3항 제4호)

거래가격이 배제되는 상황 중에서 실제 가장 많이 발생하고, 협정에서 가장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보자.

한 제조회사가 주요 외국시장에 자사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신이 전체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갖고 있는 경우이다. 이 기업의 소유주는 자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이익을 보든지, 모회사가 높은 가격으로 이익을 보든지 모두 마찬가지이므로, 일반적인 가격결정과는 다른 요인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것이다.

세관당국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러한 특수관계에 의해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 왜곡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 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두 가지이다.

- 첫째,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관계가 어떠한 경우를 특수관계로 볼 것인가?
- 둘째, 그 특수관계가 과연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 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 1) 특수관계의 범위

우리가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소위 '단골'이라는 게 있다. 또한 단골에게 가격을 깎아주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일 것이다. 국제무역에서 도 이런 '단골'은 존재한다. 아니 한번 맺은 거래관계를 잘 바꾸지 않는 특성상 더 많은 '단골'이 있을 것이다. 이런 '단골'까지 특수관계로 본다면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래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디까지를 어떤 정도까지를 '특수관계'로 볼 것인가?

특수관계의 범위에 대해 협정 제15조와 우리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에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구매자와 판매자가

### (a) 서로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

반드시 상호적이어야 한다. 구매자가 판매자의 임원, 관리자이고, 동 시에 판매자가 구매자의 임원, 관리자여야 한다.

#### (b) 법률상 인정되는 사업상의 동업자

"동업자 관계의 조성을 위해서는 국내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동업자관계가 제휴된다. 따라서 독점대리점, 독점판매점, 독점영업권자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 않는다." (권고의견 21.1)

#### (c)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d) 특정인이 구매자와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이상 소유, 통제, 보유하는 경우

특정인이란 구매자 또는 판매자 중 한 사람일 필요는 없고, 제3자라 도 상관없다. 그리고 반드시 의결권 있는 주식이어야 한다.

# (e) 양 당사자중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를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 (Control)하는 경우

지배(control)하는 경우란 '통상적인 구매자·판매자 또는 유통계약의 범위를 벗어나고 타방의 활동에 대한 관리와 관련한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구속 또는 지시를 행사 할 수 있는 지위를 수반하는 상황'을 말한다.(해설 4.1)

# (f)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g)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긴접으로 공동자배하는 경우
- (h)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2)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검토

그럼 이처럼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경우에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가?

- \*\*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없거나,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related)
  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목적상 수용될 수 있다. \*\*
  (협정 제1조 제1항 d호)
- 제1항의 목적상 거래가격이 수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에서 의미하는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거래가격을 수용할 수 없는
   근거가 되지 않아야 한다. <sup>™</sup>
   (협정 제1조 제2항 a호)

협정 제1조 제1항 d호의 후단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목적상 수용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협정 제1조 제2항 첫 구절은 "제1항의 목적상 거래가격이 수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에서 의미하는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거래가격을 수용할 수 없는 근거가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되지 못하며, 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의를 환기시키 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 ■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처리방법에 대한 수입자와 관세당국의 권리와 의무(예해 14.1)

- 특수관계의 존재는 세관당국이 판매 주변상황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을
   환기시킨다.(질의1)
- 세관당국이 판매를 둘러싼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해당 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의심사항을 반드시 전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의심의 이유를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으며, 할 수 있다면 전달하는 것이바람직하다. (질의4)
- 만약 세관당국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거래가격을 수용할 수 없고, 해당 거래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근거를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입자에게는 답변할 수 있는 합 리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질의5)
- 수입자는 평가대상물품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 받지 않았음을 최대한 입증해야할 의무가 있다.(질의6)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조사 할 것인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검토 방법**으로 협정은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i ) 판매 주변상황에 대한 검토 방법 (Examination of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ale)
- ii) 비교가격 검증방법(Test value)

#### 3) 판매 주변상황에 대한 검토

(Examination of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ale)

#### **'판매 주변상황'**에 대한 검토방법이란

- i)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의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과
- ii) 문제가 되는 <u>가격을 결정하는 방법</u> 등을 포함한 거래의 관련 측면을 검토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검토를 통해 특수관계라 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없는 것처럼 상호간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격이 특수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된다. 협정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부속서 I 제1조 제2항에 대한 주해 제3단락)

- 첫째,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되는 방법이거나,
- 둘째, 해당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와.
- 셋째, 해당 가격이 동종 · 동류의 물품의 판매에서 대표적인 기간(예 : 1년 기준)동안에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나타내는 이윤을 합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이다.

이 세 가지 예시된 방법 중 우리 관세법은 앞의 두 가지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 번째 방법도 법적으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시 행령 제23조 제2항)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 '하나의 예로써…' 또는 '또 하나의 예로써'라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방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서만 증명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그리고 일차적인 입증의무가 수입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방법의 선택도 수입자의 몫인 것이다.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가격결정 방법 이란 해당 산업의 무역관련 정기 간행물에 공표된 가격에 따라 정해지 고, 다른 구매자와 판매자도 이 고시 가격을 이용하여 통상 가격을 결정 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여기서 해당 산업부문이란 일반적으로 평가 대상 수입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다음으로 해당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가격이 동종·동류의 물품의 판매에서 대표적인 기간, 예를 들어 1년 동안에 실현된 해당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대표하는 이윤을 합한 모든 비용의 회복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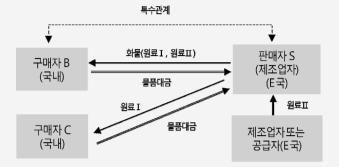
위와 같이 협정과 우리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판매 주변상황 검토' 방법은 사실 매우 추상적이며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관세평가 운영 에 관한 고시'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10가지 상황을 예시 규정으 로 설명하고 있다.

#### ■ 제28조(판매 주변상황 검토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 ① 세관장은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의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과 해당 가격이 결정된 방법 등 거래와 관련된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2항제1호의 "통 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 또는 제2호의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 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 지 및 제7호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가격차이가 있을 때에는 해당 호 단서의 "조 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 1. 판매자가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한다.
- 2. 판매자가 수출국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 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 3. 구매자가 동종동질 또는 유시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 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 4. 판매된 물품의 가격이 신문, 잡지 등에 공표된 가격으로서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도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 5.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 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 6.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의 가격이 제조자 등으로부터의 구입가격에 더하 여 판매자의 판매와 관련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 7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기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 8 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매 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국내 판매할 때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 한 수준인 경우, 다만, 동등한 수준의 거래조건과 시장조건에서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하며, 구매자의 총이익률은 해당 산업의 총이익률과 동등한 수준이 어야 한다.
- 9.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 격에 의한 것임이 제출 자료 및 실제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10.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특정한 공식을 사용하며,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해당 공식을 동일 하게 적용하는 경우

### ■ 青午관계에서 판매를 둘러싼 상황 검토 방법 外酬(外酬吧子 10.1)



- 1. 국내의 식품제조회사 B(구매자 B)는 E국의 제조업자 S(판매자 S)로부터 조미료 제조용 원료를 구입(수입)하였다.
- 2. 수입 시 구매자 B는 판매자 S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음을 신고하였다.
  - ① 판매자 S는 구매자 B의 주식 22%를 소유하고 있다.
  - ② 판매자 S의 이사와 임원들은 구매자 B의 이사회를 대표한다.
- 수입 후, 세관은 신고가격의 수용에 의심을 가지고 B와 S의 물품 판매를 둘러
   싼 상황을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다.

답변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B가 S로부터 구입하고 있는 조미료 원료는 다음 두 종류로 구분된다.
  - ① 판매자 S가 제조한 것(이하「원료 I」이라함)
  - ② 판매자 S가 특수관계가 없는 E국의 다른 제조업자 및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하「원료 II」라 함)

또한 원료 I. I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아니다.

- 원료 I 에 대해 제출된 자료 등에 의거 다음 사실이 판명되었다.
  - ① 판매자 S는 원료 I 을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의 구매자 C에게도 판매하고 있다. 구매자 B 및 구매자 C에의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계절에 의해 변동 되지 않는다.

- i) 구매자 B에게 판매가격(CIF조건, 부산항 도착가격 9.2\$/Kg)
- ii) 구매자 C에게 판매가격(CIF조건, 부산항 도착가격 10.0\$/Kg)
- ② 판매자 S와 구매자 B 및 C의 판매는 동일한 거래단계에 있고, 또한 같은 거래 수량으로 거래되고 있다.
- ③ 구매자 C가 구입한 원료 I 에 대해서는 제1방법에 따라 10.0\$/Kg의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였다.
- ④ 판매자 S의 판매경비는 구매자 B 및 구매자 C에 대한 판매에 있어서 동일하다.
- ⑤ 구매자 B와 C간에 8% 가격 차이는 계절적 요인으로 해명되지 않으며. B와 S는 가격 차이에 대한 세관의 해명요구에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 지 않았다.
- 원료 Ⅱ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 등에 의거 다음의 사실이 판명되었다.
  - ① 판매자 S는 원료 II 를 구매자 B에 한하여 판매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은 국내로 수입되지 않고 있다.
  - ② 판매자 S의 구매자 B에 대한 판매가격은 S의 취득가격에 재포장비. 취급비용 및 운송비용 등 모든 비용에 S의 원료 I 판매에 관한 통상의 이윤을 붙인 가격을 회수하는데 충분한 가격으로 되어 있다.
- 판매자 S와 구매자 B와의 사이에 특수관계는 B가 S로부터 구입하는 원료 I. Ⅱ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가?

#### → 원료 I 의 거래가격

- ① 판매자 S의 구매자 B에 대한 판매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 C에 대한 판매가격보다 저가로 되어 있고, 판매자 S 및 구매자 B로부터 당해 가격차를 설명하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 ② 판매자 S에 의한 구매자 B 및 구매자 C에 대한 원료 I 의 판매가 격은 동일 거래단계 및 동일 거래수량에 의거 거래되고 있는 점, 판매자 S가 부담하는 판매경비에도 차이가 없는 점, 또한 산업 및 화물의 성질을 감안하여도 8%의 가격 차이를 해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 ③ 원료 I 의 판매 주변상황에 대한 검토 결과 S와 B와의 특수관계가 원료 I 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원료 I 의 거 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수용할 수 없다.

#### → 원료II의 거래가격

- ① 판매자 S의 구매자 B에 대한 판매가격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원료 II와 관련된 모든 비용에 판매자 S가 동종·동류의 물품을 판매하는데 실현하는 통상적인 이윤을 합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충분한 가격으로 확인되었다.
- ② 원료II의 판매 주변상황에 대한 검토 결과 '동종·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해당기업 판매자 S의 전반적인 이윤을 대표하는 이윤을 합한 모든 비용의 회복을 보장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특수관계가 원료II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아, 원료II의 거래가격은 수용되어 진다.

#### 4) 비교가격 검증방법(Test value)

실무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 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 특히 앞서 살펴본 '판매 주변상황을 검토'하는 방법은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비교가격'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의 거래가 격 영향여부를 간편히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Test Value Method', 우리말로 '비교가격 검증' 방법이라 한다.

- 특수관계자 간의 판매에 있어, 거래가격이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다음
   의 가격 중 어느 하나에 매우 근접함을 수입자가 증명하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거래가격은 수용되어야 한다.

   (협정 제1조 제2항 b호)
  - i) 동일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ii) 제4방법, 즉 국내판매가격 방법에 따라 결정된 바 있는 동종 · 동질 또는 유 N물품의 과세가격
  - iii) 제5방법, 즉 산정가격 방법에 따라 결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 품의 과세가격

'비교가격 방법'은 해당 거래가격이 '비교가격'라 불리는 위 세 가지가격 중 어느 하나와 매우 근접함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수입자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비교가격'들은 이전에 우리나라세관당국에 의해 수용된 것이어야 한다.

종합하면 '비교가격'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됨을 알 수 있다.

- ① 비교가격의 대상물품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identical or similar goods)'이어야 한다.
- ② 비교되는 거래는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occurring at or about the same time)' 발생한 것이라야 한다.
- ③ 비교가격은 '이전에 관세당국에 의해 수용되어진 것(previously accepted by)' 이어야 한다.
- ④ 평가대상물품의 거래가격은 비교가격에 **내우 근접(closely approximates)** 해야 한다.

# 첫째,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identical or similar goods)이란 무엇인가?

동종·동질물품은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하여, 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 에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한다.

유시물품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만큼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진 물품을 말한다.

둘 다 평가대상물품과 동일한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협 정 제15조 제2항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제15차시 제2, 3방법 참조)

# 둘째, 시간적인 개념인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at or about the same time)' 표현의 의미는?(해설 1.1)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라는 시간적 요건에 대해서는 WCO 해설 1.1 과 시행규칙 제5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은 수출시점이,
- 제4방법에 의한 가격은 평가대상물품이 수입국내에서 판매되는 시점이,
- 제5방법에 의한 가격은 평가대상물품의 수입시점을 의미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 ■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 가격)

- ③ 영 제23조 제2항제3호 후단에 따른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 사물품의 거래가격 : 선적 시점
- 2. 법 제33조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국내판매 시점
- 3. 법 제34조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수입신고 시점

# 셋째, '이전에 세관당국에 의해 수용되어진 것(previously accepted)' 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과거에 우리나라 세관에 의해 수용된 가격을 뜻하며, 따라서 제3국의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가격은 비교가격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수입자가 평가대상물품을 제4방법 또는 제5방법으로 계산해 본 결과 산출된 가격은 비교가격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즉, 함께 평가대상이 되고 있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입된 해당물품에 대해 산출한 공제가격은 비교가격이 될 수 없다. (아래 고시 제29조제2항 후단 참조)

#### 넷째, '매우 근접(closely approximates)'이란 표현은?

… '매우 근접'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많은 요소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수입물품의 특성, 산업 자체의 특성, 수입물품의 계절적 특성 및 가격차이가 상업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포함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안별로 변동될수 있으므로 고정된 백분율과 같은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항 (b)호)

'매우 근접'한지의 여부는 '수입물품의 특성', '산업의 성격', '계절적 특성', '가격 차이의 상업적 중요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각 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정된 비율과 같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관세법(시행규칙)에서는 10%라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즉 근접하는 가격이란 평가대상 물품의 수입가격이 비교가격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10% 이하인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단, 이 10%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라도 물품의 특성, 거래내용, 거래관행등 위의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하거나 불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수입가격과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물품의 특성 · 거래내용 · 거래관행 등 으로 보아 …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도 있다. 🤊 (시행규칙 제5조)

마지막으로 이 비교가격방법을 적용하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 '비교가격'은 반드시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비교가격'은 반드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 별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사용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sup>66</sup> …… 수입자의 주도로, 그리고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협정 제1조 제2항 c호)

#### ■ 고시 제29조(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 ①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검 토 없이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 ② 비교가격은 법 제38조제2항의 심사, 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관세조사 등 을 통하여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가격이어야 하며, 영 제23조제2항제3호나목의 가격을 적용할 때에 해당 수입물품에 기초한 과세 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 산업의 특징, 물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 세 가지 '비교가격' 중 하나와 매우 근접하면 되는 것이지 세 가지 모두와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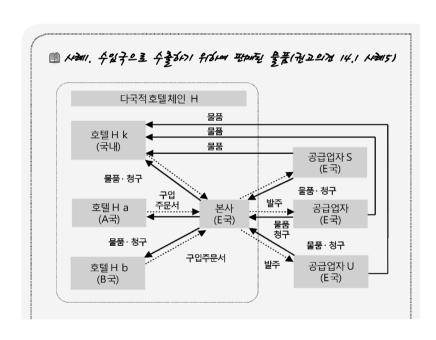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살펴본 '판매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검토방법', '비교가격방법' 등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만 충족하면 그 가격은 제1조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 圖 出面了片海影器 人名

- 유럽의 판매자 S는 국내 수입자 I에게 3대의 섬광 촬영장비를 대당 \$1,000,000에 판매하였다. 수입자 I는 판매자 S의 자회사이다.
- 수입재는 세관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한다.
  - -수출자 E는 이전에 국내의 한 병원에 같은 섬광 촬영장비 2대를 임치하였다.
  - -이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은 제5방법, 산정가격방법에 따라 각 \$980,000로 산정되어 세관에 의해 과세가격으로 수용되어졌다.
- 이 경우 S와 I의 거래가격 대당 \$1,000,000은 수용가능한가?
- → 수입자가 이전에 세관에 의해 수용되어진 제5방법에 의한 동종·동질 물품의 과세가격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10% 이내로 '매우 근 접'함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1,000,000의 거래가격은 추가적인 판매 주변상황 검토 없이 수용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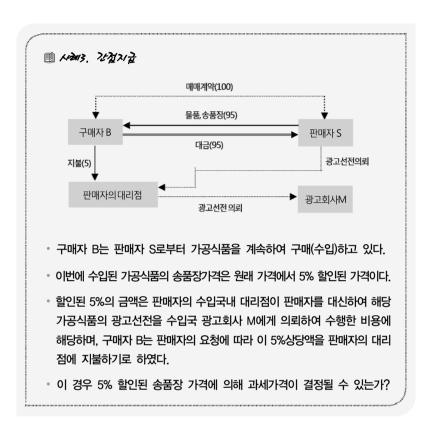
# 거래가격방법 사례연구



- E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호텔 H사는 국내와 A, B국에 각각 독립법인자격을 가진 Hk, Ha, Hb 체인호텔를 운영하고 있다.
- 매년 초 Hk, Ha, Hb 호텔이 E국 본사에 업무상 필요한 각종 비품의 구매주 문서를 제출하면, 본사는 각 호텔별 전체 주문을 취합하여 E국에 있는 복수 의 공급업자에게 물품을 발주한다.
- 주문된 물품은 공급업자가 각 체인호텔에 직접 수출하기도 하고, 공급업자가 본사에 납품한 후 본사에서 각 호텔에 수출하기도 한다.
- 두 가지 경우 모두 공급업자는 물품대금을 E국의 본사에 청구하고 본사 로부터 지급받는다. 본사는 물품대금을 각 체인호텔에 청구하여 지급받 는다.
- 위 사례에서 각 체인호텔과 본사와의 거래, 본사와 각 공급업자와의 거래 중 어떤 거래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 해당하는가?
- → 본사는 공급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후 각 체인호텔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E국의 본사와 공급업자 간 거래는 물품의 국제간 이전을 야기하지 않는 수출국내 국내거래이다.
- → 위의 경우 본사와 각 체인호텔간의 거래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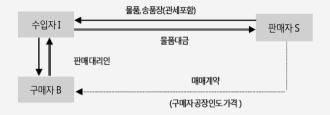


-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가공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지만, 수입물 품이 시세상품이며 원료의 어획량도 예측할 수 없어 계약서에는 가 격조정약관을 포함하고 있다.
- 계약서 상 최종가격은 노무비, 원재료비, 기타 수입물품 생산 시 발 생한 비용 등의 증가나 감소를 고려하여 수입물품 생산이 종료된 후 합의한 계산방법에 따라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수입 시에는 잠정 송품장으로 신고하고 구매자는 이에 따라 일단 결제를 하지만, 판매자의 해당 시즌 생산이 종료된 후 산출된 확정가격에 따라 확정송품장이 발행되고 그 차액이 구매자 또는 판 매자에 의해 지불 된다.
- → 가격조정약관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condition or consideration)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약관에 의해 수입 후 확정 된 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다. 단, 가격조정약관은 수입 시에 이미 확 정되어 있어야 하며,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일방에 의해 임의로 가격이 변경될 여지가 없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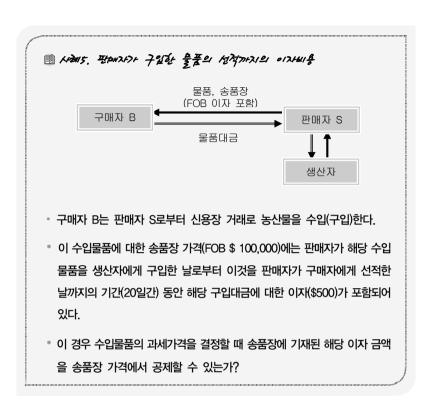


→ 아니다. 구매자 B가 판매자의 수입국내 대리점에 지불하는 금액은 판매자가 제3자(대리점)에게 부담한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으로 '간 접지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송품장 가격에 5% 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다.

### (२०००) अवार, अवार्ष , एडाउन जिला 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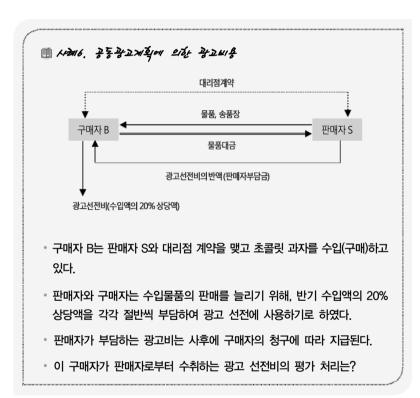


- 수입자는 판매자 S의 국내지사로 판매자 제품의 국내판매를 담당한다
- 이번에 국내 구매자 B와 판매자 S간에 제품 1.000ton을 구매자의 공장 인도 조건으로 \$20,000 가격에 구매(수입)계약이 체결되었다.
- 수입물품은 판매자가 수입자(판매자 대리인)에게 선적하고 수입자가 수입 통관한 후 구매자의 공장에서 인도하게 되어있다.
- 판매자가 수입자에게 송부한 송품장가격은 구매자와의 계약가격(구매자 공 장인도조건 \$20,000)이다.
- 이 송품장가격에는 수입물품의 국내 관세, 수입항 도착 후 운송비용, 수입자 의 판매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각각의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다.
- → 수입물품의 송품장가격에 포함된 수입국의 관세, 수입항 도착 후 운 송비용 등은 공제요소에 해당하지만, 그 비용들이 가격과 구분되어 (are distinguished) 있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
- → 그러나 수입국의 관세 및 제세는 그 본질상 그 금액을 명백히 구분 할 수 있으므로 공제하여야 한다.
- → 따라서 수입물품의 관세율이 25%라면 송품장가격 \$20,000을 (1+ 0.25)로 나눈 후의 가격인 \$16,000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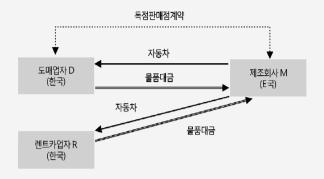
→ 수입물품에 대한 매매 계약은 신용장 거래로서 판매자는 수입물품의 선적과 동시에 물품대금을 영수한다.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송품장에 기재된 이지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의 지급을 연장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연불이자'가 아니다.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의 일부로 실제지 급가격을 구성한다.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 이자는 공제요소가 아 니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해당 이자를 포함한 송품장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 → 공동광고계획에 의해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광고 선전비용을 구매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은 수입물품의 가격과 상관없는 수입자의 순광고비 지출만을 감소시킨 것에 불과하다.
- → 구매자가 부담하는 광고활동비는 수입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구매 자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의 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 으며, 또한 판매자로부터 수취하는 판매자 부담 분 광고 선전비는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공제할 수 없다.

#### (1.६ म्डाईपर) प्रकेपर मानेपर मानेपरमा हेनराहर राहित 📵



- I . E국의 자동차 제조회사 M은 특수관계가 없는 한국의 자동차 도매업자 D와 한국 내 M사 자동차의 독점판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1) D사의 판매권은 D사 담당지역인 한국 이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2) D사는 한국내의 소매가격과 딜러에 대한 할인율을 정한다.
  - 3) D사는 2~3개월분의 자동차와 이에 상당한 예비부품의 재고를 보유한다.
  - 4) D사는 M사로부터 최대한 많은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도록 노 력한다. M사는 자신이 설정한 최저매출수량에 미달할 경우 계 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단. 최저매출을 달성하지 못했더라 도 각 차종 · 형식별 최저매출수량은 변경 · 교섭이 가능하다. D 사도 적절한 통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 5) D사는 전시장을 유지하고, 훈련된 판매원을 고용하고, 작업장을 갖춘 판매망을 구축한다.
  - 6) D사는 한국 내에서 M사 자동차의 광고활동을 수행한다.
  - 7) M사는 한국의 다른 회사에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는다.
  - 8) D사는 수입자동차에 대해 어떤 수량할인도 받지 않는다.

- 가장 대중적 모델인 M사의 자동차식의 D에 대한 판매가격은 \$12,000이다. M사는 한국의 제3자에게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으므로 M사가 거래단계에 따라 판매가격을 변경한다는 근거는 없다.
- Ⅱ. 한국의 렌터카 사업자 R은 M사 자동차A 10대를 구입하고자 한다.
  - 한국의 독점판매점 D의 자동차A의 소매가격은 대당 \$20,000으로 비싸기 때문에 R은 M사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협상을 한다.
  - M사는 독점판매점 계약에 따라 D사의 승인이 없이는 한국의 R사에 판매할 수 없지만, D사의 승인이 있다면 자동차A를 대당 \$12,600에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왔다.
  - D사는 자신이 부담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 R사에 대해 다음의 조건으로 M사가 판매하는 것을 허락한다.
    - 1) R사는 해당 자동차를 렌터카로 등록할 것
    - 2) R사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은 해당 자동차를 재판매하지 않을 것
  - 결국 M사와 R사는 위 조건을 받아들여 자동차A를 대당 \$12,600의 가격 에 판매계약을 체결한다.

#### → M과 D사의 독점판매점 계약에 의한 수입

- 1) 수입물품의 재판매 지역에 대한 제한으로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예견되는 판매 및 수리를 위한 재고품의 보유는 통상의 상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며, 수입물품의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이 므로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6) 통상의 상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며, 수입물품의 마케팅과 관련 한 조건 또는 사정이므로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7), 8) 모두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제한'이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M사와 렌터카 사업자 R사와의 거래

-M이 R사에 독점판매점 D의 승인이 있다면 \$12,600/대당 가격에 판매할 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D사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R사에 가해진 두 가지 '제한'은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구매자와 판매자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비교가격 방법이 있다. 여기서 비교가격이란 동종 · 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격이나 제4.5방 법에 의한 과세가격을 말한다.

이 비교가격을 사용하는 데 있어 상업적 단계 및 수량을 고려하여야 하다.

### (वार्ष) १९४४ स्था है निर्मेशनाना कार्य केर्य (वार्षा 10.1)

- 한국의 도매업자인 수입자 B는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자 S로부터 수입물품P 1.700개를 단가 \$5에 구매(수입)한다.
- 수입자 B는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의 동종 · 동질물품 거래가격을 비교 가격으로 세관에 제출한다.
  - ∼동종 · 동질물품은 판매자 F가 한국의 소매상인 수입자 B에게 동일한 수 량(1,700개)을 단가 \$6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판매자F는 도매상에게는 단가 \$5에 판매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 → 이 경우 상업적 단계를 고려한 조정액은 \$1로 비교가격은 \$5이므로 특수관계자간(B와 S) 가격이 비교가격과 같으므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 → 그러나 위 사례에서 판매자 F가 도매상에게 동종·동질물품을 단가 \$5에 판매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상업적 단계의 차이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자가 제시한 비교가격은 비교 목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



# 가격에 대한 조정

### I. 기산요소의 의의

# 1. 가산요소

- 관세목적상 가격(value)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특정요소를 구매자가 발생시킴(부담함)에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조정하여야 한다.
   (협정 일반서설 제1항)
-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에는
  다음의 금액이 가산된다. 
   □
   (협정 제8조)

가산요소란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한 요소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면서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가산 조정하는 것이다.(법 제30조 제1항 각호)

다음 6가지를 가산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 i )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Commissions and Brokerage)
- ii) 관세목적상 수입물품과 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및 노무비, 재료비 등 포장 비용(Containers and Packing)
- iii) 수입물품의 생산, 판매와 관련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생산 지원(Assists) 물품 및 용역의 가격(value) 또는 인하차액
- iv)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판매조건으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Royalties and Licence Fees)
- v) 수입 후 전매, 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Proceeds)
- vi) 수입항까지 운임, 보험료 및 운송 관련비용(costs of Transport, Insurance and Charges associated with the transport)

처음 다섯 가지를 필수조정이라 하며, 마지막 여섯 번째의 가산여부는 회원국의 선택에 맡기고 있어 선택조정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CIF주의를 택하고 있어 수입항까지 유송비를 가산한다 (협정 제8조 제2항)

단, 가산은 반드시 규정된 6가지를 제외하고는 어떤 가산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송품장가격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으로 거래당사자의 상관행을 존중한다는 관세평가의 기본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 과세가격 결정시 실제지급가격에는 제8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금액도가산될 수 없다. ● (협정 제8조 제4항)

### 2. 가산조정의 범위

\*\* 관세목적상 가격(value)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특정요소를 구매자가 발생시킴(부담함)에도(incurred by the buyer)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but are not included) 실제지급가격에 조정하여이한다.

(협정 일반서설 제1항)

●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 (협정 제8조 제3항)

거래가격에 대한 가산요소의 조정은

- i) 구매자가 발생시키거나 부담하여야(incurred by the buyer)하고,
- ii)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iii) 또한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해야 한다.

### 🏥 ७४४केस्थ ६४ ४के। ।

- 구매자 B는 판매자 S와 00제품을 FOB조건으로 구매(수입)한다. 단, 이 구매계약에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선적항에서 체선료가 발생할 경우 판매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 구매자는 00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XX선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물품을 한국으로 운송한다.
- 그런데 선적항까지 판매자가 00제품을 제 시간에 운송하지 못해 선적항에서 체선료가 발생하였다.
- 구매자 B는 XX선사의 청구에 따라 이 체선료를 지불하고, 매매계약에 따라 판매자 S에게서 이 금액을 환불받았다.
- 이 경우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는 관세평가 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는 '수입항까지 운송 비 및 관련비용'으로 '가산요소'에 해당된다.
- →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수입물품 매매계약에서 선적항에서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체선료는 판매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물품가격 즉, 실제지급가격은 이러한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가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가산요소인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는 실제지급가격에 이미 포함된 것이므로, 다시 가산할 필요가 없다.

### ाह्य हेत्र हेत्र का अध्या है। इस अध्या व

- 국내 XX사는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 남미의 유명한 OO담배 재배사로부터 건조 담뱃잎을 수입한다.
- 또한, XX사는 수입 담뱃잎 외에 국내에서도 담뱃잎을 구매한다.
- 담배를 제조할 때 수입 담뱃잎과 국산 담뱃잎의 혼합 비율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입자 XX사는 OO사에게 완제품 담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한다.(이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판매조건으로 '가산요소'에 해당한다)
- → 완제품 매출액을 기초로 지급되는 로열티 전체가 아닌 수입물품에 관 런된 로열티만을 가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입 담뱃잎에 관련된 로열 티 금액만을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가산 조정할 수 없다.
- → 단, 로열티 지급이 국산과 수입 담뱃잎의 특정한 혼합비율에 대해 이 뤄진다면, 로열티 가산조정은 이루어질 수 있다.

#### ■ 가산율·공제율 제도(관세법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7조의9)

- 협정 제1조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제8조 가산요소의 조정 등은 각각 수입물품별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장기간 반복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통상적인 비율을 가산 또는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가산율·공제율 적용 요건
  -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적용 대상
  - -실제지급가격(간접지급, 공제요소 포함)과 가산요소의 확정 (법 제 30조제1항, 제3항)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법 제33조 제1항, 제3항)



# 가격에 대한 조정

Ⅱ. 기산요소 1

# 1. 수수료 및 중개료(Commissions and Brokerage)

(a)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의 금액; i)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협정 제8조 제1항)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수수료와 중개료는 판매 계약에 참여한 중개자(intermediaries)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구매자가 중개자에게 지급하고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급액이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중개자가수행하는 역할에 좌우되는 것이지 그 명칭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 ■ 고시 제17조(수수료와 중개료)

법 제30조 제1항제1호에서 "수수료와 중개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수수료는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2.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1) 대리인과 수수료

대리인(agent)이란 항상 위임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구매·판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리인의 보수를 수수료라 하며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비율로 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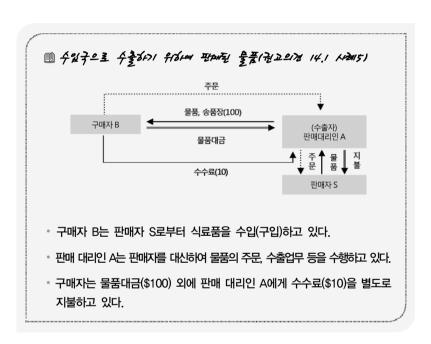
구매자를 대신하는 대리인을 구매대리인, 판매자를 대신하는 대리인을 판매 대리인이라 부른다.

판매 대리인이란 판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 다음과 같은 역 할을 하다.

- 판매자의 물품을 구매할 고객을 찾고,
- 주문을 받고 그것을 판매자에게 넘겨주고,
-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를 주선하고,
- 송품장을 비롯한 수출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등 용역을 제공한다.

보통 판매수수료는 판매자가 대리인에게 지급하고, 송품장가격에 포 함되므로 달리 조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별도로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수 수료는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단, 판매자가 지불한 수수료 를 구매자에게 청구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가산되 지 않는다



→ 판매 대리인이 수입물품과 관련해 판매자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주 문, 수출업무 등 용역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 는 경우 가상금액으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상한다

### 2) 구매수수료

구매수수료는 평가대상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해외에서 수입자를 대신하는 용역에 대하여 수입자의 대리인에게 수입자가 지불하는 보수를 의미한다.

(협정 제8조에 대한 주해)

구매수수료란 수입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수입자를 대신하는 용역에 대해 대리인에게 수입자가 지불하는 보수이다.

### ▶ 구매대리인은 구매자를 대신하여

- 구매자가 원하는 물품의 공급자를 찾고,
- 최적의 가격 협상을 지원하고.
- 판매자에게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통보하고,
- 샘플을 수집하고,
- 물품을 검사하고,
-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를 주선하고,
- 다른 경로로 반입되는 물품을 취합하고,
- 송품장을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구매수수료는 물품가격과 별도로 수입자에 의해 지급된다.

### 1 子中午午至 八部1

- 구매자 B는 (먼 남미국가의 )판매자 S로부터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 과거 B는 직원을 출장 보내 직접 판매자 S와 가격협상, 물품선정 등을 수행하였으나.
- '10년부터는 현지 대리인 A에게 동일한 업무를 위탁하고 물품가격의 1%를 수수료로 별도 지급하였다.
- → 구매자를 대신한 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1%의 수수료는 '구매수수 료'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
- → 구매자가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그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비용은 보통 수입 후 국내판매가격에 전가 되며 수입시점의 관세평가와 관련이 없다.

만약 중개자가 자신의 계산에 의해 행동하거나 물품에 대한 소유권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구매대리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 또한, 구매대리인이라 칭하는 자가 판매자와 특수관계에 있거나,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판매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는 구매대리인이라기 보다는 판매대리인일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어떤 이유로 송품장 가격에 구매수수료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구매수수료는 공제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구매수수료는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해당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지, 구매수수료 성격의 금액이라고 하여 무조건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 ■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와 쟁점 (예해 17.1)

- 세관당국은 중개자가 수행한 용역의 정확한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예: 대리인계약서(agency contract))를 요청할 수 있다.
- 세관당국은 대리인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구매수수료 가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 대리인이 수입물품 대금지급에 자신의 자금을 사용하는 등 소유권적 이해관계를 가지며, 거래와 가격에 대해 통제(control)를 하는 경우 구매대리인으로 간주 될 수 없다.
- 대리인이 물품가격과 자신의 보수를 구분하여 수입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세관당국은 신고인에게 판매자가 발행한 송품장 및 신고된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구매대리인의 일반적인 기능의 범위를 벗어난 다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청구 된 보수의 양면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구매대리인이 공장에서 수출항 까지 물품을 직접 운송하고 그 운송비를 자신의 보수에 포함하는 경우, 청 구된 총 수수료는 구매수수료가 될 수 없다.

#### ■ 시행규칙 제3조의3(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법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 검사,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 2.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시한 권리가 있는 경우
- 3.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 → 구매수수료 사례 ≥ → 구매업무위탁계약



- 구매자 B는 수출국의 생산 (판매)자 S 등 여러 회사(판매자)로부터 전기 기기 등을 수입한다. 이때 수출국에 있는 구매자의 해외 자회사 C에게 S사 등과 의 매매계약 체결을 포함한 구매업무를 위탁하였다.
- 해외 자회사 C는 B의 위탁에 따라 자사(C) 명의로 S사 등으로부터 공장 인도조건으로 수입물품을 구입하여, 이것을 구매자에게 수출한다.
- 구매자 B는 해외 자회사 C의 송품장가격(공장인도가격+수출국내 운송비용 +수입항까지 운송비용)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C에게 지급한다.
- → 해외 자회사가 수행하는 역할의 본질에 따라 수수료의 관세평가상 취급이 달라진다. 해외 자회사가 실제로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 의 구매업무만을 대행하는 것이라면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수 수료는 '구매수수료'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
- → 그러나 해외자회사가 수입물품 대금지급에 자신의 자금을 사용하는 등 소유권적 이해관계를 가지며, 거래와 가격에 대해 통제를 하는 경우 구매대리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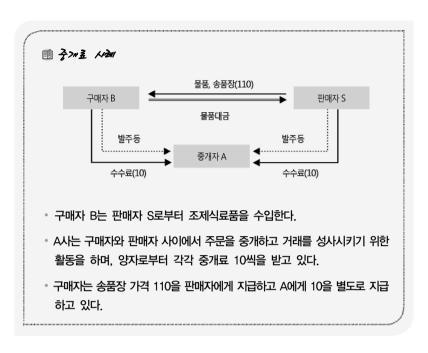
→ 또한 대리인이 물품을 구매한 후 수입자에게 물품가격과 자신의 보수를 구분하여 재청구한다는 단순한 사실이 대리인을 물품 판매자로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관당국은 신고인에게 공급자가발행한 송품장 및 신고된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3) 중개인과 중개료

중개인(broker)이란 일반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활동하지 않는 중 간 역할자(intermediary)를 말하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대행하며 보통양자를 서로 접촉하여 거래를 성립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중개인에 대한 보상은 통상 그의 활동 결과 체결된 거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중개료(brokerage)'로 지급된다.

중개인이 판매자에게 중개료를 받고 이 금액이 송품장가격에 포함되면 평가와 관련하여 문제되지 않으나, 중개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품장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구매자가 부담하며 구매수수료가 아니라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된다.



- → A가 중개업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가산요소인 '중개료' 에 해당하며,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도에서 가산된다.
- → 따라서 과세가격은 송품장가격 즉, 실제지급가격 110에 구매 자가 지급하는 중개료 10을 가산한 120이다.

### 2. 용기 및 포장비용(Containers and Packing)

- (a)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의 금액;
  - ii) 관세목적상 해당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비용(cost)
  - iii) 노무비, 재료비 여부와 관계없이 포장에 소요된 비용(cost) 59

(협정 제8조 제1항)

(법 제30조 제1항 제2호)

가산요소 두 번째는 용기 및 포장비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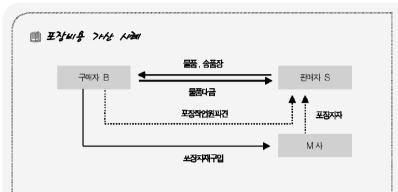
가산하는 금액은 용기 및 포장의 '가격'이 아니라 구매자에 의해 실 제로 소요된 '비용'이다.

가산되는 용기 및 포장비용은 '관세목적상 해당물품과 일체'로 취급되는 것, 즉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내용물과 동일한 HS로 분류되는 것을 말한다.

'용기'에는 재사용되는 일반적인 종류의 상업선적 컨테이너가 포함되지 않으며, 사진기케이스, 향수병 등 운송 또는 소매 포장용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보호용으로 사용된 것들을 말한다.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 가.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 예) 사진기 케이스, 악기 케이스, 총 케이스, 제도기 케이스, 목걸이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 나.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 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 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대형기계를 수입한다.
- 수입물품은 특수한 기계로 구매자는 판매자와 계약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부담으로 해당 기계를 포장한다.
- 이를 위해 포장자재는 수출국의 M사에서 조달하고, 포장을 위한 작업원을 수출국에 파견하여 수입물품을 포장하였다.
- 송품장 가격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입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 → '포장 비용'은 노무비, 재료비에 상관없이 폭넓게 해석된다. 구매자 가 부담하는 포장자재비, 작업원 출장비, 수출국 체재비, 임금 등 모두가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된다.



# 가격에 대한 조정

Ⅲ. 기산요소 2

### 3. 생산지원(Assists)

\*\*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하기 위한 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아래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value)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도에서 적절히 배분한 금액 \*\*\* (협정 제8조 제1항 b호) (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생산지원이란 예를 들어 구매자가 T-shirt를 구매하는데 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인 T-shirt의 재료인 옷감, 단추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구매자의 생산지원이 없더라도 판매자는 해당물품의 재료인 원단, 단추 등을 직접 구입하고 그 비용을 물품가격에 포함시키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 1) 생산지원의 종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원한 모든 것이 가산요소는 아니다. 다음 4가지 부류에 속하는 물품 또는 용역만이 가산되는 생산지원이다.

 i) 수입물품에 결합되는(incorporated)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이외 유사한 물품(materials, components, parts and similar items incorporated in ·····)

물품

- ii)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used) 공구, 금형, 주형 및 이와 유사한 물품(tools, dies, moulds and similar items used in …)
- iii) 수입물품 생산에 소비되는 재료
- iv) 수입국 외의 곳에서 수행된(undertaken) 것으로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necessary) 기술, 개발, 공예, 디자인, 설계, 고안(engineering, 용역 development, artwork, design work, and plans and sketches)

# • 첫째, 수입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incorporated)되는 재료, 구성요 소, 부분품 등이다.

수입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상표, 라벨 또는 상품의 하자를 응급처치하기 위해 포장 속에 추가된 스페어 부분품도 포함한다.

• 둘째,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used)되는 공구, 금형, 주형 등이다.

'공구'는 작게는 수공구(드릴)에서 크게는 산업기계까지를 포함한다. '금형, 주형'은 물품의 모양을 뜨는 데 사용된다. 단, 물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일반적 용도의 장비, 사무기기나 에어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수출자(제조자)에게 검사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그 검사장비가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완제품)의 특성과 그 생산공정을 고려하여 해당 검사가 생산공정의 일부이거나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검사장비는 생산지원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자 등과 같이 제조 단계별 테스트를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 그 검사장비는 생산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미국 CBP 545170, 1994,10,27, 참조)

- 셋째, 촉매, 윤활제, 연마제 등과 같이 수입물품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는 물품이다.
- 네 번째 생산지원은 물품이 아닌 용역으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개발·공예·도안·설계의 지원이다. 여기서 'development(개발)' 는 'research'가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된다.(결정 5.1)
  - 이 생산지원 용역의 부류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① 수입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수행(undertaken)되어진 것이어야 한다. 'undertaken(취해진)'은 'carried out(수행된)'의 의미로 이해된다.(결정 2.1)

- ② 네 가지 부류별로 정해진 요건, 즉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생산에 사용되는',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또는 '생산에 필요한' 것이어 야 한다. 기업운영, 회계관리, 법률에 관한 서비스는 생산지원에 속하지 않는다.
- ③ 공제요소인 '수입 후 건설, 설치, 조립, 유지 또는 기술지원 비용' 이 아니어야 한다.

생산지원 중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과세하는데 반하여, 용역은 수입국을 제외한 해외 개발(수행)된 것만 과세하는이유는 대다수 국가가 국산 원재료 등에 대해 임가공 감면제도를 규정하고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관세법에 해외임가공물품의 감면세 규정을 두어 국산 원재료 등이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국산의 원재료 또는 부품 생산 산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이 감면세 규정은 물품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개발(수행)된 용역이 수입물품에 체화되어 재수입될 때에도 관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평가 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정 제정 당시에 합의함으로써 국내의 용역 관련 산업에 대하여도 해외임가공물품의 감면세제도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Rosenow 및 O'shea의 저서 p.51)

### · 생사자원의 사회

- 구매자 B는 T-shirt를 수입한다.
- 첫 번째 경우 수입물품에 구현할 사진을 수입국에서 촬영하여 해외 제조업자에게 보낸다.
- 두 번째 경우는 해외 제3국에서 찍은 풍경사진을 무상으로 제조업자에게 보낸다.
- → 첫 번째 경우는 수입국에서 수행된 용역이므로 사진가격은 가산되지 않는다.
- → 두 번째 경우 수입국 이외에서 수행된 용역이므로 사진가격은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된다.

### 2) 생산지원의 기산요건

생산지원의 가산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i) 구매자에 의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ii)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되어야 한다.
- iii) 실제자급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iv) 객관적이고 수량화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야 하며,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
- v) 제8조1항b호에 명시된 4가지 부류이어이만 한다.

#### 圖 给处外是以是四十分 医对人的 1.

-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원단(천)을 무료로 제공하고, 판매자의 재단 및 봉재에 대한 비용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셔츠를 구입한다.
- 제공된 천의 10%는 재단과정에서 웨이스트로 남고, 90%만이 구매자가 수 입하는 셔츠에 포함되었다.
- → 셔츠에 포함된 원단(90%)은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이며, 웨이스 트로 남은 천 10%는 수입물품 생산과정에 소비된 것으로 구매자가 제공한 원단의 총 금액이 '생산지원'으로 가산된다. 이것은 판매자가 웨이스트를 스크랩으로 팔 수 있는 경우 더 명백해진다. 다만, 그 웨이스트의 판매수익이 구매자에게 다시 돌아온 경우에만 그 웨이스 트를 반영하여 생산지원의 가격을 감할 수 있다.

#### MAKARINBOI THE BY HAI Z

-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수입물품 OO을 수입한다.
-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XX는 구매자가 유상으로 판매자에게 제공한다.
- 구매자가 제공하는 재료의 정상적인 수출가격은 \$100(취득가격 \$90+제공에 소요된 비용 \$10)이지만, 이번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제공한 재료는 판매자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70으로 판매자에게 수출한다.
- 수입물품의 가격에 해당 재료의 인하된 가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해당 재료는 구매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 → 재료는 구매자에 의해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제공되고,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며,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이고 수량화 가능한 자료로 확인되고,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이므로 가산요소인 생산지원에 해당한다. 가산되는 금액은 인하된 가격인 \$30이다

### 3) 생산지원 가격(value)의 결정

생산지원의 가산을 위해선 그 가격(value)을 결정하여야 하다. 생산 지원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그 생산지원의 취득비용 또는 생산비용이다.

### ▶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을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취득 비용(acquisition costs)
- 생산지원 공구 등과 용역(두 번째와 네 번째 부류)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료를 말하다
- 구매자가 생산한 경우 그 생산비용
- 구매자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생산비용 또는 특수관 계자가 제3자로부터 이를 취득하는 비용이다.

취득 비용이란 생산지원 물품 등의 판매자에게 지급한 가격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해당 생산지원을 생산하는 판매자에게 공급한 다른 물품 또는 용역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산지원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입자가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예해 24.1)

생산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생산자의 기록에 반영된 비용으로, 개발 및 제조 원가와 이에 배분되는 간접비를 포함하지만, 이유은 제외된다.\*

### ▶ 또한 생산지원의 가격(value)에는

-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상환되지 않는(non-reimbursed) 관세 및 조세도 포함된다. 다
- ★舊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생산지원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제조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생산지원의 생산비용을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10.7.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3호 가목에 '해당 물품 및 용역의 생산비용'으로 규정하여 이유을 제외하는 것으로 바로 잡았다.

만, 이들 비용을 수입물품의 판매자(제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가산할 수 없다.

- 구매자가 이미 사용했다면, 사용된 부분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되어야 하고, 반대로 수리 또는 변형한 경우 그 비용은 고려되어야한다.
- 공공의 영역에서 이용 가능한 기술 등 용역은 사본 취득비용만이 가산된다.
- 생산지원 용역이 수입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걸쳐서 수행된 경우, 가산 조정은 수입국 밖에서 해당 생산지원 용역에 대해 실제로부가된 가치(value)에 한정되어야 한다.

### iii अर्थ्यास्थ्य रामक्ष (मेक्सेय र ह. २)

- 구매자 B는 외국의 판매자 S로부터 비디오 레이저 디스크 복사본 4,000장을 구입(수입)한다.
- 이 레이저디스크에는 국내 C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뮤직비디오가 수록되어 있다.
- 이 레이저디스크의 생산을 위해 구매자는
  - -국내 C사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뮤직비디오가 수록된 마스터 테이프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국내 판매 디스크 총매출액의 5%를 C사에 지급해야 하며.
  - -동 마스터 테이프를 사용하여 레이저디스크 생산에 사용되는 압인기 (stamper)를 판매자 S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이 때 국내 C사에 지급하는 5%의 라이선스 사용료를 가산해야 하는가?

- → 압인기는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등'으로 협정 제8조제1항 (b)(ii)에 해당하는 생산지원이다. 구매자가 국내 C사에 지급하는 라이선스료는 이 압인기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생산지원 의 가격으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된다.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디자인 등'에 해당되는 마스터 테이프가 수입국에서 제작되었다 할지라도 제8조제1항(b)(ii)에 해당하는 생산지원 물품의 가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 만약, 구매자가 판매자 S에게 압인기가 아니라 마스터 테이프를 제공했다면, 이 마스터 테이프는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디자인 등'으로서 협정 제8조제1항(b)(iv)의 생산지원 용역에 해당한다. 그러나이는 수입국에서 생산되었으므로 가산되지 않는다.

#### ■ 시행규칙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 ① 영 제18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조 립·기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 ② 영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은 특허기술·노 하우 등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과 새로이 수행하여 얻은 기술로 한다.
- ③ 영 제18조 각 호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한다.
- 1. 해당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치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그 구입 또는 임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 2.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 3.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 터 구입 또는 임치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 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의 생산비용
-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입 또는 임치한 비용
-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이하 이 호에서 "기술등"이라 한다)이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경우 : 당해 기술등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등의 금액

#### ■ 고시 제19조(생산지원)

-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이란 재배, 제조, 채광, 채취, 가공, 조립 등 해당 물품을 만들어 내거나 가치를 창출해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구매자가 영 제18조의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요소의 비용까지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 ③ 영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산지원 물품에 영 제18조제4호의 생산지원 용역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국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지 원 가격에 포함한다.
- ④ 영 제18조제2호의 "공구·금형·다이스"에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종이로 만든 형태의 표본도 포함한다.

### 4) 생산지원의 배분

- …구매자에 의하여 … 제공되는 다음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으로서, … 적절히 배분된(apportioned as appropriate) 금액<sup>99</sup> (협정 제8조 제1항 b호)
- (생산지원)요소의 배분은 상황에 적절한 합리적인 방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협정 제8조에 대한 주해)

생산지원인 금형으로 물품이 장기간 생산되고, 그 중 일부만 수입되는 경우 이 금형, 즉 생산지원의 비용을 어떻게 해당 수입물품에 배분하여 가산할 것인가?

'배분'은 '적절'하고, '상황에 적절한 합리적인 방법'과 '일반적으로 인 정된 회계원칙'에 따라야 한다.

'배분'은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결정되 며, 예를 들어

- 수입자가 일시에 전액을 가산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선적분에 전액 배분할 수 있고,
- 첫 번째 선적 시까지 생산된 단위수량에 배분될 수도,
- 계약 또는 확약되어 있는 전체 예정 생산량에 대해 배분될 수도 있다.

### ■ 시행령 제18조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금액(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신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한다)을 더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 1.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신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 2.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 생산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 생산 물품별 거래가격(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합계액 대비 해당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비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치액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수입되는 전체 물품에 관세율이 다른 여러 개의 물품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전액을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로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에 안분하여 배분한다.

### 🗐 अर्रासिंग भार्स रहे।

- 구매자 B는 판매(생산)자 S로부터 주형제품(예: 휴대폰 케이스)을 구매(수입)하기로 계약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몰드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 판매자는 계약에 따라 4만개의 제품을 생산한다.
- 구매자는 이 중 3만개는 자국으로 수입하고, 나머지 1만개는 판매자로 하여 금 제3국의 지정된 자에게 수출토록 한다.
- 무상으로 제공한 몰드는 제품 4만개 제작이 끝난 시점에 판매자의 자유 처분에 맡겨진다.
- → 몰드는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주형 등'에 속하는 생산지원으로 가산요소이다.
- → 이 경우 구매자가 제공한 몰드의 (구입 또는 생산)비용은 계약된 제품 4만개에 배분하여 가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즉, 국내로 수입된 3만개에 안분된 금액만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된다.



# 가격에 대한 조정

Ⅳ. 기산요소 3

# 4. 권리사용료(Royalties and Licence Fees)

⑤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되고 평가대상 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 
⑤

(협정 제8조 제1항 c호) (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권리사용료란 협정에서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한다. 우리 관세법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물품을 제조, 판매, 사용 또는 전매와 관련된 '권리'에 대한 지급을 가리킨다.

## 1) 권리사용료의 기산요건

본래 권리사용료는 무형재에 대한 지급으로 물품세인 관세의 대상이 아니나, 유형재인 수입물품에 체화된 경우 물품 가격에 가산된다.

예) 보통 T-shirt와 명품 브랜드 T-shirt의 차이 : '명품 브랜드'라는 무형 의 가치가 T-shirt라는 유형재에 체화

권리사용료의 가산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권리사용료의 가산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 또는 권리허락자의 소재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 i)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related to)되어야
- ii) 평가대상 물품의 '판매조건'(as a condition of sale)이어야
- iii) 당연히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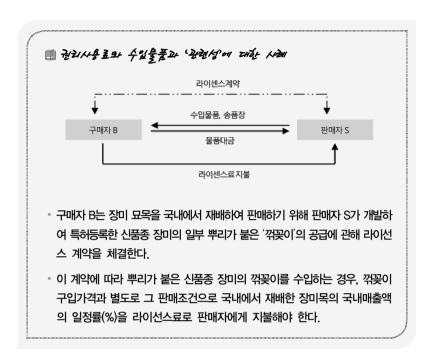
## i ) 관련성(related to)

수입물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수입물품에 상표권, 저작권 또는 특허공법 등 무형재산권이 체화·구현되어 일체화되거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이다. 권리사용료의 '계산방식'이 수입물품과 관련 있다고 하여 수입물품 과 관련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권리	수입물품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노하우 등	완성품	특허 발명품이거나 방법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것일 것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등	특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 되어 있을 것	
	설비·기계·장치 (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 에 적합할 것	
디자인권	완성품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것일 것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 되어 있을 것	
상표권	완성품	상표가 부착되어 있거나, 국내 에서 수입 상태대로 또는 경미 한 가공 후에 부착될 것	
저작권	완성품	가사, 선율, 영상, <b>컴퓨터소프</b> <b>트웨어'</b> 등이 수록되어 있을 것	
기타의 권리		가장 유사한 권리에 관한 규정 준용	

<sup>\*</sup>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 마그네틱디스크, 시디롬 등 HS 제8523호에 속하는 전달매체는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19조 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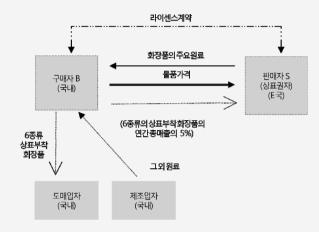
- → 수입물품에 판매자의 특허가 구현되어 있으므로 해당 권리사 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판매조건'으로 지급되었으 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 → 단, 수입되어 발아된 삽목을 국내에서 재배한 나무에서 새로운 삽목이 자라, 이 새로운 삽목의 국내매출액에 대해 라이선스 료가 지불되는 경우는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 ii) '판매조건'(as a condition of sale)

'판매조건'이라 함은 수입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반드시 권리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권리사용료 지급을 조건으로 해당 거래가 성립된다는 의미다.

권리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 권리사용료를 지급받는 권리권자가 수입물품의 판매자를 선정 또는 지정 하는 등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다면, 권리사용료는 '판매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 画 岩孔从务至 - (亚加圣汉) 人油



- E국의 판매자 S는 국내에서 보호되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 구매자 B는 S의 상표로 6가지 종류의 화장품 제조·판매한다.
- 구매자 B는 S의 상표로 판매한 모든 종류 화장품의 연간 총매출의 5%를 S에게 권리사용료로 지급한다.
- 모든 종류의 화장품은 국내에서 얻어진 원료를 이용하여 판매자 S의 제조법에 따라 제조하나, 예외적으로 한 제품만 S로부터 필수 원료 하나를 일반적으 로 구매하고 있다.
- 그러나 구매자 B에게 필수 원료의 구입의무는 없다.

구매자 B가 해당물품을 판매자 S로부터 구입할 수도 있고 국내의 공급자로부터 구입할 수도 있으며, 이와 상관없이 권리사용료를 지급하 여야 하는 것이므로 '판매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매조건'을 판단하는데 있어 '구매선택권'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시행령 제19조제5항은 다음의 경우 '판매조건'에 해당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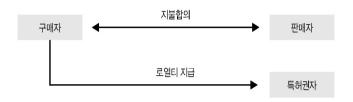
## ■ 시행령 제19조 (권리사용료의 산출)

-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 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 는 경우
-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 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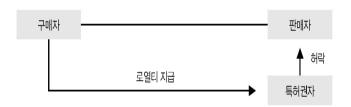
## 2) 제3자 권리사용료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판매조건'으로 지급되었다면 직접 지급되었든 제3자에게 간접 지급되었든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 야 한다. 수입물품과 '판매조건'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 기 위하여 제3자인 권리보유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②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권리보유자 의 허락을 받아 이를 판매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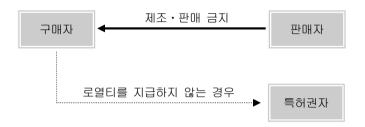
구매자가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수입물품의 판매계약서에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권리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판매계약서에 권리사용료의 지급과 관련한 명시적 문구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판매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매 계약과 라이선스 계약 등 관련 문서들의 계약 및 법적 의무사항 등을 포함하여 판매 및 수입과 관련된 제반 사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가 '판매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4조의2, 고시 제21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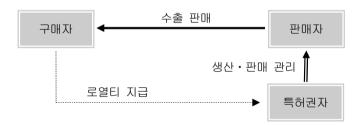
- ① 물품판매계약 또는 물품판매계약 관련 자료에 권리사용료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 ② 권리사용계약 또는 권리사용계약 관련 자료에 물품 판매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 ③ 물품판매계약 · 권리사용계약 또는 각각의 계약 관련 자료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판매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지 여부



④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가 결합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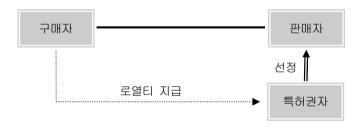
⑤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권리사 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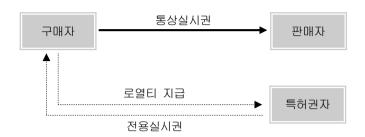
⑥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의무가 있고, 거 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⑦ 수입물품의 판매자와 권리사용료를 지급받는 자 또는 권리권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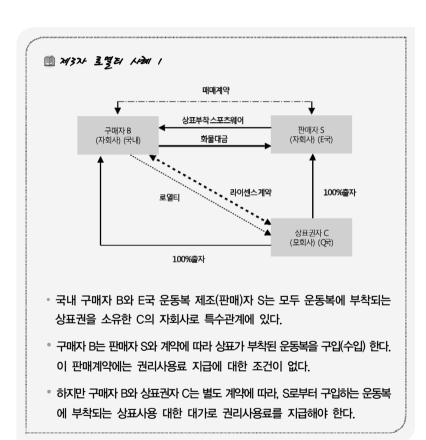


⑧ 특허권 등의 권리권자가 수입물품의 판매자를 선정 또는 지정하는는 등 구매자에게 수입물품 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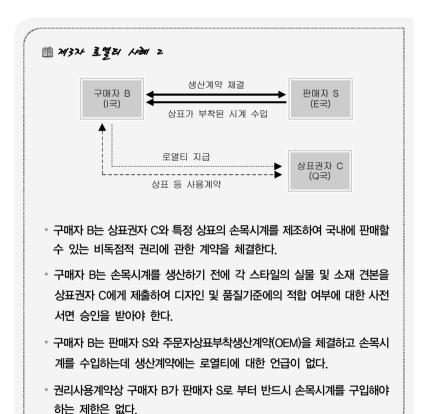


① 구매자가 특허권 등(상표권은 제외)의 권리권자로부터 수입물품 과 관련된 특허권 등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구매자가 해당 권리 권자에게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 운동복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 이 있다.
- → 구매자와 판매자의 계약에 권리사용료에 대한 명시적인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구매자가 상표가 부착된 수입물품을 구매하기위해 모기업인 상표권자 C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조건'이다. 구매지는 권리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 상표권자는 손목시계를 생산하기 전에 견본을 제출받아 디자인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지만, 이를 두고 품질관리 차원을 넘어 판매자를 상대로 그 생산이나 수출행위를 직접 관리・통제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하여야 하는 제한도 없으며, 구매자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매자가 법률상・사실상 본 제조계약의 이행을 거부할 이유는 없으므로 구매자는 손목시계를 구매하기 위하여 상표권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3)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법적권리 뿐 아니라 'know-how'로 불리는 '영업비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거래당사자가 판단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대부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
   (관세법 제30조 제1항 4호)
-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1. 저작권 등의 법적권리와 2. 영업비밀을 말한다.○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 ▶ '영업비밀(Know-how)'

법적 권리에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 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말한다.(시행령 제19조제1항)

## ▶ 법적권리의 종류

권리	근거법령	보호대상
특허권	특허법	발명 (물건, 방법, 생산방법)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	물품 구조, 형상에 관한 고안 (소발명)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	물품의 디자인 (형상, 모양, 색채 등)
상표권	상표법	상품, 서비스에 사용하는 마크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색채 등과 이를 결합한 것)
저작권	저작권법	문학, 음악, 연극, 회화,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 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

# ▶ '재현생산권(Right to reproduce)'

● 수입물품을 수입국 내에서 재현 생산(reproduce)하기 위한 권리사용료는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 ● (협정 제8조에 대한 주해)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그러나 재현생산권에 대한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을 수입 후 재현생산되는 물품과 관련된 것이지 해당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되지 않는다.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현하는데에만 사용되고 수입물품 자체가 판매되거나 분배되지 않는 경우, 재현하는 권리 이외의 판매권 등은 의미 없는 공허한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권리사용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 🏥 अर्जनस्थरम्स १ स्ट्रेश ।

- 구매자 B는 외국의 사진가 S의 사진집 출판을 위해 S로부터 사진을 수입(구입)하였다.
- 구매자는 사진대금과는 별도로 S와 계약에 의해 사진집의 국내판매가격의 1%를 라이선스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조건으로 사진집용 사진이 수입되었다.
-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라이선스료는 수입물품인 사진을 국 내에서 편집, 인쇄하여 사진집을 출판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 즉 '수 입물품을 수입국에서 재현하기 위한 재현생산권'의 대가로 과세가격 에 가산되지 않는다.

#### IN THE PARTY PART 2

-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애니메이션이 수록된 마스터 비디오테이프 를 수입하였다.
- 구매자 B는 마스터 비디오테이프에 저장된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국내 TV 등을 통해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고 그 대가로 라이선스료를 판매자 S에게 지급하였다.
- → 라이선스료는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우리나라에서 TV 등 수신매체를 통해 방영하는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의 사용 대가로 지급된 것이 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

#### ■ 재현생산의 예시

- 문학작품 원고를 수입하여 책을 발간 · 판매하는 것(문학작품)
- 외국 미술관의 유명 조각작품을 수입하여 복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 (미술품)
- 만화·영화의 주인공이나 그 캐릭터를 카드나 연하장에 복사하여 판매하는 것(아이디어)
- 새로운 장난감의 시제품을 수입하여 대량으로 복제하는 경우(시제품)
- 해외에서 개발된 기존 해충의 천적을 수입하여 대량으로 번식하는 경우(동물의 번식)
- 수입물품을 견본으로 몰드를 제작하고 이 몰드로 동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물리적 재현)
- 전자회로 도면(계통도)을 수입하여 전자회로기판에 식각공정을 거쳐 회로로 구현하는 것(발명)

● 수입물품을 '공급하거나 전매하는 권리'에 대한 구매자의 지급은 그러한 지급 이 수입물품을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의 조건'이 아니라면 실제지급 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 <sup>99</sup> (협정 제8조에 대한 주해)

수입물품을 '공급·전매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판매 조건'이 아니라면 가산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공급·전매하는 권리'이므로 수입물품 수출판매의 조건이 아니라면 가산할 수 없다는 뜻이다.

## 4)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

권리사용료가 일부는 수입물품을 기초로, 나머지는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기타 요인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 전체 권리사용료 중 해당 수입물 품에 관련된 부분만 산출하여 가산하다.

이때 권리사용료의 산출은 객관적이고 수량화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제1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

#### ■ 권리사용료의 산출 방법 (고시 제22조)

- 1. 수입물품이 <u>완제품</u>(수입후 경미한 조립, 혼합, 희석, 분류, 가공 또는 재포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u>총지급 권리사용</u> 료 전액을 가산한다.
-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총지급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총지급 권리사용료가 수입부분품 등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될 완제품 전체와 관련된 경우에는 총지급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중 수입 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 3. 수입물품이 <u>방법에 관한 특허를</u>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u>총지급 권리사용료 전액을 기산한다.</u> 다만, 총지급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u>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가</u>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 중 <u>일부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에는 총지급 권리사용료에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는 전체 설비 등의 가격 중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는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산한다.</u>

이러한 방법으로 가산할 권리사용료 금액을 산출할 때, 위 규정의 '총지급 권리사용료'는 다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시 제22조제2항)

-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는 공제 한다.
- 권리사용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권리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포함하다.

•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사용연수, 생산능력 및 생산되는 제품의 수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산출할수 있다.

다음으로, 위 규정에서 '수입물품의 가격' 및 '완제품의 가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시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 '수입물품의 가격'은 가산하려는 권리사용료를 제외하고 다른 가산 요소들(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 제2호 단서의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은 GAAP에 따른 회계보고서 등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완제품의 가격에 포함된 수입원재료의 가격을 말한다.
- '완제품의 가격'에서 제조원가는 직접재료비(수입원재료와 국내원 재료를 포함)에 직접노무비 및 제조간접비를 더한 금액으로 판매비 와 관리비, 이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완제품의 가격'에서 제외되는 '세금'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 단, 완제품의 제조원가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렇다.
- 제2호 단서에 따른 조정액을 계산할 때 완제품가격에서 제외되는 권 리사용료는 GAAP에 따라 제조원가에 반영된 권리사용료를 말한다.

#### ■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평가

- 전달매체에 수록된 데이터 처리장치용 S/W('매체수록S/W')의 과세가격에 S/W 자체의 가격을 포함시킬 것인지? (실제지급가격의 문제)
  - -관세평가위원회는 결정 4.1(1984.9.24)을 통해 '매체수록S/W'의 과세가격에 데이터 처리장치용 S/W의 가치를 포함할지 여부를 체약국의 선택에 맡기기로 하였음
  - -이에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한다는 과세가격 결정 의 원칙에 따라 S/W의 가치도 포함한다는 입장
  - -따라서 '한 개의 물품'과 다름없이,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호X' 등 시중에서 '한 개에 000원'식으로 가격으로 거래되는 매체수록S/W의 괴세가격은 그 가 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이 결정에서 '전달매체'란 집적회로, 반도체 및 그러한 회로 또는 장치를 결합한 유사한 장치들은 포함하지 않으며, '데이터나 명령'은 음향, 영화 또는 영상기록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 다음으로 가격(price)으로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매체수록S/W'에 대해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처리는? (권리사용료의 문제)
  -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판매조건'으로 지급될 때 가산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만족될 때 해당 권리사용료는 가산되어야 한다.
  - -그러나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S/W가 HS8523에 속하는 마그네틱테이프, 마그네틱디스크, 시디롬 등에 수록된 경우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가산되지 않는다.



# 가격에 대한 조정

Ⅴ. 기산요소 4

## 5. 사후귀속이익(Proceeds)

수입물품의 수입 후(subsequent)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proceeds)
 중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협정 제8조 제1항 d호) (법 제30조 제1항 제5호)

수입물품의 수입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이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실무상 사후귀속이익이라 부른다.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야 할 총금액'이라는 실제지급가격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사후귀속이 익은 이 실제지급가격, 특히 간접지급액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후귀속이익은 통상 그 금액 자체가 수입 후 상황에 따라 가변적 이고, 경우에 따라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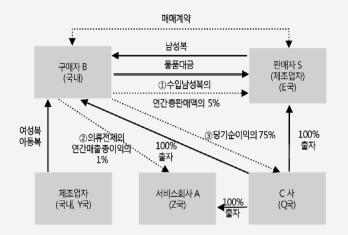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사후귀속이익은 '거래가격 배제사유'의 하나로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즉, 사후귀속이익이 존재하는 거래에서의가격은 그 물품의 가치(value)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입 당시 또는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period) 이내에사후귀속이익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여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가격 배제사유에서는가산요소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토록 하고 있다.(법 제30조 제3항 제3호 단서, 협정 제1조(1)(c))

사후귀속이익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인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사후 귀속이익은 존재만으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된다. 단, '수입물품의 전매' 등에 따른 수익이므로 수입물품과 관련은 되어야 한다. 배당금의 이동 같은 기타지급은 사후귀속이익이 아니다.(사례연구 2.1, 2.2)

#### ■ 사후귀속이익과 권리사용료

- 많은 경우에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의 재판매 가격의 일정률(%)로 지급된다. 만약이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은 있으나 판매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권리사용료로서 가산할 수 없을 수 있다. 이때 해당 권리사용료를 '사후귀속이익'으로보아 가산할 수 있는가?
  - -물론, 판매자와 권리권자(권리사용료를 지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사후귀속이익'이 될 수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그러나 판매자와 권리권자가 동일하거나, 이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 일반적으로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은 무형재인 '권리'의 사용이고 사후귀속이익은 유형재인 '물품' 자체의 전매·사용·처분이므로, 그 대상이 달라 판매조건이 이닌 권리사용료를 사후귀속으로 가산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 -과거 EU 관세법위원회의 예해 3에서는 가산요소는 각각 그들 자체의 범위를 가지므로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의 정의에 부합하는 금액은 권리사용료로서만 검토되어야 하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후귀속이익으로 고려되지 않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었다. (2018년 수정된 예해 3에서 이 단락은 삭제되 었다.) 캐나다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CBSA Memorandum D13-4-9)
- 다음으로 각 가산요소는 서로 독립적인 규정이므로, 어떠한 지급액이 '권리사 용료'로서 가산될 수 있는지 또는 '사후귀속이익'으로 가산될 수 있는지는 각 각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 -그 근거로는 어떤 권리사용료가 생산지원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 지급되는 경 우 생산지원의 가격으로 가산될 수 있는 것(권고의견 4.8, 4.18, 사례연구 8.1, 8.2 참조)처럼 사후귀속이익으로도 검토·가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미국의 경우 1991년 HRL 544436(C.S.D. 91-6, 1991.2.4., 일명 Hasbro I ruling)과 General Notice on the Dutiability of Royalty Payments(1993.2.10., 일명 Hasbro II ruling)을 통해 로열티 지급액은 '권리사용료 및/또는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1 八季刊春の19 八湖 (八湖里子 2.2)



- 국내 의류도매회사 B, E국의 의류제조업자 S, Z국의 서비스회사 A는 모두 Q국의 C사의 자회사로 C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운영된다.
- 국내 의류도매회사 B는 같은 C의 자회사인 판매자 S로부터 남성복을 수입하고, 여성복과 아동복은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외 제조업자로부터 수입 또는 구입하고 있다.
- 구매자 B는 C사가 정한 경영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불을 한다.
  - ① 매년 말 판매자 S로부터 수입한 남성복 연간 총매출액의 5%를 수입물품 가격과 별도로 판매자 S에게 지급한다.
  - ② 매년 말 C의 자회사인 서비스회사 A에게 B가 판매한 모든 의류의 연간 총매출에서 실현된 총이익금의 1%를 지급한다. 이 금액은 A가 C의 모 든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저금리 융자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다.
  - ③ 매년 말 B는 단기순이익의 75%를 모회사인 C사에 지급한다.
- 모회사 C사와 자회사 B, S, A사는 특수관계에 있지만 이 특수관계는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다른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 증명되었다.

- → ①(판매자 S에게 수입물품 매출액의 5% 지급) 판매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수입물품 전매에 대한 사후귀속이익으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다.
- → ②(서비스회사 A에 전체 매출에서 실현된 총이익금의 1% 지급)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지급되지만,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지급으로 사후귀속이익이 아니다.
- → ③(모회사 C에 당기순이익의 75% 지급) 수입물품과 관계없는 배당 금 또는 기타 지급금액으로 사후귀속이익이 아니며, 간접지급으로 거래가격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 6. 운임, 보험료 및 운송 관련비용

# (cost of transport, cost of insurance and charges associated with the transport)

-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령에, 다음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것
   인지 제외시킬 것인지를 규정해야 한다.
  - a) 수입항(장소)까지 수입물품 운송비용
  - b) 수입항(장소)까지 수입물품 운송과 관련된 적하비, 양하비 및 취급수수료
  - c) 보험료

(협정 제8조 제2항)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 1) 개요

우리나라는 운임, 보험료, 비용을 포함하는 'CIF주의'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하 이들을 합하여 '운임 등' 이라 한다) 모두를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 '운임 등'은

- i) 협정에서 허용하는 비용만이 가산되며,
- ii) 공제요소인 수입후의 운송비용은 제외되고,
- iii) 국내법령에서 정한 비용만이 가산된다.

가산할 운임 등은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한다.(시행령 제20조제5항) 여기서 '수입항'이란 해당 수입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일시 양륙은 제외)이 이루어지는 항구 또는 공항을 말하며, '수입항도착'이란 수입물품의 양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고시제24조 제1,2항)

## 2) 운임 등의 산출방법 등

운임 등의 산출방법은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운임과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 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시행령 제20조제1항)

다만, 운임 명세서 등에 의해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거래·운송방 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시행령 제20조제2항)

#### ■ 시행규칙 제4조의3 (운임 등의 결정)

-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운송수단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운항하여 수입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 이 수출항으로부터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연료비, 승무원의 급식비, 급료, 수당, 선원 등의 송출비용 및 그 밖의 비용 등 운송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
- 2. 하나의 용선계약으로 여러가지 화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왕복운송하거나 여러가지 화물을 하나의 운송계약에 따라 일괄운임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배분한 운임. 다만,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알 수 없거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배분한 운임으로 한다.
- 3. 운송계약상 선적항 및 수입항의 구분 없이 총 허용정박 시간만 정하여 체선료 (滯船料) 또는 조출료(早出料)의 발생장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 허용정박 시간을 선적항과 수입항에서의 허용 정박시간으로 반분(半分)하여 계산된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를 포함한 운임. 이 경우 실제 공제받은 조출료는 유임에 포함하지 않는다.
- 4. 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탁송품으로서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

이러한 운임 등의 신출방법에 대한 추가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24조 제3항)

#### ■ 고시 제24조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 ③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실제로 드는 비용을 말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1. 수입물품을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하는 때에는 해당 운송계약에 기초한 해당 운송의 대가로서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 등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 2. 수입물품을 용선계약에 따라 운송하는 때에는 해당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 로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공선회조료를 포함한다)
- 3. 수입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선적자재비(資材費) 및 선박개장비(改裝費)를 지 급한 경우에는 동 비용을 합산한 금액
- 4. 수입물품의 운임에 수입항에서의 하역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하역비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5. 구매자(수입자 포함)가 부담하는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 며, 선적항에서의 조출료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 니한다. 다만, 조출료는 수입통관시에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 되.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확정가격 신고일까지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제출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6. 수입항에서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된 후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항에서의 조출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7. 콘테이너에 의한 문전배달형태(Door to Door)의 운송계약의 경우에 그 운송 료가 구분되는 때에는 수입항 도착 이후의 운송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다
- 8. 콘테이너 임차료가 운임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콘테이너의 임차에 소 요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 9. 규칙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은 별표 제1호의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에 따른다.

무상 또는 소액 등 아래와 같은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운임과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를 실무상 '항공운송 운임 등 특례' 물품이라 한다.(시행령 제20조제3항)

이 특례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가격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이 동 특례 대상 물품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 다. (시행령 제20조제6항)

#### ■ 항공운송 운임 등 특례 물품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

- 1.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 수출물품의 제조 · 가공에 사용할 외화획득용 원재료로서 세관장이 수출계약
   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 3.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대체·수리 또는 보수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 4.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수리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 5.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출물품을 수리 또는 대체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 6. 신문사, 방송국 또는 통신사에서 반입하는 뉴스를 취재한 사진필름, 녹음테이 프 및 이와 유사한 취재물품
- 7.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받는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 8. 제48조제4항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50만원 이하 인 물품
- 9.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 10. 항공사가 자기 소유인 운송수단으로 운송하여 반입하는 기용품과 외국의 본사 또는 지사로부터 무상으로 송부받은 해당 운송사업에 사용할 소모품 및 사무용품
- 11.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제작지연, 그 밖에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출자가 그 운 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항공기로 운송한 물품
- 12.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천재지 변이나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송수단을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하여 항공기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물품

상기 항공운송 운임 등 특례 물품의 운임과 보험료의 구체적 산출방법 은 다음과 같다.

#### ■ 항공운송 운임 등 특례 물품의 운임 산출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3)

- ③ 제2항 각 호의 물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적용 운임이 실제 발생한 항공운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운임 을 적용한다.
- 1.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물품: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 편물요금표에 따른 요금. 이 경우 물품의 중량이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표 시된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중량의 요금에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 2. 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물품: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
- ④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제2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대한 보험료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수입자의 선박 등으로 운송되는 특정한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통상의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0조제4항)

#### ■ 통상의 운임 적용 물품 (시행령 제20조 제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 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선박회사등"이라 한다)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 1. 수입자 또는 수입자와 <del>특수관</del>계에 있는 선박회사등의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물품
- 2.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제 적재수 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

#### ■ 고시 제25조(통상운임)

영 제20조제4항의 "선박회사등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이란 해당 물품의 종류, 수량 및 운송조건(운송수단의 종류와 운송경로 등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송을 위한 운임 등을 말한다.

운임 등은 다른 가산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 운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인코텀즈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고시에서는 운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 운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고시 제 24조 제4항)

- ④ 제3항에 따른 운임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당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운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 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수출판매 계약에 따라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판매자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 에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실제로 지급되는 운임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구매자가 실제지급가격과 별도로 지급하는 수입 항까지의 운임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
- 수출판매 계약에 따라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 에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여, 해당 수입항까지 의 운임 등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
- 수출판매 계약에 따라 선박으로 운송하기로 한 수입물품이 항공으로 운송된 경우(규칙 제4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해당 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때에는 실제지급가 격에 가산하며, 판매자가 지급하는 때에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취 급한다.
  - 나. 해당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당초 계약의 약 정에 따라 판매자가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 3) 인코텀즈(INCOTERMS) '정형거래조건 통일규칙'

인코텀즈(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란 국제무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래조건들을 정형화하기 위해 국제상공회의소에 서 제정한 것으로 정식 명칭은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이다. 현재 사용 중인 것은 2020년에 개정된 'Incoterms'<sup>®</sup> 2020'이다.

#### ▶ FOB & CIF

구분	위험이전	비용이전	비고
FOB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 선에 적재하였을 때	매도인은 위험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통관 : 매도인 수입통관 : 매수인
CIF	//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 비용+목적항까지의 운 임 및 보험료+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

-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에서 판매자의 의무는 수출지, 즉 선적항에서 물품이 운송수단에 놓이거나 선적될 때 끝나며, 이후 구매자가 물품의 손실·파손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인도'조건에서 판매자는 적재시까지 비용 뿐 아니라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

일반적인 경우 운임, 보험료는 FOB 조건의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CIF조건에서는 포함되어 있다. 각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INCOTERMS 2020의 주요내용

구분 거래조건	위험이전(A)	비용이전(B)	비고
EXW (Ex Works) (공장인도)	매수인의 작업장 구내에 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 하였을 때	매도인은 A(위험이전)까 지의 제비용 부담	● 수출입 통관 · 승인 : 매수인의무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 정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 였을 때	//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물품이 지정선적항 의 부두에 혹은 바지 선으로 본선의 선측 에 인도하였을 때	//	//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였을 때	//	//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정기선의 경우 양 하비 부담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인도)	//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정기선 의 경우 양하비 부담	//

구분 거래조건	위험이전(A)	비용이전(B)	비고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 인도)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 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 운 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 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 보험료 지급인도)	//	매도인은 CPT조건+지 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 보험료 부담	//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 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	매도인은 A(위험이전)까 지의 제비용 부담	//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앙하인도)	ivered At 터 양하된 상태로 지 Place 정목적지나 합의된 지 // nloaded) 점에 매수인의 처분		//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 (단, 관세 포함)	● 수출입 통관 · 승인 : 매도인의무

#### 4) 운송 관련비용 평가처리

장치·보관료(storage costs)는 발생 시기, 장소에 따라 여러 가지이지만, 운송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장치·보관료에 한해 운송 관련비용으로 처리된다.

#### 則 なれを発達(storage costs) APM (叫が 7.1 5th)

- 구매자 B는 E국의 판매자 S로부터 공장인도가격으로 기계를 구매(수입) 한다.
- 해당 수입물품을 적재할 예정이던 선박에 사정이 생겨, 다른 선박을 구해 수출항으로 보냈다.
- 구매자는 그동안 수출자로부터 인도받은 기계는 수출항의 장치장에 임시로 보관하고 창고업자에게 보관료를 지급하였다.
- → 장치장 보관료는 운송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보관비용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 운 임 등'에 해당된다.

체선료란 선적 또는 하역이 완료되지 않아 약정기간 이상 정박시켰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이다.

#### 剛 浏灯盖 人名

-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FOB 가격으로 구입(수입)한다.
   구매자는 선사와 수입물품을 국내로 운송하기 위해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 해당 판매계약에는 판매자의 귀책으로 인해 구매자가 용선한 선박의 선적지 연으로 체선료가 발생한 때에는 판매자 S가 이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 이 때 판매자 S의 사정으로 선적항에서 체선료가 발생하였고, 선사의 청구에 따라 구매자는 체선료를 선사에 지급하였다. 그리고 구매자는 판매자와의 판매계약에 따라 선사에 지급한 체선료를 판매자로부터 회수하였다.
- 이 경우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는 가산하여야 하는가?
- →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통상 '수입항까지의 운송 관련비용'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판매계약에 근거하여 판매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즉, 해당 판매계약의 가격은 이러한 조건 하에 정해진 가격이다. 따라서 해당체선료는 물품가격(실제지급가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아 다시가산하지 않는다.

# प्रेम्टिर्गण वार्तम हर्षिर रिक्ष्ट्रें ह्रिक्ष रिक्ष प्रेम्मा प्राप्त व्याप्त विकास वि

- 구매자 B가 수입하는 여객기는 수출국에서 판매자 S로부터 인도받은 후 구매자의 승무원에 의해. 구매자 비용으로 국내로 운항되어 왔다.
- → 자력운항에 의해 도착한 수입물품의 운임은 해당 선박, 항공기가 수출 항에서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연료비, 승무원의 급식비, 급료, 수 당, 선원 등의 송출비용 및 그 밖의 비용 등 운송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이다.

### 착지불수수료(charge collect fee)

보통 수하인이 운임을 지급하는 FOB 조건의 거래에서 선하증권B/L 하단에 'C.C.F.'라는 명칭으로 표기되는 '착지불수수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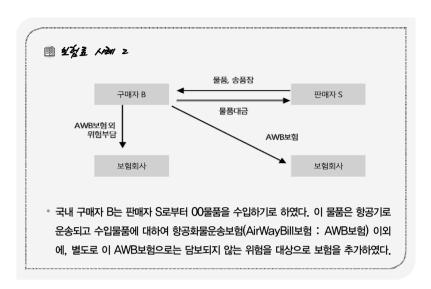
→ '착지불수수료'는 운임 후불에 대해 운송사 또는 물류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로 성격상 '운임'이나 '운송 관련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착지불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가산되지 않는다.

### 5) 보험료

보험료는 수입항까지 운송과 운송관련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것만을 말하며, 실제 수입물품에 부보한 경우에만 가산된다.

#### ■ 发展至 人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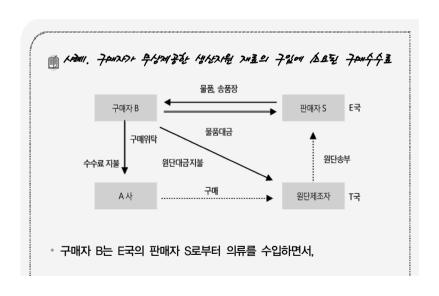
-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하면서 "물품에 손해(도난, 미도착, 파손 등)가 발생하여 대체품을 긴급히 항공편으로 수입할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한도까지 보상한다."는 특약보험에 부보하였다.
- → 특약보험은 '운송 및 운송과 관련되는 활동 중에 수입물품을 위해 발생된 보험료'가 아니라 '대체품의 수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담보한 보험료'이므로 가산되지 않는다.



- → 가산요소인 '보험료'란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 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보험료를 말한다.
- →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실제로 소요된 보험료는 AWB 보험 및 별도의 추가보험료의 합계액이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는 이 2개의 보험료 합계액이 포함된다.



# 가격에 대한 조정 사례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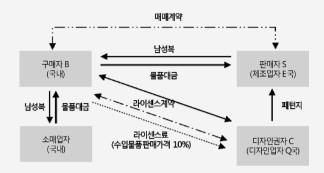


- T국의 원단 제조자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T국에서 직접 E국의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 판매자에게 무상제공을 위해 구매자는 국내의 A사에게 원단 구입업무를 위탁하고 원단가격의 1%를 구매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 → 구매자가 부담하면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 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와 '생산지원비용'은 '가산요소' 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조정된다.
- → 구매수수료는 수입물품을 구매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수입자를 대신하는 용역에 대해 대리인에게 수입자가 지불하는 보수를 말한다.
- → 이 사례에서 구매자 B가 A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판매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지원 물품인 원단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지 수입물품 의 구입을 위한 수수료가 아니므로 협정 제8조의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동 수수료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물품 생산과 관련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생산지원'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따라서 구매자가 지불하는 구매수수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 MARIZ BY WIB

-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금속제 드럼에 담긴 맥주를 1리터당 \$30에 수입한다.
- 또한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수입한 맥주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소매용 빈병과 여기에 부착할 판매자의 상표라벨을 구입하였다.(1리터용 빈병 100병당 \$100, 라벨 100장당 \$5)
- 이번 선적에 드럼에 담긴 맥주 1,000리터와 빈병 1,000병, 라벨 1,000장이 같이 수입되었다.
- 금속제 드럼은 판매자 소유의 것으로 수입 후 되돌려 주었다. 이 때 되돌려 주는 운송비로 \$100이 들었다.
- 구매자의 소요비용 : 맥주 \$30,000, 빈병 \$1,000, 라벨 \$50, 드럼 회송비용 \$100
- → 금속제 드럼에 담긴 맥주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은 1리터당 \$30로서 \$30,000이다.
- → 금속제 드럼은 판매자 소유로 수입 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점으로 보아, 반복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기로서 그 내용물인 맥주와 일체로 취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 여야 한다. 이 사례에서 드럼은 판매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가격도 없으므로 대체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 빈병과 라벨 역시 수입 시 맥주를 수용하고 있는 용기가 아니므로 가 산요소로서가 아니라, 자체의 과세가격을 각각 결정한다.
- → 또한 빈 드럼을 되돌려주는 운송비는 해당 용기(드럼)의 가격도 아 니며 수입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용기의 비용도 아니다. 또한 수입물 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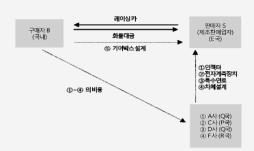
### ■ 사례3. 구매자>+ 무상으로 제공장+ 생산지원 (사례연구 8.1)



- 국내 의류판매업자(구매자)B는 E국의 제조업자(판매자)S로부터 남성복을 구입(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한다.
- 수입되는 남성복은 구매자 B가 제3국의 유명 의류 디자인업자(디자인권자)C를
   통해 판매자 S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여러 규격의 남성복 제조에 필요한 여러 장의 패턴자(디자인이 구현된)를 사용하여 생산된 것이다.
- 구매자 B와 디자인권자C는 다음과 같은 권리사용계약을 맺고 있다.
  - -구매자 B는 국내에서 디자인권자C의 디자인이 구현된 의류를 공급(유통)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 -구매자 B는 디자인권자C의 디자인이 구현되어 있는 패턴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디자인권자C는 구매자 B가 지정한 자에게 패턴지를 제공한다.
  - -구매자 B는 디자인권자C에게 동 패턴지를 사용하여 생산된 의류의 국내 판매가격의 10%를 권리사용료로 지불한다.
- 동 계약에 의해 디자인권자C는 패턴지를 판매자 S에게 제공하고, 구매자 B는 남성복 판매가격의 10%를 디자인권자C에게 지급하였다.
- B. S. C는 모두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동 거래에 거래가격 배제사유는 없다.

- → 패턴지는 금형, 주형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주형 등'의 '생산지원'에 해당한다. 패턴지에 소 요되는 비용이 생산지원의 가격으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된다. 구매 자 B와 디자인권자C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 패턴지의 가격은 C로부터 패턴지를 취득하기 위한 구매자 B의 비용이다. 구매자 B가 디자인권자 C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패턴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생산지원 패턴지의 가격은 구매자 B의 국내판매가격의 10%에 해 당하는 권리사용료이다.
- → 구매자 B가 디자인권자 C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협정 제8조 제1 항 b호(생산지원)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 이므로 제8조 제1항 c호(권리사용료)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만약 이 패턴지에 대한 권리사 용료가 생산지원으로 가산되지 않는다면, 제8조 제1항 c호(권리사용 료)의 가산 여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 (사회4. 생산자원 가격 (사회연구 5.2)



- 구매자 B는 E국의 판매(제조업)자S와 레이싱카 3대를 구입(수입)하기 위한 구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i)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인젝터는 Q국의 A사가 생산한 것을 사용하며, 해당 인젝터는 구매자 B가 A사로부터 1대당 \$10,000에 구매하여 무 료로 S에게 제공한다.
- ii) 수입물품의 엔진테스트는 P국의 C사가 생산한 전자계측장비를 사용하고 S의 공장에서 수행하며, 테스트에 불합격한 엔진은 폐기된다. 전자계측장비는 구매자가 C사로부터 \$60,000에 임차하여 무료로 S에게제공한다.
- iii) 수입물품이 제조사양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주행테스트는 Q국 의 D사가 생산한 특수연료 5,000리터를 사용하여 판매자 S가 수행한 다. 이 특수연료는 구매자가 D사로부터 1리터당 \$10에 취득하여 판매 자 S에게 리터당 \$4에 제공한다.
- iv) 판매자 S는 수입물품의 차체를 R국의 F가 작성한 설계에 따라 생산한다. 해당 설계는 구매자가 F사로부터 \$120,000에 구입하여 무료로 S에게 제공한다.
- v) 판매자 S는 수입물품의 부품인 기어박스를 구매자 B가 무료로 제공한 설계에 따라 제조한다. 해당 설계는 구매자의 기술지원부서가 \$80,000의 비용으로 국내에서 작성한 것이다.
- 구매자 B와 판매자 S, A, C, D, F사는 모두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 구매자 B와 판매자 S의 수입물품 거래는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1방법에 따라 평가된다.

- → 생산지원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되는 물품 및 용역으로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도에서 가산된다.
  - i) 인젝터는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부분품(제8조 제1항 b호 i 목)으로 취득가격 \$10,000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된다.
  - ii) 전자계측장비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제8조 제1항 b호 ii목)로 임차비용 \$60,000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된다.
  - iii) 특수연료는 수입물품 생산에 소비되는 물품(제8조 제1항 b호 iii
     목)으로 취득 비용인 \$50,000에서 판매가격 \$20,000을 뺀 할인
     된 금액 \$30,000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된다.
  - iv) 차제설계는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용역(제8조 제1항 b호 iv 목)으로 수입국 외에서 개발된 것으로 구입가격인 \$120,000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된다.
  - v) 기어박스 설계는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용역이지만 수입국에 서 개발된 것이므로 가산되지 않는다.

#### ■ NAIS. दार्डिंश स्थारमिंडे का अभावां 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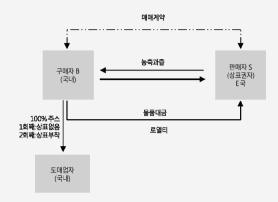
- i) 국내의 B사는 X국의 신발 제조업체 M의 특허품인 축구회를 수출자 S로부터 켤레당 \$100의 가격으로 1,000켤레를 수입하였다.
- ii) 국내의 B사는 X국의 신발 제조업체 M의 특허품인 축구화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대신 국내판매액의 5%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출자 S로부터 켤레당 \$90의 가격으로 1,000켤레를 수입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켤레당 \$100에 전량 판매하고, 판매액의 5%인 \$5,000을 권리사용료로 지급하였다.
- iii) 국내의 B사는 X국의 신발 제조업체 M의 특허품인 축구화를 국내에서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대신 국내판매액의 5%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견본으로 사용할 축구화 1켤레를 \$100에 수입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1,000켤레를 생산, 켤레당 \$100로 판매하고 판매액의 5%인 \$5,000을 권리사용료로 지급하였다.
- iv) 국내의 B사는 X국의 상표권자 M으로부터 자신이 생산하는 축구화에 M의 상표를 부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상표부착 축구화 1,000켤레를 생산, 켤레당 \$100에 판매하고 판매액의 5%인 \$5,000을 권리사용료로 지급하였다.
- i)의 경우 M의 수출가격 \$100에 권리사용료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인 \$100,000이다.
- ii)의 경우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전매하는 권리'의 대가로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가산되어야 한다.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 \$90,000에 권리사용료 \$5,000을 더한 \$95,000이다.

- iii)의 경우 권리사용료는 재현생산권의 대가로 가산되지 않는다. 수 입 물품인 축구화 1켤레의 과세가격은 \$100이다.
- iv)의 경우 권리사용료는 '국내에서 생산된 축구화'의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수입물품이 없다.

### ■ 人種は、それ外景至の人を手が今のら

- 구매자 B는 아동복을 일부는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하고, 일부는 외국의 판매자 S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다.
- B가 판매하는 아동복에는 수입된 것인지, 국내에서 구매한 것인지 구별하지 않고 S가 권리를 보유한 상표를 부착한다.
- B는 상표사용에 대해 S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한다. 또한 B는 S로부터 수입한 아동복의 국내판매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를 역시 S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상표권사용료와 수입 아동복 판매 후 지급금은 전체를 합하여 B의연간 총판매액의 2%로 하기로 하였다.
- B의 수입 거래에 대한 검토결과 상표권 사용료의 지급은 판매조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 → B의 상표권사용료 지급은 판매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할 수 없으나 사후귀속이익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그러나이 사례에서 사후귀속이익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 [] 사례기, 권감사용료 (권교의정 4.6)



- 구매자 B는 음료제조 · 판매업자로, 특수관계가 없는 E국의 판매자(상표권 자)S와 농축과즙 구입(수입)에 관해 라이선스 조항을 포함한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농축과즙을 2회에 나누어 구입(수입)하였다.
- 수입물품인 농축과즙은 국내에서 물에 단순 희석하여 소매포장된 후 판매하는데, 계약에 따라 구매자 B는 S의 상표를 소매포장한 주스에 부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S의 상표를 부착한 주스의 판매수량에 따라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한다.
- 1회 수입된 농축과즙은 희석 후 S의 상표를 부착하지 않고 국내판매되어 상표권사용료가 지불되지 않았다.
- 2회 수입된 농축과즙은 희석 후 S의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판매되어 판매 계약 조건에 따라 판매자 S에게 상표권사용료를 지불하여야만 했다.
- → 첫 번째 수입된 물품은 상표를 붙이지 않고 전매되어 사용료가 지불되지 않아 가산하지 않는다.

→ 상표권 사용료는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주스에 관한 것이다. 이 주스는 수입물품인 농축과즙을 단순 희석한 것으로 원래 본질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수입 농축과즙의 판매조건으로 지불된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수입된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 🗐 사례8. 운송비 및 관련비용 : 노후선박 활공보험료

- 구매자 B는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자 S로부터 CFR(운임포함인 도)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한다.
- 구매자 B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수입물품의 보험료를 별도로로 부담하고 있다.
- 이번에 판매자가 선박을 용선한 선박이 낡아 노후선박 할증보험료를 부담 하였다.
- → 본래 구매자가 부담하는 노후선박 할증보험료는 제8조 제2항 c호의 수입물품의 운송에 관련된 보험료로 가산요소에 해당한다.
- → 위 사례에서는 CFR조건에 따라 판매자가 용선한 노후선박으로 운송하는 데 따른 할증보험료는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물품의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가격에 다시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 → 그러나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대해 부담한 보험료는 가산되어야 한다.



# 대체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I.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방법(제2·3방법)

### 1. 동종·동질 및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or Similar goods)

# 1) 개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가격이 없거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 대체방법(Alternate Methods)의 순차적 적용

\* 제2방법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방법(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goods Method)

\* 제3방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방법(Transaction Value of Similar

goods Method)

\* 제4방법 : 국내판매가격(공제가격)방법(Deductive Value Method)

\* 제5방법 : 산정가격방법(Computed Method)
\* 제6방법 : 합리적 방법(Fallback Method)

 ※ ···과세가격은 동일한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고, 평가대상물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된 동종 · 동질(Identical)/유사(Similar) 물품의 거래가격이다.
 ⑤ (협정 제2, 3조 제1항 a호)

제2, 3방법은 동일한 수입국으로 수출 판매되고,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해 이전에 세관에 의해수용되어진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법 제31조, 제32조)

제2, 3방법을 규정하는 협정 제2조, 제3조는 '동종·동질(Identical)' 과 '유사(Similar)'라는 한단어만 바꾸면 완전히 동일하다. 먼저 동종·동 질물품과 유사물품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2) 동종 · 동질물품과 유시물품

 "동종·동질물품'은 물리적 특성, 품질 및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한다. ···외양상 경미한 차이가 있더라도··· 동종·동질물품에서 제외 되지 않는다.
 ⑤ (협정 제15조 제2항 a호)

(시행령 제25조)

"유사물품'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상업적으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할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진 물품을 말한다. 물품의 품질, 평판 및 상표의 존재는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요소들이다. <sup>59</sup> (현정 제15조 제2항 b호)

(시행령 제26조)

동종 · 동질물품, 유시물품은

- 생산국이 같아야 한다. 그러나 수출국은 문제되지 않는다.
- 또한 동일인이 생산한 동종·동질, 유사물품이 없는 경우에만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물품이 고려된다.
- 수입국에서 수행되어 '생산지원'으로 가산 조정되지 않은 기술, 개발, 공예, 도안, 설계 등이 결합·반영된 물품은 제외된다.

#### ▶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판단 시례(예해 1.1)

#### i) 다른 용도로 수입되었으나 화학적 구성. 끝마무리 및 크기가 동일한 철판

→ 수입자가 어떤 철판은 자동차 차체용으로 어떤 철판은 용광로 입힘 쇠용으로 수입하였더라도 동종·동질물품이다.

#### ii) 실내장식가와 도매상이 각각 수입한 벽지

- → 모든 점에서 동일한 벽지는 동종·동질물품이다. 수입자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 가격의 차이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고려요소가 되는 품질이나 평판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지만 가격자체가 고려요소는 아니다.

# iii) 유시한 모양, 크기, 색깔의 꽃을 피우는 튤립 뿌리로 동일한 크기를 갖지만 다른 품종인 경우

→ 해당 뿌리는 동일한 품종이 아니므로 동종·동질물품이 아니다. 그러나 거의 동일한 크기, 형태, 색깔의 꽃을 피우고 상업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하므로 유시물품이다.

#### iv) 종이용 잉크와 종이 및 직물 겸용 잉크

→ 유사물품은 무엇보다 상업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종이/ 직물 겸용 잉크가 종이 인쇄업에서 상업적으로 수용된다 할지라도 종이용 잉크는 겸용 잉크와 대체 사용될 수 없으므로 동종·동질물 품도 유사물품도 아니다.

어떤 물품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시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비교대상물품의 특성과 시장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 시안별로 검토되어야 한다.

### 3) 동종 · 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적용 요건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i) 동일한 수입국(the same country of importation)으로 수출 판매되어야 하며,

- ii)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at or about the same time) 수출되어야 iii) 이미 제1방법에 의해 수용된 과세가격이어야 하다
- <sup>●</sup> ···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sup>●</sup>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선적일"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로 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으로 확인한다. (시행령 제25조 2항)
- ※ ・・・・ 과세가격은 동일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고, 평가대상물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된 동종・동질 /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이다 <sup>59</sup>
   (협정 제2, 3조 제1항 a호)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란 선적일이 같거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을 뜻하며, '수출된' 시간이므로 '판매된' 시간도 '수입신고일'도 아니다.(해설 1.1) 우리나라는 '선적일'로 규정하고 있고, 선적일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항일'로 하고 있다. 또한, '거의 동시에'의 기간을 선적일 전후 60일(合 12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제3항)

또한 세관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심사 중이거나 가격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권고의견 7.1) 그리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 격도 제외된다. (법 제31, 32조 제2항)

#### 4) 상업적 단계 등의 조정

…평가대상물품과 동일한 거래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으로 판매되는 동종·동질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 결정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매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 다른 거래 단계 및/또는 다른 수량에 기인하는 차이를 감안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제2, 3방법에서는 가능한 평가 대상물품과 동일한 상업적 단계와 실 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으로 판매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가 없을 경우, 다른 상업적 단계 및 다른 수량에 따른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여 조정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상업적 단계 또는 수량의 차이가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가격이 그러한 차이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있다.

# ▶ 상업적 단계, 수량의 차이에 대한 조정 사례 (예해 10.1)

(모두 제1방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 i) 동일한 상업적 단계, 상이한 수량이지만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

구분	판매자	수량	단가	수입자	상업 단계
평가대상물품	Е	2,000	\$ 5	I	도매
동종 · 동질물품	R	1,700	\$ 6	F	도매

• 판매자 R은 판매물품의 1,000개 이상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자에게 \$6의 가격으로 판매하지만 그 수량 외에는 판매가격을 변경하지 않는다.

→ 수량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제2방법에 의해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인 \$6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된다.

### ii) 서로 다른 상업적 단계, 동일한 수량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구분	판매자	수량	단가	수입자	상업 단계
평가대상물품	D	2,800	\$ 1.5	K	도매
유사물품	Е	2,800 (할인율 15%)	\$ 2.5	М	소매

- 판매자 D가 도매업자 K에게 \$1.5의 가격에 판매한 2,800개가 수입된다.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동종·동질물품도 없다.
- 판매자 E에 의해 소매업자 M에게 판매한 유사물품 2,800개가 수입되었다. 이때 가격은 \$2,5에서 15% 할인율이 적용되었다.
- 판매자 E는 모든 소매업자에게는 15%를, 도매업자에게는 2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 → 판매자가 상업적 단계에 따라 가격을 달리 하므로, 유사물품의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수입물품은 도매로 판매되었으므로 \$2.5에 20%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을 기초로 제3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이 결정된다.

또한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의 차이에 따라 가산요소인 운송 관련비용의 차이가 고려되어 조정되어야 한다.

- \*\* ··· 운송거리 및 운송형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물품과 동종 · 동질 / 유사물품 간의 비용 및 요금의 중요한 차이를 감안할 수 있도록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 (협정 제2.3조 제2함)
- ☆ … 조정은 가격이 증가 또는 감소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확하게 확립할 수 있는 입증된 증거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협정 제2,3조 제1항 b호)

예를 들어, 평가대상 수입물품이 10개씩 선적되어 수입되었는데 유일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500개에 대한 가격이라면 이에 대한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 판매자가 수량할인을 제공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판매수량에 따른 가격표가 있어야만 조정할 수 있다. 만약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제2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

제2,3방법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 /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 평가대상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그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평가대상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 유사 물품이 다른 생산자의 물품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법 제31, 32조제3항, 시행령 제25조제5항)

# 

- 구매자 B는 판매자 S가 제조한 의류를 수입하고 있다. 송품장가격은 \$100 이지만, 별도로 S사에게 상표권 사용료로 물품가격의 10%인 \$10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110로 결정되고 있다.
- 이번에 견본용으로 S로부터 의류 5점이 무상으로 송부되어 왔다. 무상이므로 당연히 로열티도 없다. 이 견본용 의류와 기존 수입되는 의류는 동종 · 동질물품이다.
- → 견본용 의류와 동종·동질물품인 기존 수입되는 의류의 거래(과세) 가격 \$110에 기초하여 제2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2 방법에 의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란 제1방법에 의해 과거이미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가격이다. 즉 실제지급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을 말한다.



# 대체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Ⅱ. 국내판매가격 또는 공제가격방법(제4방법)

# 1. 국내판매 또는 공제가격방법(Deductive Value Method)

# 1) 개요

이름에서와 같이 국내판매가격방법은 수입국내 판매가격에서 수입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즉, 국내판매와 관련된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운임·보험료 관련비용, 수입국의 관세 및 조세 등을 공제하여 수입시점의 과세가격을 역산하는 것이다.(법 제33조)

> 국내판매가격 — (국내판매와 관련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입국 운송 관련비용 + 수입국 관세 및 조세)

…과세가격은 평가대상물품의 수입시기와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해당 수입물품 또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수입물품이 그러한 물품의 수입자와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 가격을 기초로한다.
 ◎ (협정 제5조 제1항 a호)

국내판매가격방법은 먼저 공제의 기준이 되는 국내판매가격의 결정이 중요하다. 적절한 국내판매가격은 어떤 물품이, 누구에게, 언제, 얼마만큼 판매된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 2) 재판매되는 물품

● 해당 수입물품 또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한 수입물품이 수입국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in the condition as imported) 판매된다면, ··· ●

(협정 제5조 제1항 a호 전단)

재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 세 가 지가 모두 가능하다.

해당 수입자의 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판매가 있는 경우 실무적으로 다른 수입자에 의한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판매보다 우선 적용될 것이다.

또한,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가 가능한 한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동종·동질, 유사 물품의 판매가 순차적으로 고려된다.

물품은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되어야 한다.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가 없고 추가가공을 거친 후 판매되는 경우는 '초공제방법'이라 하 여 협정 제5조 2항이 적용된다.

해외수출포장을 제거하거나 국내시장판매를 위해 단순히 재포장하는 것은 추가가공으로 보지 않는다. 또 증발, 수축, 정상적 풍화 같은 자연적 변화는 허용될 수 있다.

#### 3) 재판매된 구매자

\*\*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 단위가격은 수입 후 최초의 거래 단계(at the first commercial level after importation)에서 그 물품의 수입자(whom they buy such goods)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단위가 판매된 가격을 말한다. \*\*\* (협정 제5조에 대한 주해 1항)

구매자는 먼저 수입 후 최초의 상업적(거래) 단계에 있어야 한다. 최초의 거래 하나가 아니라 최초의 상업적 단계이므로 여러 개의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예로, 수입자가 1,000개의 물품을 수입하여 4월1일에 도매업자 A에게 400개, 4월2일에 도매업자 B에게 300개, 4월3일 도매업자 C에게 300개를 국내판매하였고, A, B, C는 각각 소매업자 X, Y, Z에게 재판매한 경우, 최초의 상업적 단계는 A, B, C에게 판매한 거래를 말하는 것이다.

'수입 후(after importation)'에서 '후(after)'는 시점보다는 단계(level) 에 관한 것이다. 재판매 거래가 수입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수입자가 수입 후 국내구매자에게 인도한다면 이용가능하다.

다음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되어야 한다.

거래가격 배제사유에서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관계이지만 여기서는 수입자와 국내구매자와의 관계를 뜻한다. 또 거래가격 배제사유는 특수 관계 자체만으로 성립되지 않지만, 여기서는 특수관계의 존재 자체만으 로 해당 판매는 배제된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 (생산지원) 요소를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에 사용하기 위해 ... 공급하는 자에 대한 수입국내 판매는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

(협정 제5조에 대한 주해 5항)

또한 수입물품의 생산·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협정 제8조 제1항 (b)호에 규정된 생산지원 요소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판매는 제외되어야 한다.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도 관계없이 무조건 배제된다.

### 4) 재판매된 시점

…과세가격은 평가대상물품의 수입시기와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at or about the time of the importation) …
 (협정 제5조 제1항 a호)

국내판매가격은 평가대상물품의 수입시기와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가격이다. 우리 관세법은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 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의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한다.(제2,3방법에서와 같다)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 판매된 것이 없다면, …평가대상물품의 수입후 가장
 빠른 날에 그러나 최대한 90일 이내에 … 수입국에서 판매된 … 물품의 단위가격
 을 기초로 한다.
 (협정 제5조 제1항 b호)

단,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입된 상태대로 판매된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 후 90일 이내에 가장 빠른 날<sup>\*</sup>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협정의 이 규정은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판매가 없다면, 수입 후 90일 이내 가장 빠른 날의 판매를 기초로 한다는 것이지, '거의 동시에'의 범위가 90일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우리 법령은 협정과 조금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sup>★ &#</sup>x27;가장 빠른 날(earliest date)'이란 그날까지 '단위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입물품 또는 동종 · 동질, 유사물품이 충분한 물량(sufficient quantity)으로 판매된 날을 뜻한다.(제5조에 대한 주해 10항)

#### ■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국내판매가격" (시행령 제27조제3항)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 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 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 5) 기장 많은 수량의 판매(Greatest Aggregate Quantity)

국내판매가격은 가장 많은 수량 즉, '최대의 총량으로' 판매되는 단위 가격을 말한다.

### ▶ 가장 많은 수량의 판매 사례 (부속서 ㅣ, 제5조에 대한 주해)

#### • 시례 1. 다음과 같은 가격표에 따라 판매된 시례이다.

판매수량	단위가격
1~107∦	100\$
11~25개	95\$
25개 이상	90\$

판매회수	판매수량	가격별 총 판매량
5개 10회 3개 5회	50 15	65
11개 5회	55	55
30개 1회 50개 1회	30 50	80

→ 가장 많은 수량의 판매는 80개로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은 \$90이다.

#### • 사례 2, 여러 수량과 가격으로 판매된 경우이다.

판매수량(개)	40	30	15	50	25	35	5
단위가격(\$)	100	90	100	95	105	90	100

판매수량(개)	65	50	60	25
단위가격(\$)	90	95	100	105

→ 취합하면 '가장 많은 수량의 판매'는 65개로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은 \$90이다.

### 2. 공제금액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세 가지 이다.

- i) 통상적인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 ii) 수입국내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운임, 보험료 및 관련 비용
- iii) 수입국에서 지급하여야 할 관세 및 기타 내국세

#### 1) 통상적인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i)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의 수입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금액 <sup>50</sup> (협정 제5조 제1항 ਕ호)
 (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는 한 가지만 공제되어야 한다.

물품이 대리·위탁에 따라 즉, 수수료를 받는 대리인·중개인 등이 판매한 경우 수수료만 공제되며, 수입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구매하 여 재판매하는 경우 이유 및 일반경비가 공제된다.

여기서 공제되는 수수료는 가산요소의 수수료와 다르며, 수입통관 시 관세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도 아니다.

이윤 및 일반경비는 어떤 물품을 판매할 때 생산원가 또는 매출원가 부가하는 판매비와 관리비, 이윤을 말하며, 일반경비는 판매(marketing) 와 관련한 직접비와 간접비를 모두 포함한다.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의 국내판매와 관련한 통상적인 금액이어야 한다.

'동종·동류(of the same class or kind)의 물품'이란 어느 특정사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는 품목군이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하며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을 포함한다.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포함한다. 도자기류의 접시·그릇과 주전자·찻잔은 동종·동질, 유사물품은 아니지만 동종·동류의 물품에 해당한다.

이윤 및 일반경비에서 이윤과 일반경비는 별도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취급되어야 하며, 수입자가 제출하거나 수입자를 대신하여 제출된 정보를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단, 수입자의 금액이 통상적으로 가산되는 금액과 다를 경우, 수입자의 금액이 아닌 통상적인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 …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 이 공제를 위한 수치는 수입자가 제출한 수치가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물품을 수입국 내에서 판매할 때 얻어진 수치와 불일치하지 않는 한 수입자가 제공하거나 수입자를 대신하여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수입자가 제출한 수치가 이러한 수치와 불일치하는 경우, 이윤 및 일반경비는 수입자 또는 수입자를 대신하여 제출된 정보 이외의 관련 정보가 근거가 될 수 있다. <sup>59</sup>

(협정 제5조에 대한 주해 6항)

우리나라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통상의 금액'을 '동종·동류비율'이라 하여 세관장이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제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금액은 수입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토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

### ■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방법 (시행령 제27조)

- 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 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 서 "동종·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 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 ⑥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 · 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 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 · 동류비율 을 산출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비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7조제8항)

- 2) 수입후 통상의 운임, 보험료 및 관련 비용(법 제33조 제1항 제3호)
- <sup>™</sup> ii) 수입국내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운임, 보험료 및 관련 비용 <sup>™</sup>

수입 이후 수입국에서 발생된 운송, 보험료와 관련 비용으로, 수입지에서 인도지까지 통상적인 운임, 처리비용, 인도비용을 포함한다.

- 3) 수입국의 관세 및 기타 내국세 (법 제33조 제1항 제4호)
- <sup>™</sup> iii) 수입국에서 지급하여야 할 관세 및 기타 내국세 <sup>™</sup>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수입국 내에서 지급하여 야 할 관세, 기타 내국세와 그 밖의 공과금이 공제된다.

물품판매에 따른 지방세가 '관세 및 기타 내국세'로 공제되지 않은 경우 '이윤 및 일반경비'에 포함되어 공제되어야 하며,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 도 공제되어야 한다.(제5조 주해 8항, 권고의견 9.1)

#### 🗐 हेअरेभ्ने युद्ध अबी (WCO Valuation TM Lesson 17)

- 3월15일에 10,000개의 자동차 휠베어링이 수입되었다.
- 이 물품은 위탁판매되어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 세관은 평가대상물품의 선적일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선적된 동종 · 동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었다.
- 수입자는 공제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동종 · 동질물품의 판매정보 를 제공했다.

Sale	Date	Quantity	Price(\$)	Buyer
1	3.6	2,500	100	비 <del>특수</del> 관계자
2	3.8	1,000	110	//
3	3.10	1,000	110	//
4	3.12	1,200	120	//
5	3.18	1,200	91	수입자의 자회사
6	3,22	1,500	110	비특수관계자
7	3.30	1,000	100	//

- 이들 물품은 원래 수입국으로의 항공운임, 보험료를 포함해 수입자에게 인도되었다.
- 수입시점 또는 거의 동시는 수입전후 10일로 확인되었다.
- 수입자는 판매가격에서 10%의 수수료, 국내운송비, 베어링 검사비 \$10/ 개당, 15%의 관세율을 공제하고 수출자(생산자)에게 잔액을 송금한다.
- 통상의 수수료는 10%, 실제 관세율은 20%, 국내운송비는 \$5로 확인되었다.
- → 국내판매가격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가장 많 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특수관계자에 대한 5번 판매와 '수입시점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요건을 벗어나는 7번 판매는 제외되어야 한다.

Unit Price	Date	Quantities	Aggregate Quantities
100\$	3.6	2,500	2,500
	3.8	1,000	
110\$	3.10	1,000	3,500
	3,22	1,300	
120\$	3,12	1,200	1,200

- →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은 \$110이다.
  - 국내판매 단위가격 \$110에서
  - 통상의 수수료 10% \$11
  - 국내운송비 \$5 (=\$94)
  - 관세 20% \$15.67 (=\$94 \$94/1.2)
  - = 공제가격 \$78.33
- → 수입자의 수수료는 통상의 수수료와 일치한다.
- → 수수료가 공제되었기에 검사비 \$10은 일반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 3. 초공제방법(Super Deductive Method)

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시물품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된 경우가 없는 경우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물품이 수입 후 추가가공을 거친 후 재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할 수 있다. 이를 '초공제방법'이라 한다.

i)수입물품, 동종·동질, 유사 수입물품 어느 것도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된 경우가 없고, ii)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은 iii)해당 수입물품이 추가 가공된 후… (iv)수입시기와 동시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삭제) …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한다… <sup>99</sup> (협정 제5조 제2항) (법 제33조 제3항)

#### ▶ 초공제방법의 특징은

- 첫째, 평가대상물품, 동종 · 동질, 유사물품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만,
- 둘째, 수입자가 요청한 경우(개도국은 제외)에만,
- 셋째, 오직 평가대상물품의 추가가공 후 재판매가격만 사용되며,
- 넷째, 시간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 \*\* 추가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에 대한 공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기 초하여야 한다. \*\*\* (협정 제5조에 대한 주해 11항)

일반적으로 추가 가공으로 수입물품의 동질성을 상실한 때에는 적용될 수 없지만, 이는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제5조에 대한 주해 12항) 다음의 두 사례를 통해 보자.

#### ▶ 추가가공으로 인한 수입물품의 동질성 판단 시례

#### 圖 主圣刈皆性 小油 /

- 중간 화학물이 수입되어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 공정에 의해 가공되어 최종제품이 된다.
- 완제품은 그램당 \$30에 판매되었다. 이 가격은
  - -그램당 \$9의 가공비용과
  - -판매가격의 20%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이윤율과
  - 내륙운송비, 보관료 및 일반경비 \$4이 포함되어 있고
  -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10%이다.
- → 초공제방법 적용이 가능하며,
  - · 완제품 국내판매가격 \$30
    - 추가가공 비용 \$9
    - 통상적인 이윤 \$6 (\$30 × 20%)
    - 운송 및 일반경비 \$4 (=\$11)
    - 관세 \$1 (\$11/1.1)
    - = \$10

#### · 조용제방법 사례 2

- 자동차 제조업자가 자신의 자동차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카오디오를 수입하였다. 수입 후 유리판 및 색깔버튼을 장착하여 자동차에 카오디오를 달았다.
   그리고 이 자동차는 국내판매되었다.
- 수입된 카 오디오에 초공제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 → 수입물품은 완제품 자동차의 극히 일부만 구성하므로 초공제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



# 대체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Ⅲ. 산정가격방법(제5방법)

# 1. 산정가격방법(Computed Value Method)

1) 개요

#### ■ 대체방법(Alternate Methods)의 순차적 적용

\* 제2방법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방법(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goods Method)

\* 제3방법 : 유시물품의 거래가격방법(Transaction Value of Similar

goods Method)

\* 제4방법 : 국내판매가격(공제가격)방법(Deductive Value Method)

\* 제5방법 : 산정가격방법(Computed Method)

\* 제6방법 : 합리적 방법(Fallback Method)

산정가격방법(제5방법)은 제1~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5번째로 적용되는 방법이다. 단,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제4방법에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국내판매가격방법이 수입국내 판매가격으로부터 역으로 수입시점의 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이라면, 산정가격방법은 반대로 생산비용에 기초하여 수입시점의 가격에 이르기까지 여러 비용을 더하는 방법이다.

## 생산비용 + 수출국내 생산자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입항까지 운송 관련비용

- - a) 재료, 조립, 기타 가공 비용 또는 가치(생산비용)
  - b) 수출국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 c) 수입항까지 운송 관련비용 🦈

(협정 제6조 제1항)

- 2) 재료, 조립, 기타가공 비용 또는 가치(생산 비용)
- (cost or value)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생산비용은 생산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와 상관없고, 통상의 것이 아닌 실제 수치에 기초해야 한다.

#### 재료, 조립 · 기타가공 비용 또는 가치의 예시

-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 원자재, 구성요소 또는 부품 등
  - 원산지에서 제조자까지 원자재 운송비
- 조립ㆍ기타가공 비용 또는 가치
  - 모든 인건비
  - 생산 공정과 관련된 모든 조립비용
  - 생산 공정과 관련된 기계비용
  - 공장 감독·유지비용, 초과근무수당 등 간접비용
- 포함되지 않는 비용
  - 웨이스트나 스크랩으로 회수 가능한 비용
  - 수출시 휘급되는 생산국의 내국세

'비용 또는 가치'에는 앞서 가산요소에서 살펴본 '용기 및 포장 비용', '생산지원 비용'이 포함된다.(제6조에 대한 주해 3항)

- 관세목적상 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비용
- 노무지, 재료비 여부와 관계없이 포장 비용
- 생산지원 비용

생산지원은 적절히 배분된 금액이어야 하며, 특히 수입국에서 수행된 기술, 개발 등 용역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만 포함된다.

이들 비용들이 이중 계산되어서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 예를 들어, 수입자가 가구를 수입하기 위해 수출(생산)자에게 수입물품인 가구제 작에 '사용될 원목'과 '수입국에서 작성된 가구 도면' 제공했다면,
- → '원목'은 수입물품의 재료로 원목의 비용, 가격(운송비 포함)은 산정 가격에 포함되고,
- → '도면'은 수입국에서 제작되었으므로 생산자에게 청구된 비용만 산 정가격에 포함된다.
- 3) 수출국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평가대상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을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협정 제6조 제1항(b))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산정가격에 포함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서 몇 가지 유의할 점은

i)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물품이어야 한다. 수출국내 판매나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한 물품이 아니다.

- ii) '수출국'내의 일반적인 '생산자'들이 제조한 물품이다. 제조(생산)국이 아니다.
- iii) 평가대상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판매에서 반영된 금액이다. 평가대상물품에 반영된 것만이 아니다. 제4방법에서와 달리제5방법에서 '동종·동류의 물품'은 평가대상물품과 동일한 국가에서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 iv) '통상적으로' 반영된 금액이다. 실제 발생한 수치가 아니다.
- '이윤 및 일반경비의 금액 은 … 생산자가 제출하거나 생산자를 대신하여 제출된 정보를 근거로 결정하여야 한다. <sup>50</sup>(협정 제6조에 대한 주해 4항)

'이윤 및 일반경비'는 제4방법에서와 같이 전체로서 취급되어야 하고, 생산자가 제출하거나 생산자를 대신하여 제출된 정보를 근거로 결정되어야 한다.

단, 생산자의 수치가 수출국내 생산자의 동종·동류의 물품의 판매에서 통상적으로 반영된 수치와 불일치하는 경우, 다른 출처의 정보에 기초할 수 있다.

# 4) 수입항까지 운임, 보험료 및 운송 관련비용

수입물품의 수입항까지 운송,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은 제1방법에서 가산요소와 마찬가지로 산정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법 제34조 제1항 제3호)

#### 5) 제5방법 적용의 한계

수입국 당국은 산정가격을 위해 타국의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 자칫하면 노골적인 산업스파이(blatant espionage)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산정가격방법은 생산자가 동의하고, 당사국 정부에 충분한 사전 통보가 제공되고, 당사국 정부가 조사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산정가격방법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을 때로 제한될 것이다.

#### **(क्रिप्र) निवासिक नेप्रता किल्लिक क्रिप्रेय (क्रिप्र) क्रिप्र**

- 판매자 S가 수입국의 I(S의 자회사임)에게 위탁판매형태로 피아노를 대당 \$325에 판매하였다.
- 또한 I는 S에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이 피이노를 만들기 위한 Tool을 제공하였음 이 확인되었으나 S의 가격설명 자료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 -이 Tool의 시장가격은 \$1,000,000이며 100,000대의 피아노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어떤 동종 · 동질 또는 유사물품(피아노)도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되지 않았으며, 또한 이 피아노가 수입국에서 판매되지도 않았다.

• 따라서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산정가격방법을 적용키로 하였으며, 판매자 S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격설명 자료가 제출되었다.

자재비 \$100 조립비용 \$50 피아노 포장비용 \$50

- 이윤 및 일반경비 \$ 38

• 또한 수출국의 다른 악기생산자(동종 · 동류의 물품 생산자)의 이윤 및 일반 경비는 다음과 같다고 알려졌다.

- T : 자재비의 38% - U : 자재비의 38% - V : 자재비의 20%

-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며,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도 없고, 수입국내에서 판매도 없으므로 산정가격방법에 의해 평가된다.
  - 자재비 \$100
  - 조립비 \$ 50
  - 이윤 및 일반경비 \$ 38(이윤 및 일반경비는 통상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포장비 \$ 50
  - 생산지원 \$ 10(생산지원 금액을 생산비용에 포함해야 한다.)
    - → 산정가격은 \$248이다.



# 대체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Ⅳ. 합리적 방법(제6방법)

# 1. 합리적 방법(Fall-back Method)

#### 1) 개요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원칙은 '거래가격방법'이며, 거래가격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제2~5방법까지의 대체방법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 방법들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수입 물품이 판매되지 않았거나(임대차방식의 수입), 동종·동질·유사물품 의 수입이 없거나, 물품이 수입국에서 판매되지 않거나, 생산비용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하는 경우들이다. 이런 경우, 마지막으로 '합리적 방법'이 사용된다. 영어로는 Fall-Back Method라 하여 IT분야의 비상조치를 의미하는 용어를 쓰는데, '최후의 마지막' 방법이란 뜻이다.(법 제35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결정될 수 없을 경우, 과세가격은
 본 협정 및 1994년도 GATT 제7조의 원칙과 일반규정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입국내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결정된다.

(현정 제7조 제1항)

제6방법은 엄밀히 말해 특정 평가방법이 아니라 합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원칙과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다.

#### 그 원칙들은

- 첫째, 합리적인 방법(Reasonable Means)을 사용해야 하며,
- **둘째, WTO관세평가협정과 GATT 제7조의 원칙과 일반규정에 부합** 해야하며,
- 셋째, 수입국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사용하되, '자의적·가공적 가격' 등 금지된 가격의 사용을 배제하는 한도 에서 세관당국과 수입자 간 협의를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2) 합리적인 방법(Reasonable Means)

- <sup>●</sup> 1. …최대한 이전에 결정된 과세가격에 근거해야 한다.
  - 2. ···평가방법은 제1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신축성은 제7조의 목적과 규정에 합치된다. <sup>59</sup> (협정 제7조에 대한 주해)

합리적인 방법, 기준이란 '이전에 결정된 과세가격을 최대한 활용하고', '제1방법부터 제5방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다.

이때,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적용순 서는 지켜야 한다.

또한 제1~5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도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법을 제외한 기타의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29조 제1항)

# 신축적 적용의 예

제1방법~제5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말한다.

i) 동종·동질, 유시물품의 거래가격, 즉 제2, 3방법의 생산국과 시간요소 의 동일성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제6방법에서는 평가대상물품과 생산국이 다른 동종·동질·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근거로 할 수 있고,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선적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할 수 있다.

ii) 제4방법 또는 제5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시실이 있는 동종· 동질, 유사물품의 역산가격 또는 산정가격을 기초로 할 수 있다.

제2, 3방법에서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데, 제6방법에서는 이들 물품들의 공제가격이나 산정 가격을 기초로 할 수 있다.

iii) 제4방법, 공제가격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물론,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가공 후 판매가격을 사용하는 '초 공제방법'이 가능하지만, 제6방법에서는 수입자의 요청이 없어도 가 능하다.

iv) 제4방법, 공제가격에서 수입 후 '90일 이내'에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 はんその ひき そぞをうきまの ンタき ファマま む かめいはすな トタ

- 수출국 J의 판매자 S가 수입국의 구매자 B에게 철제 요리기구를 수출하였다.
- 수입물품은 제3국(C)의 제조자 M이 생산하여 J국에 먼저 수출하고 J국의 판매자 S는 이를 재포장하여 B에게 재수출한 것이다.
- S는 B에게 박스당 \$36에 수출하였으나 이 가격은 6개월 이내에 B가 S로부터 다른 형태의 요리기구 500박스를 구입한다는 조건(1방법 적용 검토)으로 결정된 것이다.
- C국산 철제 요리기구는 처음 수입된 것으로 동종 · 동질, 유사물품도 수입된 적이 없다.(2,3방법 적용 검토)
- B는 수입국에서 소매점과 판매망을 가진 자신의 자회사에게 이 수입물품을 박스당 \$51.5에 수입된지 5일 후에 재판매(4방법 적용 검토)하였다.
  - -판매가격 내역: 해상운임 및 보험료 \$4, 일반경비 \$2, 이윤 \$1, 수입 후 운송비 \$0.5, 관세 \$1.5 (박스당)
- B는 M과 거래하지 않으므로 M의 생산비자료는 사용불가능(5방법 적용 검토)하다.
- B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S는 수출국 J에서 동종 · 동질의 물품을 제조하여 수입국의 특수관계 없는 다른 두 수입자에게 박스당 \$40로 다른 별도의 조 건 없이 판매하고 있다.
- →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condition or consideration) 으로 제1방법 적용 불가, 동일생산국의 동종·동질, 유사물품이 수입된 적이 없으므로 제2,3방법 적용 불가, 수입국내 재판매가 특수관계자 에게 판매되었으므로 제4방법 불가, 생산비 자료가 이용 불가하므로 제5방법 불가

- → 평가대상물품과 동일생산국에서 생산된 물품은 아니지만 동종·동 질 물품으로 간주되는 S가 제조한 물품의 수입국으로 수출판매된 가격인 \$40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3) WTO관세평가협정과 GATT 제7조의 원칙과 일반규정에 부합

합리적인 방법은 WTO관세평가협정과 GATT 제7조의 원칙과 일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WTO관세평가협정의 원칙은

- i) 1994년도 GATT 제7조의 중요성 인정하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 통일성과 확실성을 제고
- ii)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과세가격의 사용을 배제
- iii) 공정하고 일관되고 중립적인 관세평가 체제가 필요함을 인정
- iv) 관세평가의 기초는 최대한 평가대상 물품의 거래가격이어야 함
- v) 상업적 관행과 일치하는 단순하고 공평한 기준에 기초해야 함
- vi) 평가 절차는 공급원 간에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vii) 덤핑방지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됨

#### GATT 제7조에서 제시된 원칙은

- i) 수입물품의 관세목적의 가격은… 실제가격(Actual Value)에 기초 하여야 하며,
- ii) 실제가격은 '충분히 경쟁적인 조건 하에서 통상적인 거래경로를 통해' 판매된 가격이어야 하며,
- iii) '국내원산지 물품 가격' 또는 자의적,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면안 되고,
- iv) 면제, 환급되었거나 환급될 예정인 수출국의 내국세를 포함하면 안 된다.

제6방법에서도 협정과 GATT 제7조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원칙이 준 수되어야 한다.

#### 4) 수입국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

합리적 방법은 다른 나라들에서 '최후의 방법' 또는 '잔여방법'이라고 불린다. 이는 제1~5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어떻 게든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실무상 제1~5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제1~5방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거래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합리적 방법은 GATT 제7조와 협정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이들 원칙은 상당히 추상적이다. '합리적(reasonable)'이라는 범위가어디까지인지, 즉 얼마만큼 합리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제시하기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수입국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6방법은 정답(正答)이 아니라최선의 해답(解答)을 찾는 방법이다. 이때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수입국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이다.

즉, 합리적 방법이란 '수입국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들에 기초하여 가장 합리적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세관당국이나 수입자에게 무한대의 강제적 권한이나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를 위한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면 그 방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sup>…</sup> 제7조는 자료의 출처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단지 수입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고의견 12.3)

또한, 제6방법에서 과세가격은 수입국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에 기초 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외에서 제공된 정보는 사용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수입국에서 이용할 수 있고, 자료의 진실성과 정확 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 5) 금지된 가격(Restrictions)

제6방법의 신축성은 다음 7가지 가격이나 방법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는다.(시행령 제29조 제2항)

#### i) 수입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국내 판매가격

이것은 관세평가를 국내산업보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 ii) 두 개의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높은 가격을 관세목적상 채택하는 방법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해 신축적 적용을 하여 두 가지 가격이 가능한 경우 높은 가격을 선택해선 안된다. 반대로 낮은 가격 이 항상 사용되어야 한다.

# iii)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물품 가격

이것은 "관세평가는 덤핑방지의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워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 iv) 제5방법에 의해 동종·동질 또는 유시물품에 대해 결정된 산정가격이 이닌 생산비용

제5방법은 해당 수입물품의 산정가격에 한정되나, 제6방법에서는 동종·동질, 유사 물품의 산정가격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정가격은 제5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v) 수입국 이외의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가격

각 수출국 시장은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

#### vi) 최저 과세가격

이것은 관세평가를 보호주의적 정책이나 재정수입확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 vii) 자의적 또는 가공적 가격

이것은 실제 상거래, 상관행에 기초하지 않은 평가 제도를 배제한다.

# 6) 결정방법의 서면 통보

●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7조에 의해 결정된 과세가격과 그 결정방법을 서면으로 통보받는다. ● (협정 제7조 제3항) 이 규정은 단지 절차 규정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합리적 방법이 '수입국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최선의 합리적 과세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규정은 세관당국과 수입자 간의 협의 과정(process of consultation)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 7)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마지막으로, 특수물품이라 하여 일반적으로 제1~5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물품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실무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방법의 기준을 어느 정도 표준화하여 가능한 한 통일적이고 일관 된 평가를 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29조 제3항)
- i) 수입신고 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 ii)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 iii) 임차수입물품
- iv) 중고물품
- v)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제품과세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 vi) 범칙물품

- vii)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석유로서 국제거래 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
- viii)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상기 물품들에 대한 구체적 합리적 평가 방법은 시행규칙 제7조의2 부터 제7조의8까지와 고시 제37조 및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 들은 예시 또는 임의 규정으로서 반드시 규정된 방법만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 ■ とてはみ メルキの はれ 午ばなた 要番の あント 人主

- 수입자 B는 전문 수중촬영장비를 국내 해양영화 제작을 위해 특수관계 없는 수출국의 수출자 S로부터 수입했다.
- 수출자 S는 이 수중촬영장비를 판매하지 않고 임대만 한다. 수입자 B의 임대료는 연간 \$1,000로 연초에 지급된다.
- 이 장비와 동종 · 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국내로 수입된 적이 없고, 경제적 내구연한 7년으로 확인되었다.
- →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제1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수입물품은 매우 특이하므로 동종·동질, 유사물품도 없다. 국내에서 재판매되지 않으므로 제4방법도, 생산비용에 대한 자료도 없어 제5방법도 불가능하다. 과세가격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연간 임대료 \$1,000 × 경제적 내구연한 7년 = \$7,000을 기초로 결정될 수 있다.

#### ■ テな으로 수質된 素素의 평フト 人間

- 수출국의 S사의 종이제조공장은 재정위기와 자국내 과잉생산 문제로 폐업하였다.
- 이 공장에는 하루 100ton의 종이를 생산할 수 있는 종이생산설비가 가동 중이었다.
- 한국의 종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에 있는 자회사 B에게 이 종이생산 설비를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 B가 철거 및 포장 비용만 S에게 지급하고, 종이생산설비는 무상으로 수입되었다. (종이생산설비의 총 수명은 15년이고 수출시점에 3년간 사용되었다.)
-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조사결과, 수입물품과 다른 면은 유사하지만 중고품이 이닌 신품 종이생산설비가 다른 수입자에 의해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입되었고, 거래가격은 \$60,000이었다.
- →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입된 동종·동질, 유사물품도 없다. 또 국내에서 재판매되지 않았고, 중고물품이므로 제1~5방법 모두 적용 불가능하다.
- → 유사한 설비의 가격은 \$60,000이고, 수명은 15년이다. 안분하면 1년에 \$4,000이다. 수입된 중고 설비는 3년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사용연수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60,000-\$12,000 = \$48,000의 가격을 기초로 할 수 있다. (단, 이 안분은 수입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 대체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사례연구

# 🗐 사례।. इकुइर्य 또는 유사물품의 거화가격에 기초한 교세가격 결정 ハナルカムフト がも オテノ

- 구매자 B는 판매자 S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 S사 브랜드의 잡화류를 수입하 고 있다.
- 판매자와 구매자의 매매가격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에만 적용되는 특별 히 결정된 가격이므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가격으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 한편, 판매자 S는 평가대상물품인 자사 브랜드의 잡화류와 동종 · 동질물품 을 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의 A백화점에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구 매자 B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2방법에 따라 판매자 S와 A백화점 간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판매자와 A백화점간의 동종 · 동질물품의 송품장 가격은 \$100이지만, A백화점은 송품장가격의 지불 이외에 해당 물품 국내매출액의 5%상당액을 판매자에게 지불한다. A백화점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에 따라 송품장가격에 매출액 5%상당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가산한다.
- 구매자 B는 판매자에게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사후귀속이익의 지불이 없다. 그렇다면 A백화점의 송품장가격 \$100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제2, 3방법에 의해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란 이미 과세가격으로 채택된 바 있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산요소'를 가산한 가격을 말한다.
- →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판매자 S와 A백화점 간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은 송품장가격 \$100에 수입물품 매출액의 5% 상당액의 사 후 귀속이익을 가산한 가격에 기초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 정하게 된다.

# 🗐 अंबाट, इकेइये 또는 유사물품의 अध्यानिया 기초र्ध 교세기 वेये (是奏今径の 以告 智宁)

- 수입자 B는 수출자 S로부터 도자기를 선편으로 수입하고 있다.
- 이번에는, 수출자로부터 항공편으로 도자기가 무상으로 송부되어 왔다.
- 해당 물품은 선편으로 수입하고 있는 물품과 동종 · 동질물품으로, 선편에 의한 최근의 수입실적(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이 있다.
- 이 경우, 무상으로 항공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가?
- →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1방 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동종 · 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있는 경우, 그들 물품과 수입물품간에 상업적 단계, 수량의 차이, 운송수단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조정하여 야한다.
- → 본 사례의 경우, 수출자 S가 무상으로 송부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2 방법을 적용하여 동종 ·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의거 과세가격을 계 산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수입물품과 동종 · 동질물품의 운송형태 가 다르므로 운임 등의 차이를 조정하여 계산한다.

# ■ 사례3. 일대차 계약에 따라 수일되는 훌륭 (연구 2.1)



- 국내 수입자 M은 특수관계가 없는 E국의 수출자(임대회사) X와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최신 기계설비를 임차하여 수입한다.
  - i) 임대기간은 최저 36개월로 하며, 갱신가능하다.
  - ii) 국내에서 동 기계설비의 설치와 정비에 관련되는 비용(최초 2년간은 1년에 100만원, 그 후에는 1년에 150만원)은 수입자 M이 수출자 X에게 지불한다.
  - iii) 임대료는 1개월에 250만원이며, 위 ii)의 국내 설치 및 정비에 관한 비용(①), 10%의 이자비용(②) 및 수출국에서 국내까지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③)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수입물품인 기계설비와 동종 · 동질 또는 유사물품은 수입국에 수입된 적이 없으며, 또한 수입자 M은 수입물품의 생산비용 자료를 입수할 수 없다.
- 수입자 M이 제출한 수출자 X가 작성한 수입물품의 취급설명서에 따르면 동 기계설비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5년이다.
- → 수입물품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것으로 판매되지 않았으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동종·동질, 유사물품이 없으므로 제2, 3방법도 적용할 수 없다. 수입물품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으며, 생산비용도 알 수 없으므로 제4, 5방법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합리 적 방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 본 사례의 경우 수입물품의 전체 경제적 내용연수를 알 수 있으므로, 기계설비의 전체 내용연수 동안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총액을 기초 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전체 내용연수인 5년 동안 지급하여 야 할 임대료 총액(R)에서 국내 설치 및 정비에 관한비용(M=①)과 이자비용(I=②\*)을 공제한 가격이 과세가격이 된다.

# ■ 사례4. 변활손상된 물품의 교세가격 결정 (해결 3.1)

-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냉동어패류를 냉동컨테이너로 수입하고 있다.
- 이번에 도착한 화물을 보세창고에 반입 후 품질검사를 하였더니, 변질되어 선도가 불량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원인은 선적지에서 자연해동에 따른 사고로 확인되었다.
-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해 서베이 리포트를 작성하였고,
   이 조사보고서에는 국내판매가격을 참고로 하여 계산한 잔존가격율을 60%로 판단하고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은 당초 계약대로 이미 지불되었다.
- → 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금은 변질·손상된 물품에 대한 가격이 아니다. 수입물품은 당초 계약과 상이한 변질·손상된 물품으로 실 제지급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체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 →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신고 전 변질·손상된 물품의 과세가 격은 변질·손상에 의한 가치감소를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 가치감소는 감정기관의 손해평가액, 수리 또는 개체비용,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액 등에 기초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7조의2)

<sup>★</sup> ② 여기서 공제해야 할 이자비용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복리계산 방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본 사례의 경우 공인 조사보고서에 잔존가격율이 60%이며, 그 산출 근거가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40%를 변질·손상에 따른 가치감소로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 수입자 B는 기술제휴사인 수출국 S사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밀링 머신(Milling Machine)을 수입하였다.
- 수입 후 동 기계는 계약상의 성능에 미달하였다. 이에 S사는 무상으로 대체품 을 보내왔다.
- → 무상으로 수입신고한 밀렁머신은 수출판매된 것이 아니므로 제1방 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 → 제2~5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수입 물품이 최초 수입물품의 대체품임을 고려하여,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평가대상물품의 선적일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성 있게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최초 수입거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 भक्रार्थः भामित्ररेण राजभवेत श्रह्मित्रणम ग्रीर्निर्दे निर्देश स्त्री 사유가 있는 경우 (사례연구 13.2)

- 국제시장에서 나사못(Spiral nail)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인 'steel wire rod' 의 가격이 톤당 \$600~\$675(국내판매가격은 \$670)인 반면, X국 원산지 나사 못이 톤당  $$340 \sim $440$ 의 저가로 수입되고 있다는 민원이 Y국 세관에 접수 되었다.
- Y국 세관이 'steel wire rod'의 실제 수입자료를 조사한 결과, 'steel wire rod'의 국제 시장 가격은 톤당 \$675로 확인되었다. 산정가격 방법으로 나사못 수입가격을 톤당 \$750로 평가하였던 사례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 세관은 몇 차례 수입자들과 회동을 하여 신고가격이 거래가격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수입자들은 물품대금 지급증빙을 제출하 지 못하고 잠정송장(proforma invoice)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만 을 제출하는 한편, 서면 매매계약서도 없이 구두 합의로서 물품을 수입하였 다고 진술하였다. 세관은 회계자료를 조사하였으나 수입자들은 실제지급 가격을 입증할 만한 세부적인 회계자료와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 → 나사못의 신고가격이 나사못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국제시장 가격보다도 낮기 때문에 세관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 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
- → 수입자가 추가자료를 제출한 후에도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 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과세가격은 '거래가격방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 → 세관이 제출자료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하는 근거를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세관은 수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수입 자가 이에 응답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다.
- → 이 사례에서 세관은 신고가격이 거래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자료를 수입자에게 요청하였고, 수입자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몇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계약서나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 다. 더욱이 협의 중 검토된 회계자료에서도 실제지급가격을 뒷받침 하지 못했다. 따라서 세관은 여전히 신고가격의 진실성이나 정확성 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졌고,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대체 평가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 → 동종·동질 또는 유사 나사못의 가격을 톤당 \$750로 결정한 사례가 있지만, 동 가격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아닌 산 정가격이므로 제2, 3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4~6방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강의노트〉

# 관세평가 전자학습(e-Learning) 모듈

**Customs Valuation Archer** 

• 2011.7 초판 발행 | 2014.11 제1개정판 발행 | 2017.1 제2개정판 발행 | 2021.8 제3개정판 발행

• 발행인 : 관세평가분류원장

• 발행처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노지선, 이창민, 김순덕, 하정오, 손동희, 이영민, 추민지)

• 인 쇄 : 아디모 디자인